

312.1
통계
2001.11

통계청직원직무특별교육교재

주요통계 및 경제지표의 올바른 이해

2001. 11

582133

통 계 연 수 부

총 목 차

1. 산업동향 통계	3
2. 물가통계	29
3. 고용통계	51
4. 사회통계	71
5. 인구통계	99
6. 국민계정	129
7. 국제수지	175
8. 통화금융통계	189

산업동향 통계

목 차

1. 산업활동동향 통계의 의의 및 종류	5
가. 경제지표간 관계와 상호작용	5
나. 산업활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6
2. 산업활동동향 통계의 조사 방법	9
가. 표본의 선정	9
나. 통계조사의 수행절차	10
다. 통계조사의 내용	12
3. 산업활동동향 통계의 작성방법	13
가. 지수에 의해 결과 종합	13
나. 조사결과의 단순합계	17
4. 산업활동동향 통계의 분석방법	18
가. 변화의 측정	18
나. 요인의 분석	21
5. 경기종합지수	22
가. 경기종합지수의 종류	22
나. 구성지표 선정방법	22
다. 경기종합지수 작성방법	23
6. 통계이용상 유의 사항	27

1. 산업활동 동향 통계의 의의 및 종류

가. 경제 지표간 관계와 상호작용

경제 활동은 크게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실물의 거래, 그리고 실물 거래에 수반하여 혹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거래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통계』는 실물부문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다.

실물 경제 동향 중 가장 중심적인 부문은 생산활동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주어진다.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경제활동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 생긴 이윤으로 투자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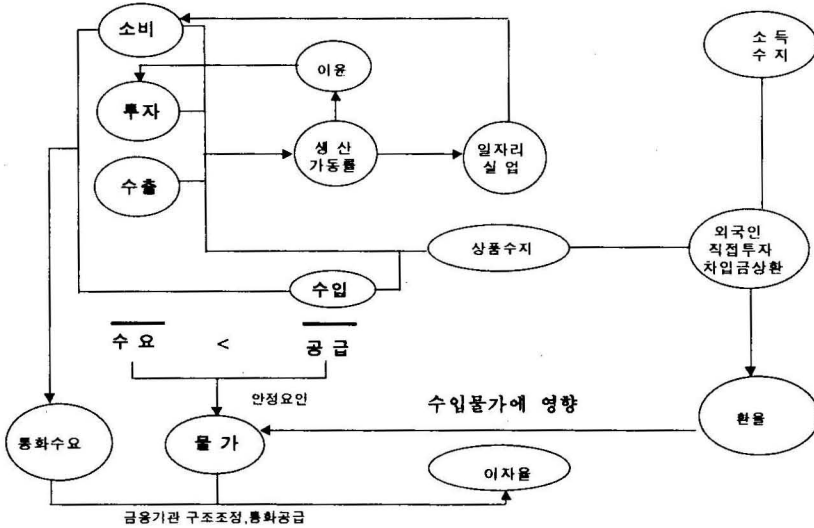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한 상품의 판매가 잘 되어야 한다. 상품의 판매는 국내에서 소비나 투자가 늘어야 신장되고 해외로 수출이 늘어나야 신장될 수 있다. 판매(수요) 수준은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거나 억제하는 금리, 금융, 조세제도나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에 크게 작용하는 환율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생산에 비해서 판매(출하)가 부진하면 재고가 쌓이게 된다. 재고는 판매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적정치를 넘는 경우에는 생산 수준을 낮추어서 재고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른바 재고조정이 진행된다. 대개 경기가 호황기를 지나 불황기로 접어들 때 판매가 줄어들면서 재고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재고조정기를 거치면서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순환의 패턴이다.

이와 같은 실물부문의 동향은 금융이나 외환 부문의 동향과도 맞물려 복잡한 경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가 과다하면 물가와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물가와 금리는 투자, 저축,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많으면 환율이 낮아지고(자국통화 가치가 올라가고)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 등이다. 이런 현상에 대

한 진단은 통계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그 중 산업활동 동향은 실물부문의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경제지표간 관계>



나. 산업활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1)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지표

산업활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는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줄여서 생산지수라고 함), 생산자제품출하지수(출하지수라고 함), 생산자제품재고지수(재고지수라고 함)가 있다. 출하지수는 다시 내수출하지수, 수출출하지수로 세분되어 내수와 수출동향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조업의 공급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제조업생산능력지수(능력지수), 생산설비가 이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제조업가동률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 등의 지표가 있다.

(2)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소비동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가장 중심적인 지표

로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대형할인매장, 백화점은 물론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매월 판매금액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이다. 도소매판매액 지수는 최종수요자에게 판매된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실현된 소비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소비동향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소비동향을 보는 데 이용하는 다른 하나로는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가 있다. 이 지표는 통계청이 매월 조사하는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소비재로서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출하된 실적을 집계해서 만든 통계이다. 유통업체 등으로 출하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종 소비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품목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3) 건설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현재의 건설투자 동향을 설명하는 지표로는 건설기성통계가 있다. 이 통계는 주요건설업체의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이다.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 실적을 조사한 것이므로 이미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반면에 건설수주통계는 건설회사가 새로운 공사를 주문 받은 금액을 집계한 통계이므로 앞으로의 건설투자를 예고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건설수주통계는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이용한다. 건설수주 통계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자치단체의 허가 실적을 집계하여 작성하는 건축허가면적 통계도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4) 설비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설비투자추계지표는 설비투자에 쓰이는 기계류의 국내공급 규모를 추정해서 조사되는 한 달간 실행된 설비투자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즉 기계류의 국내생산에서 수출, 재고증가분을 빼고 수입분을 더한 후 중간재로 사용된 부분, 소비재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여 이것을 실제 설비투자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기계수주통계는 건설수주통계와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에 쓸 용도로 주문한 기계류의 수주액을 집계한 통계이므로 미래의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선행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설비투자 동향과 관련된 그 밖의 통계로는 기계류의 내수출하 물량을 집계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기계류의 통관수입 금액 등이 있다.

(5) 경기종합지수

모든 개별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인다면 전반적인 경기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표의 변동 방향과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경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바로 경기종합지수가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단일한 수치에 의해서 평가하는 지표이다. 경기종합지수에는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와 향후의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그리고 사후에 지나간 경기를 확인하는 후행종합지수가 있다.

< 산업활동 부문별 통계 현황 종합 >

부 문	부문별 지표	작성기관	비 고
생 산 동 향	· 산업생산지수	산업동향과	조사통계
	· 생산자출하지수	"	"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
	· 제조업생산능력이동률지수	"	"
소 비 동 향	· 도소매판매액지수	서비스업통계과	"
	·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	산업동향과	"
투 자 동 향	· 건설기성액통계	산업동향과	"
	· 건설수주액	"	"
	· 건축허가면적	건설교통부	행정통계
	· 설비투자추계지수	산업동향과	가공통계
	· 설비용기계류내수출하지수	"	조사통계
	· 기계류 수입액	관세청	"
	· 기계수주액	산업동향과	"
경 기 동 향	· 경기선행종합지수	산업동향과	가공통계
	· 경기동행종합지수	"	"

2. 산업활동동향통계의 조사방법

가. 표본의 선정

표본의 추출방법은 모집단의 특성, 통계조사의 목적 등에 따라 통계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1) 생산·출하·재고지수 (광공업동태조사)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로서 광공업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종사자수 20인 이상인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은 광공업동태조사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수가 전국에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나머지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중에서 종사자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모두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별로 총화한 후 출하액을 기준으로 계통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출된 표본수는 약 8천 개다. 이들 표본은 5년간 고정 표본으로 활용하되 매월 및 연간 주기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여 표본을 보완하고 있다.

(2) 건설수주, 기계수주

건설수주와 기계수주통계는 주문한 사업체(발주자)를 조사하지 않고 주문받은 건설업체와 제조업체를 조사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들 통계는 1차 주문을 받은 원도급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하도급업체와 중복조사를 피해야한다. 따라서 규모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건설수주통계는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 업체 중 전전년도 건설기성 실적이 상위인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현재는 292개 건설업체를 매월 조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기계수주통계 역시 기계류를 생산하는 업체중 생산실적이 많은 업체순으로 171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매월 조사하고 있다.

이들 통계는 모집단의 수주금액을 추정하지 않고 있으며 표본조사 업체의 수주액을 단순 집계한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대신 표본조사 결과가 모집단의 추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업체의 대표도(건설수주통계는 표본업체의 기성액이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액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기계수주는 표본사업체의 생산실적이 기계류 전체생산실적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표본을 매년초에 조정하고 있다. 건설수주와 기계수주의 대표도는 54% 수준이다.

(3) 도소매업동태조사

도소매업동태조사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의 모집단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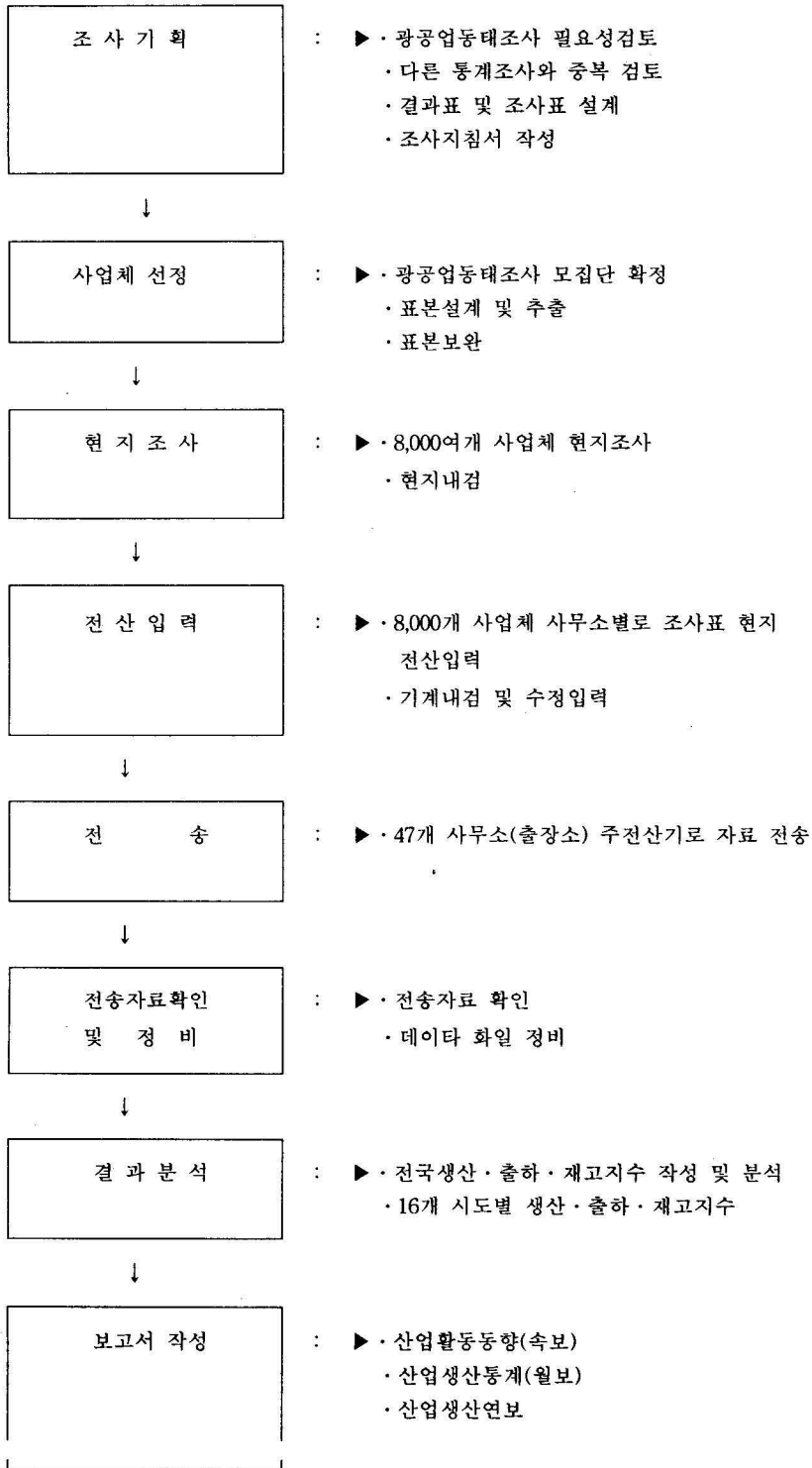
우선 사업체수가 적고 판매액의 비중이 큰 사업체는 전수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백화점, 자동차판매업, 주유소운영업 등이 해당된다. 표본업종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형할인점, 편의점, 대형전문점과 종사자 50인 이상 또는 매장 3천㎡ 이상인 소매점 등은 전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외 사업체는 판매액의 크기순에 따라 계통표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표본수는 약 5,500개로서 5년간 고정되며 사업체의 폐업, 신설 등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

나. 통계조사의 수행절차

통계조사는 매월 5일 경에 조사대상 표본을 확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본청의 조사담당과는 사업체 신설, 폐업, 휴업, 전·출입 등 변동을 종합하여 조사대상 명부를 통계청 지방사무소에 통보한다. 지방통계사무소는 확정된 명부에 따라 매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400여명의 조사직원이 원칙적으로 면접타계식 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된 결과는 조사직원 각자가 개인용 PC에 입력하여 통계사무소별로 집계된 전산파일을 통계청 본청 주전산기로 매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온라인 전송한다. 전국의 통계사무소에서 전송된 자료는 주전산기에서 전산처리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매월 말일 경에 언론 보도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다음달 초순에 간행물로 작성된다.

통계조사 및 통계작성 흐름도 (광공업동태조사의 예)



다. 통계조사의 내용

(1) 광공업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의 중심적인 조사내용은 생산, 출하(내수, 수출), 재고이다. 조사 대상품목은 95년도 생산액을 기준으로 광공업 전체생산액중 1/5,000이상(700억원)인 품목 665개이다. 생산은 다시 자체생산, 위탁생산, 수탁생산으로 구분하여 단일한 생산활동이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에서 이중으로 조사될 소지를 방지하고 있다. 출하도 동일기업내 공장간 단순이동이나 재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중계산이나 조사 누락의 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조사로서 종사자수, 조업일수 등 조업상황과 주요 원재료 투입 및 재고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2)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대상 품목 중 생산능력조사가 가능한 229개 품목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생산량은 광공업동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동률을 작성하고 있다. 생산능력 변동을 놓치지 않도록 보유설비수, 표준조업일수, 표준조업시간 등을 보조조사하고 있다.

(3) 건설수주, 건설기성, 기계수주통계조사

건설수주통계조사에서는 건설수주금액을 발주자별, 공종별로 조사하고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과 공사지역을 조사한다. 건설기성통계는 발주자별, 공종별 기성액을 조사하고 있다.

기계수주통계조사는 수주한 기계류 제품별 수주금액과 수요자(발주자)를 조사한다.

(4) 도소매업동태조사에서는 월간판매액을 조사한다.

3. 산업활동동향 통계의 작성방법

가. 지수에 의해 결과 종합

(1) 지수의 작성

통계청이 매월 표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는 대체로 지수로 환산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란 『통계값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때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의 통계값을 표시하는 수치』로 정의된다.

이와 같이 통계를 지수로 환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질(단위 등)이 다른 통계값을 상위분류로 합산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기준년도 통계값을 100으로 통일하므로써 여러 지표의 변화수준을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셋째,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수작성 방법이 대개 일치되므로 비교가 용이하고 계절변동 등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산업활동동향을 설명하는 지표 중 생산·출하·재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설비투자추계지수 등이 지수로 작성되어 공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이 월간 주기로 작성하는 지수는 대부분 『기준년도를 고정한 가중산술 평균방식 (Laspeyres Formula)』을 채택하고 있다.

$$\text{생산지수} = \frac{\sum \frac{\text{비교시품목생산량}}{\text{기준시품목생산량}} \times \text{기준시품목가중치}}{\sum \text{기준시품목가중치}} \times 100$$

각 통계마다 적용하고 있는 기준년도의 가중치와 기준치, 통계량을 다음의 표와 같다.

<생산동향지표 작성개요 비교>

	산업생산지수	출 하 지 수	재 고 지 수	가동률 지수
- 포괄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	제 조 업
- 기준년도	1995	1995	1995	1995
- 가중치 산정자료	부가가치	출하액	재고액	부가가치
- 대표품목	665	665	538	229
- 기준물량	1995 월평균 생산량	1995 월평균 출하량	1995 월평균 재고량	1995 월평균 가동률
- 대표도	84.9	85.8	82.5	59.0
- 대표계열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생산능력, 생산실적
- 조사기간	전월1일~말일	전월1일~말일	전월말일	능력:전월말, 생산실적:전월
- 지수산식	라스파이레스식	라스파이레스식	라스파이레스식	라스파이레스식
- 자료수집	광공업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	광공업동태조사	능력및가동률

	도소매업 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	기계수주액	경기종합지수
포괄산업	도·소매업	건설업	건설업	제조업	
기준년도	1995	-	-	-	1995
가 중 치	판매액	-	-	-	-
기준물량	95년 월평균 판매액	-	-	-	-
대 표 도		50.0	54.0	54.0	
대표계열	판매액	기성액	수주액	수주액	선행, 동행 각 10개 후행지수 6개 구성지표
조사기간	전월1일~말일	좌동	좌동	좌동	전월 개별지수
지수산식	경상:금액지수 불변:혼합	단순합계	단순합계	단순합계	표준화 합계
자료수집	도소매업동태 조사	건설기성 통계조사	건설수주 통계조사	기계수주 통계조사	개별지수

(2) 지수의 개편

지수로 작성되는 통계는 5년 주기로 기준을 개편하고 있다. 지수개편의 주기와 관련해서 주기가 짧을수록 최근의 산업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장점은 있으나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대로 개편주기가 너무 길어지면 산업 현장의 실제와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편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며 대체로 산업의 변화가 빠른 나라의 경우 5년 주기의 지수개편을 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성숙한 경제는 개편주기가 10으로 되어 있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UN에서는 5년 주기의 개편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변화 속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년 주기의 개편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대체로 끝이 '0'과 '5'로 되어 있는 해에 기준을 개편하여 통계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 수·출입 물가지수 등도 개편 시기를 이 때로 통일하여 이용과 분석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준을 개편할 때 주요내용은 조사대상 품목을 지난 5년간 성장한 품목으로 변경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또한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의 규모와 조사대상 표본을 조정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기준을 개편한 후의 지수는 대개 지수를 접속하는 방법에 의해 시계열을 유지하고 있다.

- 신 기준년도로 전환할 통계치 = 종전 기준 통계치 × 접속계수
- 접속계수 = 100.0 ÷ 종전기준으로 작성된 신 기준년도 통계치

이와 같이 기준년도가 변경되면 종전 기준년도로 작성되어 공표되었던 약 3개년의 통계는 신 지수로 바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생산지수의 기준년도를 1990년에서 1995년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97년 10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95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 이미 공표된 통계는 새로운 지수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 조사결과의 단순합계

지수로 작성되는 통계는 가중치에 의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적인 가공작업을 거쳐 작성된다. 반면 금액으로 조사된 통계 중 통계 가운데 추세만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인 건설수주통계, 건설기성통계, 기계수주통계는 표본조사 결과를 그대로 합산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의 대표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이들 통계는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하지 않고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4. 산업활동동향통계의 분석방법

가. 변화의 측정

(1) 원(原) 시계열

조사결과를 집계해서 최초로 작성되는 통계를 원 시계열(지수로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에는 원지수)라고 한다. 원지수는 통계 시계열의 모든 변화요인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통계로서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 시계열이다. 즉 통계값의 변화요인을 경기요인과 비경기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때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계열인 것이다. 가령 산업생산지수 수준이 높아진 경우 내수와 수출로 판매가 신장되어 늘어난 요인(경기요인)외에도 계절적인 요인(여름철이라 빙과류가 잘 팔리는 예), 월력상 조업일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요인, 파업종료, 장마종료, 설비 정기보수에 대비한 재고 확보 등 비경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 시계열 통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활동의 절대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통계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 계열이다.

흔히 통계 시계열은 추세 및 순환요인, 계절요인, 그리고 불규칙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시계열은 이러한 요인을 모두 지니고 있어 분석목적에 따라 부적절한 요인을 제거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계절조정 시계열

통계를 분석할 때 통계 시계열이 나타내는 경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기초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모인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생산이 일시 상승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원시계열에서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생산·출하·재고지수, 가동률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실업률 등은 계절조정된 시계열 통계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계절조정 방법은 캐나다에서 개발한 「X-11-ARIMA」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美상무성에서 개발된 「X-12-ARIMA」법의 활용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절요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전(事前)요인인 설과 추석이 각각 1,2월 9,10월로 이동하는 데 따라 나타나는 변동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계절조정계열에서도 명절효과와 계절요인만 제거되기 때문에 추세요인, 순환요인과 불규칙요인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계절조정계열은 각기 다른 달의 수준을 비교하는 데 많이 이용하는 통계계열이다.

(3) 변동률

지수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증감율을 사용할 수 있다. 변동율이란 어떤 통계의 기준시점에 대한 비교시점에서의 증감 비율이다. 여기에는 전월(분기, 년)비, 전년동월(분기)비, 전년동기비(전년누계비) 등이 있다.

(가) 전월비

통계의 단기적인 동향을 보려면 직전달과의 추세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전월비가 바로 전월을 기준으로 금월의 증가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비율이다.

$$\cdot \text{전월비}(\%) = \frac{\text{금월} - \text{전월}}{\text{전월}} \times 100$$

전월비는 일반적으로 계절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에 의해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월별 원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계절요인과 경기요인이 섞이게 되어 경기의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절조정계열에서는 명절요인과 계절요인은 제거되나 불규칙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전년동월비와 마찬가지로 불규칙요인을 감안한 통계 해석이 필요하다

(나) 전년동월(분기)비

통계를 분석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년 같은 때와 수준을 비교하여 증가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cdot \text{전년동월비}(\%) = \frac{\text{금월} - \text{전년동월}}{\text{전년동월}} \times 100$$

전년동월비는 1년 동안 변화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같은 달을 비교한 비율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은 서로 상쇄되고, 추세·순환요인과 불규칙요인에 의해 증가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절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를 계산할 때는 일종의 가공된 계열인 계절변동조정계열보다는 원시계열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년 동월 혹은 금월에 명절, 파업, 장마, 화재, 선거공휴일 등 불규칙요인이 들어 있는 경우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경기와 무관하게 좋게 혹은 나쁘게 된다. 그래서 전년동월비를 기준으로 경기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비경기적인 요인을 감안하여야만 정확한 통계 해석이 가능하다.

(다) 평균증감율(평균 증감 속도)

경제지표를 분석하고자 할 때 최근 수개월간의 평균 증감속도가 어떠한가를 판단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 비율은 주로 최근 수개월의 증가속도와 과거 어떤 시기에 대한 증가속도를 상호 비교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다.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지다가 회복되는 경우에 이 회복속도가 전회 경기회복시기에 있어서의 속도와 어느 쪽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경우이다.

이 때 두 시점의 지수를 이용하여 기하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증감률이 원래 비율형태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자동차 생산지수의 월평균 상승률을 구해보면

$$\text{월평균 상승률(\%)} = (\sqrt[5]{(132.9 \div 103.4)} - 1) \times 100 = 5.1$$

이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매월 평균 5.1%씩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달리 말하면 그 기간 중에 매월 5.1%씩 증가한다면 지수수준이 103.4에서 132.9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수(95=100.0)	103.4	114.6	128.4	129.7	133.6	132.9

(4) 기여도

개별 통계시계열이 합쳐져서 상위의 계열을 이루는 경우 변동 요인을 분석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기여도 분석이다. 예를 들어 산업생산이 2001년 9월에 5.1% 증가한 중에 반도체가 기여한 증가율은 몇 %포인트나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비율 지표이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분석하는 자료 중 예시하는 업종이나 품목은 주로 기여도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cdot \text{기여도}(\%) = \frac{(\text{업종/품목})\text{비교시점지수} - \text{기준시점지수}}{\text{기준시점의 총지수}} \times \frac{(\text{업종/품목})\text{가중치}}{\text{전체 가중치 합}} \times 100$$

나. 요인의 분석

부문별 업종별 품목별 지수의 수준과 변화속도를 측정 한 후 요인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최초 단계에서는 우선 불규칙요인을 점검한다. 명절요인, 공휴일수에 따른 조업일수 변동, 파업, 설비보수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한다.

다음으로는 정책효과가 작용했는지를 들여다 보게된다.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감효과, 유류관련세 인상요인, 방카C유를 등유로 대체한 효과,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여부,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축소조치 등 제도변경 사항, 자동차의 무이자 할부판매 효과, 주택관련 세제·제도 변경, 소비자금융지원 효과, 금리변동 등이 그 예이다.

영향이 큰 비경기적인 요인이 없고 특별한 정책변경 없이 통계가 변동된 경우 이것은 경기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 경기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표간 움직임상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 유익하다. 가령 생산이 증가했다면 내수가 신장된 것인지, 수출이 주도한 것인지 출하지표, 통관기준 수출 통계 등을 교차 분석한다. 아니면 내수와 수출, 소위 수요의 증가없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을 늘려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또 건설수주, 건축허가 면적 등 건설관련 통계가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경우 건자재의 생산과 출하도 늘어나는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될 지 등을 판단한다.

5. 경기종합지수

가. 경기종합지수의 종류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es:CI)에는 앞으로의 경기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선행종합지수와 현재의 경기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동행종합지수, 경기동향을 사후에 확인하기 위한 후행종합지수가 있다. 그리고 보조지표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 파악에 활용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의 선행시차를 확대하기 위한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가 있다.

나. 구성지표 선정방법

CI의 구성지표 선정과정은 ① 부문별 경제지표의 시계열자료 수집 ② 개별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③ 개별지표의 경기전환점 파악 및 기준순환일 설정 ④ 개별지표의 평가 ⑤ 후보지표 선정 ⑥ 시산(試算)작업 ⑦ 최종 구성지표 선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경제지표의 시계열자료 국내에서 생산되는 월별경제지표 중 시의성 및 경제적 유의성(有意性)등을 고려하여 각 경제부문에서 수집한다.

수집된 개별 경제지표중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 X-12-ARIMA 방법 및 1, 3개월 이동평균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비경기적 요인이 제거된 계열에서 추세치를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한다. 이 순환요인과 변동패턴 등을 감안하여 각 개별지표의 경기전환점(정점, 저점)을 파악한다. 기준순환일을 중심으로 개별지표를 선행·동행·후행지표로 구분한다. 기준순환일(Reference Turning Date)이란 한나라의 총체적인 경기변동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서 경기상승 및 하강 곡선상의 정점이나 저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72.5	74.2	75.6	79.2	80.9	84.2	85.9	88.1	89.7	92.1	93.1	96.3

개별지표의 경제적 중요도, 통계적 적합성, 경기일치성, 경기대응성 및 속보성 등을 평가하여 후보지표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지표로 시산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성지표를 채택한다.

다. 경기종합지수 작성방법

구성지표의 원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경상금액 자료는 실질가격으로 환산한다.

- 매월 작성되는 구성지표의 원계열자료(Original series, O)를 수집
- 물량이나 실질로 작성되는 자료를 제외한 경상자료에 대하여 관련부문의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된 원계열 자료 산출

구성지표 시계열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한다.

$$\text{원계열} = (\text{추세변동} \times \text{순환변동}) \times (\text{계절변동} \times \text{불규칙변동})$$

○ 계절변동요인 제거

- 1년(12개월)을 주기로 하여 매년 반복되는 변동으로 기후, 생활습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계절변동요인을 제거
- 전년동월비 자료를 제외한 모든 지표
- X-11-ARIMA방법을 이용해서 계절변동요인 제거

○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 천재지변, 파업, 전쟁, 홍수 등과 같이 극히 단기적이고 불규칙적인 변동을 제거
- 계절조정된 계열을 3개월 이동평균하여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 선행지수: 9개지표(총유동성(M3) 제외)
 - 동행지수: 10개지표

- 후행지수: 4개지표(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제외)

구성지표의 평균증감률을 산출한다.

- 각 개별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률(대칭변화율) 산출

$$\text{금월증감률} = \frac{(\text{금월치} - \text{전월치})}{(\text{금월치} + \text{전월치})} \times 200$$

- 단, 비율지표는 전월대비 증감차(금월치-전월치) 산출

개별지표의 증감률을 과거 평균치로 표준화한다.

- 큰 진폭을 갖는 특정지표가 종합지수를 지배하지 않도록 개별지표 각각의 증감률을 표준화

$$\text{표준화증감률} = \text{금월 증감률} / \text{과거증감률의 절대치평균}$$

지수별 평균증감률을 산출한다.

- 개별지표의 표준화된 증감률(SC)을 평균하여 각 지수별로 평균증감률을 산출
(선행·동행·후행평균증감률)

평균증감률을 동행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 선행·동행·후행평균증감률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균증감률을 조정
- 조정방법: 장기적으로 선행 및 후행 평균증감률 절대치 평균을 동행평균증감률 절대치 평균에 일치시킴
- 조정증감률(MAC: Modified Average Rates of Changes)

$$= \text{선행(후행)평균증감률} \times \frac{\text{과거 동행평균증감률 절대치평균}}{\text{과거 선행(후행)평균증감률 절대치평균}}$$

선행·동행·후행 조정증감률(MAC)을 누적하여 각각의 원지수를 산출한다.

$$\text{금월원지수} = \text{전월원지수} \times \frac{200 + \text{금월조정증감률}}{200 - \text{금월조정증감률}}$$

추세조정지수 (Trend Adjustment Factor)를 산출한다. 이것은 선행·동행·후행지수의 움직임과 성장속도가 서로 다르므로 GDP를 목표추세(Target Trend)로 하여 각 지수의 추세선이 GDP추세와 일치되도록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각 지수의 움직임과 GDP의 움직임이 동일하도록 조정하여 경제성장과 경기종합지수를 상호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 추세조정방법: GDP 증감률 평균과 원지수 증감률 평균의 차이를 조정증감률에 더해 줌
- 추세조정증감률(TMAC: Trend-Adjusted MAC)

$$\text{추세조정증감률} = \text{조정증감률} + (\text{과거 GDP 월 평균증감률} - \text{과거 원지수 월평균증감률})$$

최종적으로 선행·동행·후행 추세조정증감률을 누적하여 각 추세조정지수를 산출한다.

$$\text{금월추세조정지수} = \text{전월추세조정지수} \times \frac{(200 + \text{금월추세 조정증감률})}{(200 - \text{금월추세 조정증감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세조정지수를 95년 기준으로 전환하면 95년 월평균 추세조정지수를 「100」으로 한 경기종합지수가 작성된다.

보조지표(Supplementary Indexes)의 작성 방법을 알아보자.

○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Cyclical of Component of Coincident CI)

-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변동치를 제거하여 상승과 하강의 순환 움직임을 추출
- 추세변동치는 국면평균법(PAT법:Phase Average Trend Method)에 의하여 산출

$$\text{순환변동치} = \frac{\text{동행종합지수}}{\text{동행지수의 추세변동치}} \times 100$$

○ 선행종합지수의 전년동월비(Twelve-month Smoothed Changes in Leading CI)

$$= \left(\frac{\text{금월 선행종합지수}}{\text{전년동월의 선행종합지수 12개월 이동평균치}} - 1 \right) \times 100$$

6. 통계이용상 유의 사항

- ① 생산, 출하, 재고지수는 물량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불변가격 기준 통계이며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의 표본조사 결과이므로 금액 통계나 전수조사 통계와 다르다.
- ② 매달 발표되는 생산, 출하, 재고, 제조업평균가동률 통계 등은 잠정치로서 다음달, 혹은 다다음달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연초에 조정되거나 5년주기 지수 개편으로 통계가 변경될 수 있다.
- ③ 계절변동조정계열은 1년분 통계가 추가되면서 과거 전체 통계를시계열이 변경되므로 이용상 주의해야 한다.
- ④ 재고지수는 월말 기준 재고잔량을 의미하며 생산자가 보유한 완제품 재고이므로 유통 단계에서의 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⑤ 건설수주통계, 건설기성통계, 기계수주통계는 경상금액으로 공표되며, 계절변동조정계열이 작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시계열 통계로 전월비를 작성하고 있다.
- ⑥ 소비동향은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이용하되 불변가격 계열을 이용해야 하고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품목별 동향을 파악할 때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통계의 분석시 단순히 증감률만 이용하기 보다는 지수수준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경기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동월비와 함께 전월비 등을 종합 비교하는 것이 통계해석에 유용하다.

물 가 통 계

목 차

1. 물가통계의 의의 및 종류	31
가. 가격과 물가	31
나. 물가통계의 작성 배경	31
다. 물가의 측정방법	32
라. 물가통계의 종류	33
2.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방법 및 활용	36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개념	36
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연혁	36
다. 기준시점	37
라. 가중치 모집단	37
마. 조사품목 선정 및 가중치의 산출	37
바. 조사지역, 조사시장 및 대상처	37
사. 가격조사	38
아. 지수작성 및 분류	38
자. 지수의 해석	44
차. 소비자물가지수의 이용	45
3.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감물가와와의 차이	47
가. 차이요인	47
나. 지표로 본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감물가 차이	48
4. 소비자물가지수의 주요작성방향	48
가. 이용자 중심의 통계생산	48
나. 통계의 이용도 및 통계작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49
다.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임	49
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의 개발	49

1. 물가통계의 의의 및 종류

가. 가격과 물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사기도 하고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각각 값이 있다. 예를 들면 쌀(20kg) 48,000원, 계란(10개) 1,200원, 목욕료(1회) 3,300원 등과 같이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다. 이들 개개의 재화와 서비스의 값을 **가격**이라 하며, 개개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수준 즉 가격에 대한 복수 개념을 **물가**라 한다.

나. 물가통계의 작성 배경

모든 통계는 그것을 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물가통계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가통계는 가격자료의 성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작성되어 있고 각각 유형의 물가통계는 개별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물가와 국민생활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자료의 성격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배경을 갖게 된다.

물가와 화폐가치의 관계이다. 물가가 오르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기 이전에 비하여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 즉 화폐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물가가 내린다면 화폐가치는 오르게 된다.

물가변동은 소비 또는 저축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내린다면 소비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반면 저축하려는 경향은 낮아진다. 물가변동은 생산 또는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자는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의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동일 시점에서 가격이외의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투자는 이러한 여건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관련품목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물가수준의 변동은 소득에 변화를 주고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지게 한다. 즉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물가수준의 변화는 수출과 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국내에서 수입단가에 비하여 비싸게 팔릴 수 있다면 수입량은 증가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물량이 국내 시장 보다는 국제시장을 향하게 되므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과같이 물가와 국민생활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므로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물가의 측정방법

시장에는 수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가격은 그 폭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변동하고 있다. 물가통계는 이러한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물가수준의 평균적인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상품의 가격은 거래단위에 따라 다르고 또한 품목간에는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단위가 일치하더라도 서로 비교성이 없으므로 가격자체를 평균한다면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물가지수(Price index)는 품목별로 일정시점에 대한 가격비율을 계산하여 상대적인 가격수준을 측정한 후 품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물가수준으로 표현하게 된다. 즉, 물가지수는 어느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놓고 비교시점의 물가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95년의 평균 물가수준을 100.0이라고 볼 때 2001년 9월의 물가수준을 지수로 나타내면 127.7이 되며, 물가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지난 달이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몇 % 변동했는지를 계산하여 활용하게 된다.

라. 물가통계의 종류

물가통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작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하는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등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그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 즉, 공장도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모집단 거래액은 각각 296.2조원, 89.4조원으로 상품은 광공업통계조사의 제품 출하액에서 수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서비스는 95년 산업연관표 상의 산출액에서 수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사대상품목은 상품의 경우 개별품목의 국내 거래액이 모집단 거래액의 1/10,000 (296억원)이상, 서비스의 경우 1/2,000(447억원)이상 거래 비중을 갖는 품목으로서 동종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또한 품질규격이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949개 품목(상품 874개, 서비스 75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중치는 선정된 품목의 거래액에다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선정되지 못한 유사품목의 거래액을 합산하고 이를 모집단 거래액으로 나누어 1,000분비로 산출하고 있다. 1995년 기준의 산출결과를 보면 상품은 768.2, 서비스는 231.8로 나타났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로서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 관련업체의 수출 채산성 측정지표 등으로 이용된다.

가중치 모집단은 수출입액으로서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099억\$, 수입 물가지수의 경우 1,233억\$로 그 포괄범위는 95년도 통관기준 총수출입액 중에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품목, 가공·중계무역 및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입 품목과 주문 또는 소량 다품종 생산 등으로 지속적인 가격시계열 유지가 어려운 품목의 수출입액이 제외된 나머지이다.

조사대상품목은 개별 품목의 수출입액이 모집단거래액의 1/2,000이상인 품목중에서 동종 산업내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향후 가격시계열 유지가 가능한 품목이다. 선정결과를 보면 총 443개 품목으로 수출이 220개, 수입이 223개 이다.

가중치는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공산품이 98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품은 14.0, 공산품은 0.8이며, 수입물가지수의 경우는 공산품 800.0, 농림수산물 67.7, 광산물 132.3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의 구입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자료로서 농가교역 조건 산출 등을 통한 농촌경제동향분석 및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다.

농가판매가격지수의 가중치 모집단은 농가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현금 수입총액으로서 1995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호당 평균 현금수입총액에서 겸업수입, 사업이외 수입, 이전수입, 재산적 수입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농가구입가격지수의 가중치 모집단은 농가가 영농 및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현금 총액으로 1995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의 호당 평균 현금지출총액에서 겸업지출, 사업이외지출, 재산적 지출, 교제증여, 관혼상제비 등을 제외한 현금지출액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재산적 지출 등 대농구 및 대농물 구입을 위한 현금지출액과 현물로 지급한 농촌 임료금은 가중치 모집단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품목은 품목별 현금 수입·지출액이 가중치 모집단인 농가의 현금 판매총액과 지출총액 중에서 1/10,000이상의 거래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동종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품질규격이 계속성을 지니고 있어 가격계열의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서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69개, 농가구입지수는 30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물가통계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현상의 분석목적에 어느단계의 가격변화가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의 소비생활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업의 생산활동 여건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다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농가의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 농촌물가통계를 이용해야만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동일한 통계를 이용한다 하여도 어느 분류의 물가통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다. 생산자 물가통계는 가공단계별 지수나 품목 지수의 유용성이 높고 소비자물가 통계는 총지수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시사하는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지수 수준을 비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동일한 항목의 시계열에서는 지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이 다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수 수준이 물가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동일한 조사규격으로 지수계열을 연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항목의 시계열 내에서도 지수 수준이 가격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넷째는 포괄범위의 문제로서 이러한 점은 국가간의 비교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명칭이라 할지라도 지수의 포괄범위는 국가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비자물가지수의 작성방법 및 활용

가. 소비자물가지수의 개념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한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품목의 종합적인 가격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되는 해(1995년)에 가게에서 구입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넣은 시장바구니(509개 품목)의 금액이 측정시점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가구원수의 변동 또는 자녀의 성장 등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의 변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소비자물가지조사는 1937년 경성상공회의소가 서울 지역에서 실시한 10여개 품목의 소매가격 조사이다. 1945년 8월부터 조선은행(한국은행의 전신)에서 인수하여 조사하였으며 1947년에는 1936년 기준 지수와 1945년 8월 기준의 『서울소매물가지수』를 작성 발표하였다.

1949년 4월에는 품목별 가중치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1947년을 기준으로 한 『전국소매물가지수』를 작성 발표하였다. 그 당시에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편제한 지수였으며, 서비스요금까지를 포함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 것은 1955년 기준 『서울소매물가지수』부터이다.

1965년 기준 지수부터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한국은행에서 소비자물가지조사 업무를 인수하여 전국의 주요도시를 포함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 발표하였다. 그후 매5년마다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물가지수 개편을 하여 왔다. 현재는 통계청에서 199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다. 기준시점

지수는 비례식에 의해 산출되는 수치이므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어디로 정하는 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수의 기준년도는 가격수준이 안정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 경제지표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가격비교 및 가중치의 기준시점은 1995년이다.

라. 가중치 모집단

1995년기준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모집단은 도시가계조사 결과의 소비지출액중 이전지출 성격을 갖거나 조사가 곤란한 종교관계비, 회비, 경조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소비지출액과는 별도로 집계한 전세 및 보증부 월세평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 1995년 기준 가중치 모집단(1,302,702원)

- 소비지출액-경조비-종교관계비-회비+전세 및 보증부 월세평가액

마. 조사품목 선정 및 가중치의 산출

조사품목은 1995년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130만원 중에서 1/10,000(월 130원)이상 지출하는 509개 품목(상품 374개, 서비스품목135개)이 선정되었고, 개별 품목의 가중치는 품목별 소비지출액 비중을 토대로 1,000분비로 산정한 결과이다.

바. 조사지역, 조사시장 및 대상처

소비자물가통계의 조사지역은 전국의 주요 도시(36개)이며 조사시장은 도시규모에 따라 2~11개의 시장이 선정되어 있다. 또한 조사대상처는 조사시장에서 소비자의 출입이 가장 많은 약 12,000개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12,000개이다.

사. 가격조사

(1) 조사시점

가격조사 주기는 가격변동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또한 조사원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은 월 3회, 공업제품과 서비스품목은 월 1회 조사하며, 조사시점은 매월 5, 14, 23일이 포함되어 있는 週의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에서 선정하여 조사한다.

(2) 조사방법

가격조사는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조사가격은 지정된 조사대상처에서 실제 거래되는 정상적인 현금판매가격을 조사하며 다음과 같은 비정상 가격은 조사하지 않는다.

- 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정상 가격
- 나) 비정상적인 할인가격
- 다) 다량거래 또는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가격
- 라) 외상이나 할부판매가격

(3) 조사규격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은 시장점유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한다. 해당품목의 가격변동을 1개의 조사규격이 대표할 수 없는 경우는 복수의 조사규격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아. 지수작성 및 분류

(1) 지수의 산식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산식은 지수작성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준시점고정 가중산술평균법』, 즉 라스파이레스 산식(Laspeyres' Formula)을 사용한다. 이 산식은 수량을 기준시에 고정하고 가격의 변화만을 살펴보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명확한 반면, 수량을 고정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므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과 수량의 상관관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I = \frac{\sum PtQo}{\sum PoQo} \times 100 = \frac{\sum \frac{Pt}{Po} W_o}{\sum W_o} \times 100, \quad * W_o = P_o Q_o$$

Po : 기준시점의 가격 Qo : 기준시점의 수량

Pt : 비교시점의 가격 Qt : 비교시점의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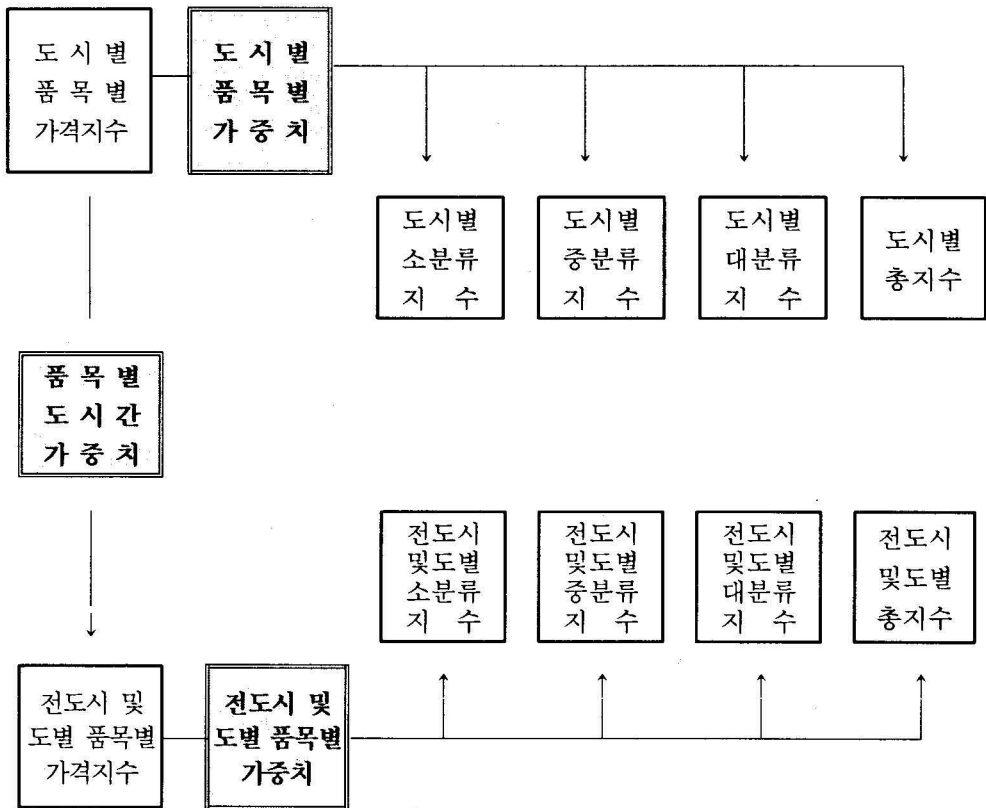
Wo : 기준시점의 가중치

(2) 지수의 계산과정

(가) 도시별로 품목별 가격지수를 작성

(나) 품목별 도시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또는 광역자치단체인 道)의 품목별 지수를 작성

(다) 전국의 품목별 지수에 전국의 품목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국 평균 물가 지수를 산출



(3) 지수분류

(가) 기본분류지수

기본분류체계는 ILO 권고안의 가계소비지출 분류체계에 따른 것으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등 9개 대분류와 43개 중분류, 57개 소분류로 나누어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수 및 가중치 비교

구 분	품 목 수		가 중 치	
	90기준	95기준	90기준	95기준
총 지 수	470	509	1,000.0	1,000.0
식 료 품	167	171	324.9	302.9
주 거 비	20	18	141.7	148.3
광 열·수 도	9	8	45.3	41.1
가 구·가사용품	62	63	62.0	48.1
피 복 및 신 발	53	54	88.4	81.9
보 건 의 료	27	32	54.5	51.3
교 육·교양오락	71	88	142.4	159.9
교 통·통 신	26	40	93.6	118.1
기 타 잡 비	35	35	47.2	48.4

(나) 생활물가지수

① 작성배경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종합소비자물가로서 소비지출비중이 큰 509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전국적으로 평균하여 작성되므로 종합소비자물가로서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빈도에 따라 소비자별로 각각 다르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사이에 차이를 느낀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을 지표를 통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 언론기관 및 물가통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가통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 품위주로 154개 품목(도시가계 평균소비지출액의 47.0%)을 대상으로 생활물가지수를 새로이 작성하여 98년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또한 보조지표로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② 작성대상품목

대상품목을 보면 쌀, 두부, 콩나물, 쇠고기 등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지출하는 기본생활품, 과일류, 세탁비누, 세탁료, 건위소화제 등 소득증감과 크게 관계없이 지출해야 하면서 분기에 1회이상 구입하는 품목 및 남녀기성복, 운동화, 도서, 중·고납입금 등 자주 구입하지는 않지만 소비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일부품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물가지수 대상품목(품목:154개, 가중치 : 469.8)

	선 정 품 목
식료품 (89개)	<p><곡물 및 곡물가공품> 쌀(276), 라면(19), 두부(13), 밀가루(02), 국수(06)</p> <p><육류 및 육류가공품> 쇠고기(한우99), 쇠고기(수입56), 돼지고기(83), 닭고기(23), 소시지(06), 햄(30)</p> <p><유 량> 달걀(27), 우유(배달51), 분유(13)</p> <p><아귀류 및 가공품> 조개(31), 갈치(31), 명태(13), 고등어(12), 냉동오징어(21), 마린펄치(18), 조개(13), 생선 통조림(13), 생선묵(14), 맛살(05), 오징어포(11)</p> <p><채 소> 무(18), 배추(37), 파(17), 양파(09), 시금치(08), 콩나물(11), 상추(11), 당근(05), 오이(15), 호박(07), 토마토(13), 감자(17), 풋고추(12), 마늘(04), 부추(04), 바섯(10)</p> <p><해초 및 가공품> 김(18), 미역(08)</p> <p><과 실> 사과(47), 배(15), 밀감(33), 포도(25), 참외(21), 수박(43), 딸기(17)</p> <p><유자·조미료> 참기름(17), 식용유(08), 생강(03), 소금(04), 설탕(04), 마늘(24), 혼합조미료(04), 고추장(04), 된장(03), 간장(05), 고춧가루(20)</p> <p><빵 및 과자> 빵(32), 식빵(06), 초코파이(06), 스낵과자(28), 김(01), 떡(26), 아이스크림(10)</p> <p><차·음료> 분말커피(14), 콜라(06), 과일액타(14), 오렌지주스(14), 유산균발효유(19), 전통음료(05)</p> <p><주 류> 맥주(65), 소주(28)</p> <p><외 식> 설렁탕(42), 비빔밥(46), 갈비탕(57), 된장찌개백반(61), 불고기(62), 튀김닭(30), 칼국수(41), 조리 라면(25), 김밥(47), 자장면(39), 짬뽕(33), 햄버거(25), 다방커피(27)</p>
주 거 비 (1개)	공동주택관리비(68) *전세(925) *월세(350)
광열·수 도(6개)	전기료(142), 상수도료(41), 하수도료(11), 등유(105), 프로판가스(22), 도시가스(62)
가구집기 가사용품 (7개)	쓰레기봉투료(17), 세탁비누(03), 가루비누(12), 삼유연화제(08), 화장지(두루마리 17, 화장지(상자 04), 부엌용세제(03)
피복 및 신발 (12개)	양복세탁료(21), 아동복(41), T셔츠(62), 잠바(50), 운동화(25), 가성신사복(66), 고성숙녀복(105), 스타킹(07), 양말(14), 란닝셔츠(06), 여자구두(34), 남자구두(24)
보건 의료 (6개)	진찰료(59), 감기약(16), 건위소화제(15), 위생대(07), X-ray촬영료(17), 자양강장제(30)
교육·교 양 오락 (12개)	신문구독료(21), 유선방송비(11), 비디오테이프대여료(10), 납입금(중학)64, 납입금(시립)68, 납입금(유치원)74, 입시학원비(단과)76, 피아노학원비(57), 가정학습지(59), 도서(38), 노래방이용료(13), 영화관람료(09)
교통·통신 (12개)	사내버스료(일반)85, 사내버스료(학생)15, 사내버스료(좌석)29, 택시료(75), 휘발유(227), 기본전화료(13), 사내 전화료(56), 시외전화료(52), 공중전화료(13), 시외버스료(24), 전철료(22), 고속버스료(12)
기타잡비 (9개)	목욕료(68), 담배(국산)66, 마용료(과야)44 컷트(10), 이용료(40), 삼푸(07), 화장비누(03), 차약(03), 로션(04)

()안의 숫자는 가중치임. *표시는 보조지수 품목임.

(다) 기타 특수분류지수

① 상품성질별 지수

조사품목을 상품(374개)과 서비스품목(135개)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격변동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이다.

	품 목 수	가 중 치
총 지 수	509	1,000.0
○ 상 품	374	514.0
1. 농축 수산물	76	144.8
2. 공업 제품	298	369.2
○ 서 비 스	135	486.0
1. 집 세	2	127.5
2. 공공 요금	47	131.4
3. 개인서비스	86	227.1

② 신선식품 지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중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47개)만을 별도로 집계한 지표이다.

	품 목 수	가 중 치
총 지 수	509	1,000.0
○ 신선식품지수	47	65.3
신 선 어 개	10	16.0
신 선 채 소	23	23.4
신 선 과 실	12	23.2
기 타	2	2.7
○ 신선식품제외지수	462	934.7

③ 구입빈도별 지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입 빈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품 목 수	가 중 치
총 지 수	509	1,000.0
월 1회이상	58	223.0
분기 1회이상	82	172.7
반기 1회이상	75	136.4
연 1회이상	90	142.5
연 1회미만	204	325.4

④ 자가주거비용포함지수

자기소유주택의 주거비용을 귀속임대료(기회비용) 개념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지표이다.

자. 지수의 해석

(1) 물가수준의 비교

개개의 상품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을 과거에 ○○○원 하던 것이 현재는 ×××원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에 대한 현재의 물가수준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지수의 크기가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해당분야에서 기준년도와 동일한 소비량을 구입하게 될 때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물가수준의 변동률 측정

(가) 전월(년)비

전월(년)비란 금월(년)의 물가수준이 전월(년)에 비하여 어느 정도 변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금월(년)지수 - 전월(년)지수

$$\cdot \text{전월(년)비}(\%) = \frac{\text{금월(년)지수}}{\text{전월(년)지수}} \times 100$$

(나) 전년동월비

전년동월비는 금월의 물가수준이 전년동월에 비하여 어느 정도 변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금월지수 - 전년동월지수

$$\cdot \text{전년동월비}(\%) = \frac{\text{금월지수} - \text{전년동월지수}}{\text{전년동월지수}} \times 100$$

차. 소비자물가지수의 이용

(1) 물가지수의 이용범위

소비자물가지수는 첫째, 물가수준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가계의 화폐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다시말해서 도시가계의 가계수지, 국민소득계정, 도소매 판매액지수 등 소비와 관련된 다른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Deflator) 자료로 이용된다는 뜻이다. 즉 경상금액으로 파악된 통계로부터 수량의 변화를 산출하는 계수로 물가지수가 이용되는 것이다. 둘째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생명보험료, 연금 등의 책정자료로 이용된다. 다시 말해 향후에도 일정한 소비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물가의 상승분 만큼 소득을 높여주는 계수로 이용된다. 그밖에 물가대책, 가계저축의 이자책정 및 경기동향 측정 등의 기초자료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2) 물가지수 이용시 유의점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변동이 도시가구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어느 특정 가구나 계층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도시 가구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수는 가계소비지출을 변동시키는 요인중 순수한 물가변동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 가구원수의 변동 및 자녀의 성장 등에 따른 지출규모의 변동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역별 가격지수만 가지고는 지역별 가격비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지역별 기준시점 가격이 다르더라도 지역별 기준시점 지수는 모두 100.0으로 하여 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준시점 가격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일정기간이후 가격 상승폭이 높아 지수수준이 높아졌더라도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99년 12월 쌀의 가격지수가 서울 120, 대전 115로 서울이 높더라도, 95년도 서울 쌀가격이 대전보다 낮았다면 99년 12월의 서울 쌀가격이 대전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쌀(20kg)		95년 평균	99. 12월	증감률(%)
가 격(원)	서 울	38,000	45,600	20.0
	대 전	40,000	46,000	15.0
지 수	서 울	100.0	120.0	20.0
	대 전	100.0	115.0	15.0

3.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와의 차이

가. 차이요인

① 평균 또는 개별 문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어촌세대 및 단독세대를 제외한 전세대를 대상으로 『평균세대』 개념의 물가변동을 측정하는데 반해서 체감물가는 『개별세대』 개념의 물가변동을 나타낸다.

이 경우 평균세대와 개별세대간에는 소비구조와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② 기준시 구입수량과 품질의 고정문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시점에서 구입수량을 고정하고 순수한 물가의 변동을 측정하는 반면, 체감물가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계비 증가, 가구원수의 증가에 따른 생계비 증가 및 품질향상에 따른 가격인상까지도 물가상승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③ 제외 품목문제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상품목은 소비지출에 한정하고 있으나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저금, 유가증권 구입 등 저축 및 재산 구입 등 실지출이외의 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감물가는 이러한 품목까지도 포괄하여 물가변동을 느끼게 된다.

④ 기억에 의한 착각문제

개인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기억은 구입빈도가 낮은 상품의 변동보다는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의 변동에, 가격이 내린 품목보다는 가격이 오른 품목에 대한 이미지가 오래 남겨져 있는 경향이 있다.

나. 지표로 본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차이

현재 주지표로 작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조지표인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지수, 신선식품지수를 통해서 98년 1년동안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수준을 파악해 보면 소비자물가지수(509개 품목)는 7.5% 상승한 반면, 구입빈도가 높은 생필품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154개 품목)은 11.1% 상승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더 큰 물가상승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1회이상 구입하는 품목의 상승률이 12.9%나 상승하여 체감물가 수준이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지수		신선식품지수
			월1회이상	분기1회이상	
· 98년 평균(%)	7.5	11.1	12.9	11.9	8.3
· 99년 평균(%)	0.8	2.4	4.4	-0.6	8.6
· 2000년	2.3	3.6	3.7	2.8	-1.9

4. 소비자물가지수의 주요작성방향

가. 이용자 중심의 통계생산

소비자물가통계는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용자측면에서 보다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8년 4월부터 소비자단체대표, 노동단체대표, 언론기관 및 물가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가통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소비자물가통계 작성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나. 통계의 이용도 및 통계작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소비자물가통계를 발표할 때 지수와 증감률만을 발표하였는데 98년 4월부터는 36개 도시별로 조사된 가격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매월 가격의 변동이 지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통계작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다.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임

소비자의 기호가 변함에 따라 소비구조변화가 지수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가중치를 변경하는 연쇄지수(Chain Index)를 작성하여 보조지표로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할인점의 증가추세 등 상권의 변화를 매년 점검하여 지수작성에 반영하고 있고, 조사규격이 현실성이 없을 때는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수시로 현실성있는 조사규격으로 바꾸어 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라.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의 개발

국가간의 화폐를 교환할 경우 환율을 이용하게 되는데, 환율은 각국간의 물가수준차이와는 관계없이 거시경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국 화폐간의 상대적 구매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우리나라 화폐를 미국 달러로 바꾸었을 때 그 금액으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국가간의 물가수준차이를 제거하여 국가간의 화폐 구매력을 동일하게 바꿔주기 위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PPP)를 작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9년기준 지표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고 용 통 계

목 차

1. 고용통계의 목적 및 의의	53
2. 고용통계 조사의 유형	54
가. 가구조사	54
나. 사업체조사	55
3. 가구조사의 조사방법	56
가. 조사방법 비교	56
나. 노동력 접근법의 특징	58
다. 노동력 접근법의 주요 개념들	58
라. 노동력 정의의 국제비교	62
4. 경제활동인구조사	63
가. 조사목적	63
나. 조사연혁	64
다. 조사개요	64
5. 주요 고용지표	66
가. 경제활동참가율	66
나. 취업자	66
다. 실업률	67
6. 이용상 유의점	68
가. 구직단념자	68
나. 불완전 취업자	69

1. 고용통계의 목적 및 의의

통계조사를 통해 사회현상을 계량화하는 데 있어 우선 중요한 것은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점이다. 즉 다양한 사회현상의 어떤 측면을 파악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경우에만 조사의 대상, 조사의 내용, 조사의 방법 등이 명료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점은 고용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고용통계의 목적은 고용정책의 대상, 즉 한 사회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이들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통계의 목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대상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고용정책은 적절한 '일자리'의 제공이 초점인 반면, 사회복지정책은 적절한 '삶의 질' 수준 확보에 초점이 있다. 물론 '일자리'를 갖는 것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 직장을 제공하는 것은 실업자의 노동능력 발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용정책의 대상과 복지정책의 대상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실업자의 경우,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모든 실업자가 각자의 재산상태 등과 무관하게 고용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복지정책의 입장에서는 일정 재산수준이상의 실업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안전취업자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점에서는 고용정책의 1차적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정책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사이의 구분은 고용통계와 사회복지통계의 관계에도 반영된다. 즉 고용통계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파악이 주목적인 반면, 복지통계는 일자리의 보유여부와 다소 무관하게,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사람과 가능치 않은 사람의 파악이 주목적이다. 이 경우 고용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불안정한 직장을 갖고 있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고용정책의 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고용통계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고용통계조사의 유형

고용통계는 조사방법과 자료의 출처에 의하여 크게 두가지 형태로 조사된다. 하나는 가구 조사(Household survey)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체 조사(Establishment survey)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업체조사가 선행되어 발전하였고 가구조사는 노동력개념이 채택된 후 본격적으로 사용해진 조사방법이다. 사업체조사는 한 사업체에 취업해 있는 사람이 얼마 인지 조사함으로써 취업자, 특히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자기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아예 실업자 등은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가구조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각 가구에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장이 없는 사람과 실업자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체 조사와 가구조사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가지며, 경제 전체의 취업 및 실업 상황 파악에 있어서는 가구조사가 상대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 가구조사(Household Survey)

고용통계 작성을 위하여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되는 조사에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조사』 및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로서 1957년부터 내무부 통계국에서 노동력조사로 시작된 이후 1961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분기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재개되었으며 1982년 7월부터는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조사범위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이며 약 30,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만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취업과 실업 등을 조사한다.

고용구조조사는 1983년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여 1992년에 제4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약 12만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될 수 없는 취업의 질, 실업의 내용 및

잠재노동력 실태 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증대되고 있는 지역고용통계 작성에도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시·도간, 산업간, 직종간의 노동력 이동실태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4차 조사 이후 인구주택 총조사등 다른 대규모 조사와의 조사시기 중복으로 인한 인력동원 등 조사과정상의 어려움으로 부실조사의 우려가 있고, 또 1989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역별 자료가 공표되고 있어 조사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여 1997년에 제5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960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로 시작된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이는 인구의 크기·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모든 특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에 덧붙여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도 조사하고 있어 취업구조, 노동력의 상태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총조사 자료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만,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인 관계로 예산이 많이 들고 집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사업체조사(Establishment Survey)

사업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 중 일부분의 표본을 뽑아서 사업체 단위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취업자수는 물론 취업시간, 임금, 직종, 입직 및 이직, 산업재해, 보험, 인력계획, 직업훈련 등 여러분야에 걸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노동인구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또 그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취업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사업체조사에만 의존할 경우 이들 소규모 사업체가 누락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체조사에는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및 『노동력수요동향조사』가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64년에 시작된 노동이동조사를 시초로하여 1969년부터는 동 노동이동조사와 매월 근로자임금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비농림어업부문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약 5,600개를 대상으로 상용근로자 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급여액, 입·이직률 등을 조사한다.

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1964년 이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매년 조사하였으나 1964년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에 대하여 근로자 5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종류별, 종사상지위별, 연령계층별, 성별 종사자수 및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된 4월 급여총액 등을 조사하여 각종 노동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노동력유동실태조사는 1971년에 연2회 조사로 시작하였으나 1980년 연1회로 변경하였다가 1982년부터 다시 연2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농림어업부문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업체 약 4,100개를 대상으로 입직자 및 이직자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인력수급, 보험료율 산정 등 노동정책 입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력수요동향조사는 1976년부터 연2회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연1회, 1992년부터는 연2회, 1994년부터는 연1회로 작성하고 있으며 조사명칭도 고용전망조사에서 1995년부터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로 변경되었다. 조사대상은 매월 노동통계조사와 같으며 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과부족인원과 국가자격증 소지인원을 조사하여 사업체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3. 가구조사의 조사방법

가. 가구조사의 조사방법 비교

고용통계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유업자(有業者)접근법 : 평소 수입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유업자(有業者)와 무업자(無業者)를 구분
- ② 노동력접근법 : 일정한 조사대상기간을 설정하고, 그 동안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 ③ 평상상태접근법 : 일정한 조사대상기간(장기간)을 설정하고, 그 동안의 주된 경제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역사적으로는 유업자접근법이 먼저 가구조사에서 이용되어 왔으나, 고용상황 파악에서의 문제점에 따라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게 되고, 이후 노동력접근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즉 유업자 접근법은 '평소'의 수입있는 일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이 경우 '평소' 개념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또한 평소에는 일하지 않다가 새로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실업자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접근법은 현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일본의 5년주기 취업구조조사에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노동력접근법은 현재상태접근법(actual status approach)로도 불리며, 조사대상기간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조사대상기간중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를 구분한다. 특히 이 접근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식적인 고용통계 작성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83년 13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채택된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구조사를 실시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은 1983년 ILO에서 제시된 것으로, 조사대상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동안의 주된 경제활동상태(usual status)에 따라 구분한다. 이 접근법은 과거 활동상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기억이 어려운 점 등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실업보험제도가 잘 발달된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구인·구직정보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집계하여 실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보통 직업안정소 방식으로 부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파악하고, 특히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의 상세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기관 통계방법은 국가의 구호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 등록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규 실업자와 많은 여성들이 누락되므로 실업자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각국별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른 점 때문에 국제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각국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노동력 접근법을 채택하여 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통합 차원에서 각국 거시경제지표의 조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 노동력접근법의 특징

노동력 접근법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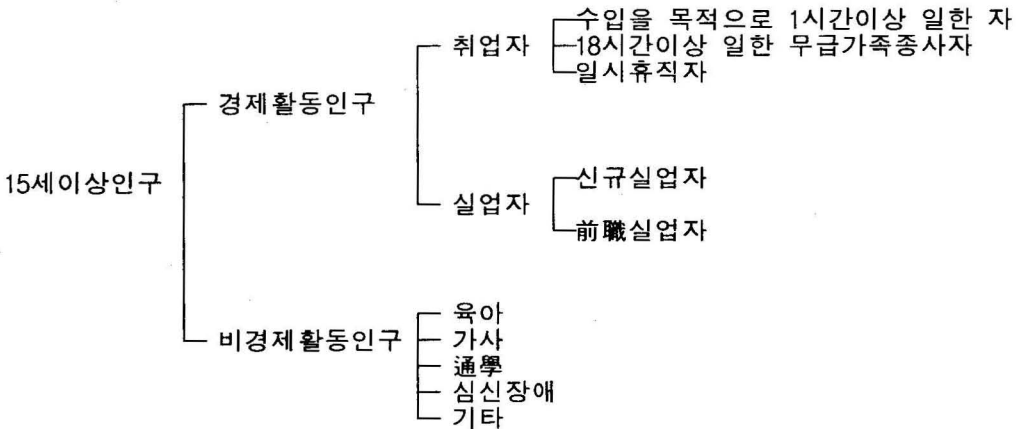
- ① 단기고용통계의 작성이 목적 : 노동력 접근법은 월별, 분기별 고용사정의 파악을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력의 규모 파악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 ② 짧은 조사대상기간의 설정 : 노동력 접근법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을 엄격하게 정의하는데, 단기고용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1일 혹은 1주를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주기인 1주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채택하고 있다.
- ③ 구체적 활동을 기준으로 한 구분 : 노동력 접근법에서는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희망 등이 아니라, 취업활동이나 구직활동 등 구체적 활동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 ④ 취업자 우선 구분 : 노동력 접근법에서는 취업자를 우선 파악하고, 다음으로 실업자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 접근법의 취지가 취업자와 실업자를 우선 가려내는데 있음을 의미한다.
- ⑤ 엄격한 조사기준의 설정 : 노동력 접근법에서는 지역간, 시점간,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정의된 조사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 노동력접근법의 주요 개념들

노동력 접근법에서 이용되는 주요 개념들로는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있다. 이들의 관계는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노동가능인구는 한 사회내에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노동력의 총규모를 나타낸다. 이 경우 노동가능인구는 일정연령이상(혹은 일정연령이하 포함)의 총인구가 되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 12세, 이태리 14세, 일본 15세, 미국은 16세 이상으로 각국의 노동가능인구 연령제한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1986년까지는 하한연령을 14세로 하였으나,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여 1987년 1월 부터

는 하한연령을 15세로 상향조정하여 노동가능인구를 구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때로는 노동이 가능하나, 노동가능 하한연령은 정하고 상한연령은 정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통례이다.

<그림1> 노동가능인구의 구성



노동가능인구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인구

(가) 취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중에서 아래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조사대상주간중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
- ③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주간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이 경우 '수입'의 구체적 의미는 임금 혹은 이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주간에 현금수입이 없더라도 임금 혹은 이윤을 얻기 위해 일을 한 경우에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어떤 활동이 '일'로 구분되는 기준은 국민경제의 부가가치생산에 대한 기여여부가 된다. 특히 이는 국민소득통계의 '생산'개념과 그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국민소득 통계상의 생산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장내생산(market production)을 모두 포함하며, 시장의 생산(non-market production)중 시장내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생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시장의 생산중 단순한 가내수리 등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이러한 활동만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소득 통계에서 비생산적 활동으로 간주되는 활동들, 예컨대 도박, 매춘 등의 불법행위, 순수가내노동, 자원봉사, 강제노역, 단순투자활동 등도 '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당 1시간 이상 취업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취업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너무 짧은 기간의 취업을 정상적인 취업과 같이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 제기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는 고용통계의 작성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즉 고용통계의 작성 목적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파악에 있다. 따라서 취업시간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취업하였는지 여부가 기본적인 구분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취업시간이 극히 짧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사람도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에는 복지정책, 즉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초점으로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된다. 물론 불안정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것도 고용정책의 한 목표이겠으나, 그 경우에도 일자리를 아예 갖지 않은 사람과는 구분되어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취업자의 구분이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은 고용통계의 작성 목적에 비취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취업자를 구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적 왜곡이 생긴다. 즉 취업시간이 일정시간 이하인 사람이 취업자에서 제외되면, 실제로는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사람이 취업자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일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과대평가되는 등의 통계적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통계적 왜곡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취업시간이 아니라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자를 분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ILO에서는 일자리

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자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다면 취업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조금’의 기준으로 1시간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취업자의 대부분이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고, 18시간 미만의 취업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취업시간	0*	1-3	4-7	8-17	18-35	36미만	36이상
2001. 5월 (%)	0.7	0.1	0.4	1.6	5.8	8.0	91.3

주) : 일시휴직

(나)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중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no work)
- ② 이 기간 중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사람(job search)
- ③ 일이 있을 때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availability for work)

이상의 3가지 조건은 조사대상주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를 구분하는 ILO의 노동력 접근법에 따른 실업자 정의에서 핵심적인 기준이다. 즉 실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라는 특정한 경제활동의 수행이 요구되고, 또한 조사대상주간의 공급가능한 인력 파악이 노동력 접근법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취업가능성의 조건이 요구된다.

실업자는 취업상태에 있다가 직장(일)을 바꾸기 위하여 생기는 前職실업자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생기는 新規실업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만일 전년대비 10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을 때 이들 모두를 失職者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새로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10만명이라고 하여 이들이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구직활동 및 취업가능성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실업자로 분류된다.

(2)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이나 실업상태에 있지 않은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소·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한 사람 등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호황기에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전망이 밝기 때문에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이미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고 경제활동인구중의 실업자로 집계된다. 그러나 불경기가 되면 구직중에 있던 사람들도 구직전망이 나빠져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또한 불경기시에는 가구주의 실업 때문에 그 배우자나 자녀가 부득이 새롭게 구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상태에 있느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느냐는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대책을 세워 당초에 예상한 자들을 취업시켜도 실업자는 계속 남아 있게 된다.

라. 노동력 정의의 국제비교

국가마다 노동력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의 취업과 실업의 내용을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준은 모두 ILO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다만 각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다소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OECD에 가입해 있는 선진각국의 경우에는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을 다소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노동시장이 공식화되어 구직에서 채용에 이르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면, 일단 구직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구직활동의 대상기간을 1주일 정도로 좁게 설정하면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조사하고 있으나, 구직활동의 대상기간을 좁게 설정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조사과정에서 실업자로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OECD의 많은 나라들은 구직활동의 대상기간을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하여 지난 4주간으로 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모

두 실업자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이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반영하여 '98.1월 조사표개편을 거쳐 '99.6월부터 OECD 기준 실업률을 병행공표하고 있다.

<표2> 주요국가의 노동력정의 비교

	ILO	OECD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통계수집방법			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노동력조사	등록통계
대상연령	일정연령 이상인구	일정연령 이상인구	15세이상	16세이상	15세이상	16세이상
대상기간	1일 또는 1주간	1일 또는 1주간	15일이 속한 1주간	12일이 속한 1주간	월말의 1주간	매월말일
조사방법	-	-	CAPI*	CAPI*	자계식조사	-
표본규모	-	-	30,000가구	60,000가구	40,000가구	-
개념 · 취업자	1시간이상	1시간이상	1시간이상	1시간이상	1시간이상	-
·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와 동일	취업자와 동일	18시간이상	15시간이상	1시간이상	-
· 구직활동 대상기간	1주간	4주간	1주간 및 1개월간	4주간	1주간	-

* 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4.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의 월별 취업 및 실업 동향은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이하에서는 이 조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가. 조사목적

취업·실업·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고용구조·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고용창출·직업운영·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나. 조사연혁

1962년 8월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수행을 위해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 오다가, 1982년 7월부터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주기를 월 별로 조정하였다. ILO 권고안이 1982년 개편됨에 따라 1983년 6월부터는 보완된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1987년 1월 부터는 조사대상 하한연령을 14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경기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절조정실업률을 작성함으로써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1988년 7월 이후 기존의 표본 17,500가구를 198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결과에 기초한 신표본 32,500가구로 확대 교체하여 전국뿐만 아니라 시·도별 자료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3년부터는 34,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994년 6월에 지역별 인구가동을 감안하여 새로 작성된 인구추계를 기초로 1989년 이후 자료에 대해 시계열 조정을 함으로써 고용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였다.

1998년 1월부터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30,000가구로 표본이 개편되었고,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에 따라 증가되는 지역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작성해 오던 시·도별 고용통계를 월별로 작성, 공표하고 있다.

다.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전국 가구중 표본으로 뽑힌 30,000가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이다. 여기서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대상주간에 새로 전입하여 온 사람도 포함된다.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조사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조사대상 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한다.

(3) 조사지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섬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2,035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계통추출하여 1,230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한다. 선정된 조사구는 조사구별로 평균 8가구가 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중앙에서 지정한 표본구역을 포함한 인접된 3구역을 추출한다. 이 구역내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데 98.1월부터 약 30,000가구(전국가구의 약 0.2%)가 조사되고 있다.

(4) 조사방법

통계청의 47개 지방사무소 및 출장소의 조사담당 직원이 표본가구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대하여 조사대상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며, 조사표 작성은 조사직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기입하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따르고 있다.

(5) 조사항목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등 인적사항 6개와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1주간 구직활동 등 확인항목 5개, 취업시간,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등 취업자 항목 6개,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등 실업자 항목 5개, 취업의사 유무, 취업가능성 여부 등 비경제활동인구 항목 5개 산업, 전직 유무, 이직 이유, 사업체 종사자 규모 등 전직관련 항목 5개로 총 32개의 조사항목이 있으나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조사되는 항목수는 달라진다.

(6) 결과공표

매월 조사결과는 집계, 분석되어 전국 및 시·도별 주요 고용지표가 조사 익월 22일경에 「매월 고용동향」으로 공표되며, 상세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보」에 수록, 공표되고 있다. 연간 동향은 세분된 통계표가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수록되어 매년 5월경 발간되고 있다. 또한 매월 공표된 결과와 시계열자료는 인터넷(www.nso.go.kr)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CD-ROM도 제작·배포되고 있다.

5. 주요 고용지표

가.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총 인구나 15세 이상의 인구규모가 같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르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노동력은 달라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구조, 여성의 취업에 관한 사회의 인식, 청소년의 진학률, 여자들의 결혼연령과 출산자녀의 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의 정도, 자녀들에 대한 육아 및 유아교육시설의 보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표3>과 같다. 2000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7%로,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74.0%, 여자 48.3%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 여부가 바뀌는 경우가 남자보다 많다. 이는 남자는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계속 머무르는 반면, 여자는 가계경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쉽게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표3> 한국과 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0년	2000년
전 체	57.6	59.0	60.0	62.0	60.5	60.7	67.2	62.4
남자	77.9	76.4	73.9	76.5	74.4	74.0	74.7	76.4
여자	39.3	42.8	47.0	48.3	47.4	48.3	59.5	49.3

나. 취업자

우리나라의 만 15세 이상 인구로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는 중요한 고용통계지표중의 하나이다. 전체 취업자는 연령계층,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및 취업시간대별로 분류되어 제공됨으로서 주요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 실업률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과제의 하나가 완전고용이라 한다면 이는 사실상 실업의 문제로 간주해도 된다. 따라서 실업은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어떤 원인으로 실업상태로 되었는가를 알아야 된다. 즉 실업의 발생원인별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원인에 대응하는 실업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표4> 한국과 외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한 국							미 국	일 본
	1970	1980	1990	1995	1997	1999	2000	2000	2000
진 체	4.4	5.2	2.4	2.0	2.6	6.3	4.1	4.0	4.7
남 자	5.3	6.2	2.9	2.3	2.8	7.1	4.6	3.9	4.9
여 자	2.8	3.5	1.8	1.7	2.3	5.1	3.3	4.1	4.5

(2) 계절조정실업률

실업률에는 원계열 실업률과 계절조정 실업률이 있다. 원계열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계산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농업 생산과 제조업·건설업의 계절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계열 실업률에서 계절적인 영향을 배제하여 순수하게 경기의 측면에서 실업률을 산정한 것이 계절조정실업률이다.

실업률을 계절조정하는 이유는 3~7월인 농번기에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증하고 실업자는 급감하는 반면 11~2월의 농한기에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감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여야만 경기의 영향에 의한 실업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조정하는 방법은 최근 10년간 월별 실업률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1년간의 계절 진폭을 예상한 후 이들 진폭을 배제하기 위한 지수를 산정하여 계절조정 실업률을 산정하고 있다.

<표5> 월별 실업률과 계절조정 실업률

(단위 : %)

	2000년					200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업률	3.7	3.6	3.4	3.6	4.1	4.6	5.0	4.8	3.8	3.5
계절조정실업률	3.9	3.9	3.8	3.9	3.9	4.1	4.2	4.2	3.8	3.6

계절조정 실업률은 월별로 작성되는데 반드시 전월 실업률과 비교하여야 월별 경기영향에 따른 실업률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전년 동월 대비시에는 계절조정 실업률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원계열 실업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이용상 유의점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ILO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그런데 최근의 실업사태 하에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고용통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부의 공식실업자에 실망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더하면 99년초에 실제실업자는 200만을 이미 넘어섰고, 실업률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체감실업률은 정부의 공식실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이하에서는 체감실업률과의 괴리 원인을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ment)와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 문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구직단념자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통계는 유휴 노동인력의 규모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경기하강 및 경기 상승기에 노동인력의 유휴정도를 측정하여 실업 및 고용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이들의 분류기준에 대해 ILO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구직단념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여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업자로 분류되어선 안된다. 다만,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한 부분으로 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ILO 매뉴얼)

또 미국 등 구직단념자를 공표하는 선진각국의 경우에도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구직단념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각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들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도 곤란하다.

또한 구직단념자의 분류 기준에 대한 정확한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직단념자 정의의 개정에 따라 구직단념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1994년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개편에 따라 구직단념자 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규모가 1992~1993년의 110만명에서 1994. 1월 60만명으로 대폭 축소된 경우도 있다.

물론 구직단념자의 규모에 대한 파악은 고용정책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도 98.1월부터 미국의 CPS 조사 항목을 원용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의 검토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11월부터 조사표개편후 구직단념자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나. 불완전 취업자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은 ILO에 따르면 “취업자의 생산적 능력이 불충분하게 활용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상의 개략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완전취업에 대한 분명한 국제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ILO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98.10월 열린 16차 국제노동 통계회의에서 불완전 취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결의안도 채택하였으나, 여전히 향후 연구 및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의 부재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불완전취업의 개념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으로, 불완전취업자의 생산적 능력의 불충분한

활용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둘째로 불완전취업의 측정기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취업을 측정할 때 특정 취업시간 이하의 사람들로 한정할 것인지, 또 특정취업시간 이하의 사람들로 한정할 경우 몇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별로 불완전 취업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자 동향 발표시 취업시간대별로 취업자수를 발표하고 있고, 또 36시간미만 취업자에 대해서는 36시간미만 취업사유 및 추가취업·전직 희망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98년 5월분 고용동향부터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어서, 사업부진)로 18시간미만 일하였으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공표중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확히 불완전취업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통계적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제기준이나 타국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은 어디까지나 취업자의 일부이지,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표8> 월별 추가취업희망자 추이

(단위:천명,%)

	2000년					200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8시간 미만 취업자	579	506	481	543	686	816	784	649	556	483
추가취업희망자*	125	141	117	111	140	140	167	144	127	1127
(구성비)	(21.6)	(27.9)	(24.3)	(20.4)	(20.4)	(17.2)	(21.3)	(22.2)	(22.8)	(23.2)

주) 경제적 이유로 인한 18시간미만 취업자중 추가취업희망자

사 회 통 계

나. 사회통계의 특징과 목적

사회통계라고 하면 왠지 GDP나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통계보다 분명함이 덜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같다. 사회통계는 마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흥미위주의 수치이거나 또는 ‘믿거나 말거나’식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숫자화했을 뿐인 것으로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왜 그럴까? 사회통계가 다루는 관심대상 자체의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이 분야의 통계가 덜 발달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도 아니면 사용할 때의 부주의나 해석상의 애매함에 의해 이제껏 누적되어 온 일반적인 평판 때문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자.

(1) 사회통계의 관심대상

사회통계의 관심대상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의문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일부 사실이다. 즉, 사회 통계는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의 삶과 사회현상에 관련된 통계로서, 통계분석의 기법들을 현실문제에 적용하여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기본 목적이라고 볼 때, 사회통계의 관심대상 자체가 자연현상이나 객관적인 사물과 달리,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다.

사회통계의 관심대상인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인을 통제할 채 실험하거나 직접 물어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설계방법은 고전적인 연구방법인 실험이나 관찰보다는 조사방법을 많이 채택하게 된다. 그런데, 관심있는 어떤 사회나 인구집단들을 전부 조사하거나 관찰하기란 경비, 시간,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통계에서는 표본조사방법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조사는 언어로 된 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언어가 갖는 특성에 의해서 측정상의 비표본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응답자가 스스로 밝히는 내용(self-reporting)에 주로 의존하는 특성상 응답에 비표본오차가 생길 여지가 많아진다. 따라서, 실험에 의해 생산되는 통계나 양적 자료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통계에 비해 자료측정도구 개발과 자료수집과정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사회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므로써 확연히 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게를 잴 때 이용하는 저울은 무게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도구이다. 그런데 간혹 저울을 처음부터 조금 많이 나가게 불법으로 조절해 놓은 업소를 적발 단속하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즐겨 다니던 정육점에서 그러한 불법 저울을 계속 사용해왔다면, 그 동안 600g씩 구입해왔던 소고기 구입비는 양에 비해 타당성이 없었다고 말한다. 반면, 저울은 정확한데 물 먹인 소이기 때문에 처음 저울에 측정했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다가, 물이 빠지고 난 뒤 다시 재어보니 무게가 적게 나갈 경우 우리는 이 소의 무게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도이고, 측정하는 도구가 저울인 경우는 저울의 정확도에 따라 타당도는 좌우된다. 사회통계의 경우에는 주로 측정도구가 조사표나 설문지이므로, 설문지에서 규정한 개념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제대로 측정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한편, 신뢰도는 반복되는 측정에서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수준이 정해진다. 특히 사회통계의 경우에는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에 따라 신뢰도가 좌우되기도 하고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통계를 이용하고 인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고 정보를 요약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통계이용자들은 신뢰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는 통계를 사용하기를 원

한다. 그렇다면, 설문지나 조사표라는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라는 방법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통계에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3) 사회통계의 적절한 이용방법

먼저 통계가 생산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사용되었던 개념과 조사대상자 및 질문의 형태와 답변의 카테고리가 어떠했는가 까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된다. 예를 들면, 1998년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빠짐없이 조사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조사였다.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과연 붕괴되었는가 또는 현저하게 감소 되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회통계에서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스스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단순히 질문하는 형태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주관적 계층의식은 소득에 의한 계층만큼이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중산층의식이 사회의 안정에 대한 기대와 상대적 박탈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40%대부터 70%대까지 그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 과연 어느 수치를 믿어야 할 것인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먼저 조사 수행 기관의 의도나 조사의뢰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해 당사자거나 정책적인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결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답변 항목분류의 차이였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상층, 중산층, 하층으로 답변 문항을 설계한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하층 대신 서민층이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 하층과 서민층이 응답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름에 따라, 답변에 영향을 주어 서민층과 대비된 중산층의 비율은 하층과 함께 분류된 중산층보다 훨씬 적게 측정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또한 어떤 일간지에서 사용한 설문지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계층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조사시점

이 1998년 8월이었으므로, 조사에서 1년전이라고 하면 IMF 이전의 상태와 비교하는 것으로 당연히 계층이 하향이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해석에 있어서는 마치 1년전에 동일한 설문지로 조사를 별도로 하였고 그 결과와 98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도록 설명되었다면 이 또한 정확한 전달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이용 할 때는 정확한 조사시점과 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설계 방법 및 조사 수행 기관의 성격까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최근의 신문을 보면, 정부 기관별로 부패정도를 측정하여 부패지수를 산출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다. 새로운 사회통계가 탄생할 예정인가 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조사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질문은 부패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고, 답변 카테고리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조사대상은 정부기관과 업무연관이 있는 내국인 사업자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 가운데 표본을 추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확정된 측정모델이나 조사결과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한 몇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표본 추출에 관한 문제인데 얼마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추출되었는가가 관건이다. 모집단 전체를 전수 조사할 수 없을 때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무작위추출 방법이나 기타 다른추출 방법을 사용해 선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관건은 모집단의 list를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항들끼리 상호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부패를 제대로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통계의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검증된 질문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질문요지가 우리 언어로 제대로 표현 되었는지를 검토해야하며, 또한 질문들끼리 상호 연관성을 가졌는지를 사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수행 기관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며, 반복적인 동일 조사를 여러번 거쳐 최소한의 신뢰도가 검증된 연

후에 발표하는 등 정책에 반영되기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새로 작성할 예정인 부패지수는 어느정도 통계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며, 이런 결과들이 누적되고 시계열이 생성되었을 때 추세의 변화와 정도의 차이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회통계의 종류

이제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통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생산 과정은 어떤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통계청에서 각종 사회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사회통계조사」 「생활시간조사」 「정보화실태조사」가 있으며, 기존의 통계를 이용해 가공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의 사회지표」가 있다.

「사회통계조사」는 기존에 생산되고 있지 않은 사회현상 및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를 조사를 통하여 직접 생산할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조사이다.

뿐만아니라 사회통계조사의 결과와 40여개 이상의 통계생산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들을 활용하여 사회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즉, 사회지표체계는 통계관련 설계도이며 그 설계도에 따라 지워진 건물이 한국의 사회지표인데, 건물 건축에 필요한 내용물 가운데 일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사회통계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시의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통계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생활시간조사이다. 다음 장에서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통계의 성격과 조사설계과정 및 자료수집절차를 소개하겠다.

2. 사회지표

가. 사회지표의 개념

통계청에서 1979년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지표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란 역사적 흐름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가능하게 하여 주는 척도”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성도 높은 것으로, 사실 사회지표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합의된 이론이나 개념규정은 없다. 오히려 경제지표라는 단어와 나란히 배열해 놓으면 그것과 구별되는 어떤 image가 연상될 듯 한, 낯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명확하지도 않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단어이다. 사회지표 연구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개념 자체의 포괄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1960년대에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s)이 일어나면서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그 보다 10년 정도 늦게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대표 이론이나 합의된 개념의 발달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지표가 포함하는 관심의 광범위함과 목적의 다양성은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지표의 필요성으로부터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데서 설명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즉, 이미 발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경제지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사회지표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개발의 목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지표 개발 배경 및 현황, 지표작성방법 및 방향, 사회지표의 활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사회지표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목적

사회지표의 개발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기관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었다. 그들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 향후 미국사회에 어떤 예상치 못한 영향(side effects)을 미칠까를 파악하고 예측해 보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으나, 연구결과는 이러한 연구목적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자료나, 개념, 그리고 방법론 등이 거의 전무(全無)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팀장이던 Raymond Blauer(1966)가 사회지표라는 개념을 만들고, “사회지표란 우리사회의 가치와 목표와 관련해서 볼 때 우리가 현재 어디쯤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라고 정의 내렸다.

그 이전에도 W.F. Ogburn(1933)나 Jan Drenowski(1950)와 같은 이론가들에 의한 단편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지표체계를 개발시키기 보다는 별개의 가용한 통계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복지의 구성요소를 규정함을 통하여 주로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이터뱅크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미국에서의 사회지표개발에 관한 관점의 변화는 곧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OECD(1970년대 초반)의 사회적 관심체계와 UN 사회인구통계체계 (SSDS :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등이 개발되면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으로 까지 묘사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지표운동의 주요 목적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인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사적인 물질적 풍요로움의 동전의 이면인 공적 빈곤(public poverty)문제에 대한 대중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적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Heinz-Herbert Noll, 1998).

이러한 경향성은 향후 사회지표개발 방향과 목적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지표개발의 일반적인 목표는 사회전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근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으며, 주요 기능은 사회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것과 사

회 복지를 측정하여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또는 주관적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되는 개념들을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지표는 체계를 이루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다. 한국에서의 사회지표 개발 배경 및 작성 현황

사회지표가 우리 나라에 소개된 것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속에 사회개발에 관한 내용을 확충할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UN-RISD (UN-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의 사회지표 모형체계에 따라 작성한 1970년경이다. 그후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지표 연구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72년 유엔통계 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사회인구통계체계」(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에 관한 권고가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역점이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지표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지표 작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정부의 사회개발정책 확충 필요성에 따라 1975년 유엔활동기금(UNFPA)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작성과 인구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3년여의 연구결과 8개 부문, 42개 관심영역, 105개 세부관심영역, 350개 개별지표로 구성된 사회지표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사회지표체계를 토대로 1979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는 자료 수집이 가능했던 128개 개별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지표」를 작성 공표한 이래 1987년까지 매년 조금씩 지표수를 보완 및 확대하여 발간하였다.

또한 최초로 지표체계가 수립된 1978년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지표체계 개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여가부문을 신설하고 총 지표수도 468개로 늘리는 등 새로운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1988년 243개 지표

를 작성한 이래 매년 지표수를 보완·확대 발간하여 1995년에는 290개 지표를 작성 발간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과거 물질적이고 양적 증가 위주의 사회적 관심에서 이제는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생활, 가정생활, 정신문화, 교통·통신, 환경, 사회적 안전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사회적 관심이 바뀌고 있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별 사회지표의 필요성 대두,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표체계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1995년에 지표체계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기존의 9개부문 468개 지표에서 가족, 정보와 통신, 복지, 정부와 사회참여 등 4개 부문을 신설하고 총 지표수도 553개로 확대하여 새로운 사회지표체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은 18개의 신규지표를 포함하여 481개 지표를 작성하여 12월에 발간하였다.

<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 >

부 문	관심영역	체계지표수	2000지표수
계		553	481
1. 인 구	총인구성장, 출생과 사망의 구조, 인구분포와 이동, 인구구성	44	32
2. 가 족	가족구성,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생활, 가족문제, 가족규범	43	30
3. 소득과 소비	소득수준, 소득분배, 소비수준, 저축수준, 경제적 생활의 안정	41	44
4. 노 동	고용구조, 근로조건, 안전보호, 직업선택과 이동, 근로자 자기개발, 차별대우, 노사관계	62	52
5. 교 육	교육기회, 교육자원, 교육효과, 교육의식	43	50
6. 보 건	건강상태, 사망 및 질병, 보건의료인력 및 시설, 보건의료 이용	50	36
7. 주거와 교통	주거상태, 주거공간, 주거의 질, 교통시설 및 교통편의	51	36
8. 정보와 통신	정보화의 기반, 정보화의 정도, 전산망 확충, 정보관련인력비중	28	27
9. 환 경	환경오염 및 자연자원의 이용, 환경오염 및 정도의 평가, 환경관리노력	31	28
10.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43	40
11. 문화와여가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34	40
12. 안 전	안전에 대한 인식,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범죄이외의 사고로부터의 안전, 법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55	48
13.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참여, 정부행정 및 재정	28	18

라. 사회지표의 작성방법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적 관심과 변화과정을 반영하고, 현실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이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두가지 자료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첫째는 각급 통계기관(42개)에서 생산하는 기존통계(75종)를 체계적으로 재분류, 관심영역별로 정리·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통계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관적 및 사회문화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직접 사회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3개 관심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 가운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생활 모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통계자료들을 여성이라는 주제로 재집결하여 여성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 결과는 매년 여성주간(7월 1일 ~ 7일)에 맞추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간함으로써 사회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마. 사회지표의 기능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주요 측면의 상황에 있어서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규범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통계라 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수준 측정

국민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두어 그 수준 측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개인 및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각 사회상태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사회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정보의 역할을 한다.

(3)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상태를 역사적 흐름속에서 나타내 주므로 앞으로의 사회 경향 및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규범적인 사회적 가치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변화를 유도 관리할 수 있게 한다.

(4)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측정

사회개발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이며 간접적인 효과, 특히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Dysfunction)까지도 측정 가능하게 하여 사회개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므로 효율적인 정책설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3. 사회통계조사

가. 사회통계조사의 성격

사회통계조사는 기존의 각종조사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각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의식 및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에 관련된 항목들을 조사하여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79년에 최초의 조사가 실시된 이래 매년 부문을 교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97년 이후 사회지표체계 개편에 따라 12개 부문을 매년 3개 부문씩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보면 4년주기로 전국의 약 30,000가구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에는 문화와 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 부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1년에는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부문이 조사될 예정이며 결과는 “사회통계조사 보고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나. 사회통계조사 개요

(1) 필요성

사회통계조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모색하며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제 변화 현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 2000년 : 문화와 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부문
- 2001년 :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부문

(2) 조사목적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사연혁

- 1977 : 보건,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조사
- 1978 : 사회지표체계 수립

- 1979~1984 : 8개 부문 중 매년 4~5개 부문을 조사
- 1987 : 1차 사회지표 체계개편
- 1985~1996 : 매년 2-3개 부문을 선정하여 조사
- 1995 : 2차 사회지표 체계개편
- 1998~ : 매년 3개 부문 선정하여 조사

(4) 조사부문 및 조사주기

-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사회참여
- 조사주기 : 매년 (부문별 4년 주기)
- ※ 정보와 통신부문은 2001년부터 매년 조사로 변경
- ※ 인구부문은 인구총조사 자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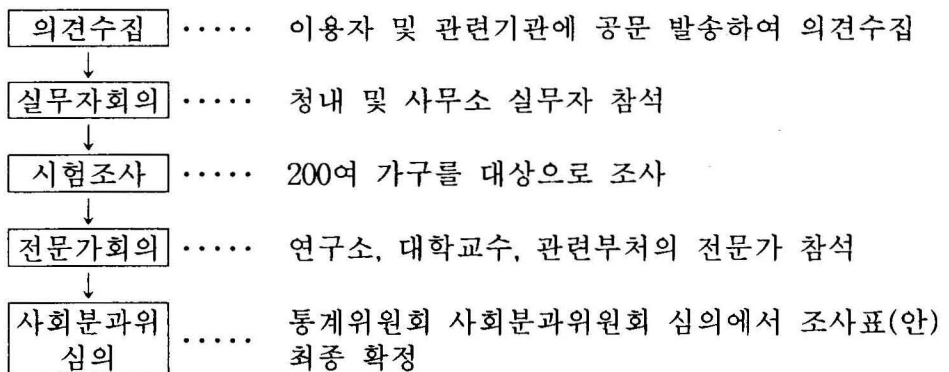
(5) 조사시기 및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 : 지정된 월의 15일이 포함된 1주간
- 실사기간 : 조사대상주간 다음의 10일간
- 대상가구 : 전국 약 3만 가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
: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0,000명)

(6) 조사방법

12개 지방사무소 및 35개 출장소의 직원 약 600명이 조사대상자를 만나서 면접 조사 실시(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는 경우에만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계식방법 활용)

다. 조사표 설계 과정



라. 부문별 조사주기 및 조사시기

	1 인구		2 소득 · 소비	3 고용 · 노사	4 교육	5 보건	6 주택 · 환경			7 사회	8 문화 · 여가	9 공안	
79.3.			○		○	○	○			○			
80.3			○	○	○	○	○			○			
81.2			○				○			○			
82.5					○	○	○						
83.5				○		○	○			○		○	
84.6					○		○			○			
주기	5		5	3	3	3	5			3	5	5	
85.5				○							○		
86.6			○			○							
87.5					○		○						
88.5				○						○		○	
89.5			○			○							
90.5					○						○		
91.5				○						○		○	
92.5						○	○						
93.5					○						○		
94.5			○							○			
95.9				○		○							
	1 인구	2 가족	3 소득 · 소비	4 노동	5 교육	6 보건	7 주거 · 교통	8 정보 · 통신	9 환경	10 복지	11 문화 · 여가	12 안전	13 사회 참여
주기	5	3	5	3	3	3	3	3	3	3	3	3	3
96.7					○						○		
97	4							○				○	
	9						○		○				
주기	5	4	4	4	4	4	4	4	4	4	4	4	4
98.10		○		○						○			
99.10			○			○							○
2000.7					○			○			○		
2000.9							○		○			○	

마. 사회통계조사와 사회지표의 비교

구분	사회통계조사	사회지표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각종조사에서 시도하지 않은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의식을 파악하여 사회지표를 보완 발전시킴 ○ 의식조사로서 그때그때 사회현상에 대한 국민의식 파악에 유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각종 행정통계는 물론 사회 각 부문의 의식수준 및 관심분위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여 사회적 상태를 측정하게함 ○ 현재의 위치에서 사회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용함
통계유형	○ 조사통계	○ 가공통계
작성방법	○ 가구표본조사를 통해작성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자료에 의해 작성 - 기존 행정통계 활용(28개 통계작성기관의 60여종 통계자료) - 사회통계조사 결과 활용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부문을 제외한 13개부문중 매년 3개부문을 선정하여 조사 - 1998년: 가족, 노동, 복지 - 1999년: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소비 - 2000년: 문화와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부문 - 인구, 가족, 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교통, 정보와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사회참여
보고서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자료는 79년부터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수록 ○ 96년결과부터 별도보고서발간 	○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 발간
지역별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까지 시·군부로 수록 ○ 93년 조사결과를 15개시도별로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 ○ 96년결과부터 시도별 지역자료를 보고서에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시도별 지표수록 : 460가지표중 64가지표 - 출생시 성비, 인구구성비, 지역내총생산, 학교및교원수, 의료보호수혜자비율 등
국제비교	○ 없음	○ 98년 50가지표 수록

바. 2001년 사회통계조사 개요

(1) 조사부문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3개부문 조사

- 각 부문의 조사 주안점

- 주거와 교통부문 : 주택소유비율, 주택의 질, 인근편익시설 및 교통수단과 교통 편의도 등을 파악
- 환경부문 :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의 질, 환경관리노력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변화 파악
- 안전부문 : 국민 전체 및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 공공 질서의 준수정도 등을 파악

(2) 조사항목 연혁

- 주거와 교통부문 : 79, 80, 81, 82, 83, 84, 87, 92, 97
- 환경부문(분리) : 79, 81, 83, 87, 92, 97
- 안전부문 : 83, 88, 91, 97

(3) 조사 시기 : 2000. 9. 16~2000. 9. 25(10일간)

(4) 동원인력 및 입력

- 실지조사 : 지방사무소 직원 약 600명
- 자료입력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DI (Computer Assisted Data Input) :작성된 조사표 조사직원 직접입력

(5) 추진일정

- 1) 기본계획(안) 작성 : 3월
- 2) 관계기관 및 이용자 의견수집 : 3~4월
- 3)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안) 설계 관련 : 4 ~ 5월
 - 실무자회의 : 4월
 - 시험조사 : 5월
 - 전문가회의 : 5월
 - 사회분과위원회 심의 : 6월

- 4) 조사항목 및 조사표(안) 확정 : 6월
 - 조사표 입력 프로그램 개발 : 6~8월
 - 조사지침서 작성 : 7~8월
 - 결과표(안) 작성 : 8~9월
- 5) 조사기간 : 9. 16 ~ 9. 25(10일간)
- 6) 결과보고 및 공표 : 2002. 5월
- 7)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2002. 6~7월

(6) 조사항목선정기준

- 사회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조사항목은 삭제
- 나머지 조사항목은 시계열 유지에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정 보완

○ 조사항목 선정 및 확정절차(5단계)

- 1) 관계기관 및 이용자 의견수집
- 2) 청내 및 사무소 실무자 회의
- 3) 시험조사
- 4) 전문가 회의
- 5) 사회분과위원회 심의

○ 2001년 조사에정항목 : 40개 항목(97년 기준, 추후 수정보완)

- 기본항목 :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등 10개
- 주거와 교통부문 : 12개
- 환경부문 : 9개
- 안전부문 : 9개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항목 2개 제외

(7) 조사흐름

- 업무단계
 - 조사준비 → 실제조사 →내용검토 및 입력 → 입력파일전송 →자료처리 및 결과 공표

아. 2001년 사회통계조사 흐름도

(1) 조사준비

기본 계획 작성	2001.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계조사 부문선정 · 사회통계조사표(안) 작성
이용기관 의견수집	2001.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기관, 관련기관, 전문가 및 지방사무소에 의견수집
실무자 회의	2000.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계조사표(안) 검토 · 청내 및 지방사무소 관련 실무자 참석
시험조사(2회)	2001. 5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기획요원이 직접 조사 · 시험조사표 설계 및 검증(1차) · CAPI기법적용시문제점파악(2차)
전문가 회의(2회)	2001.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조사 결과를 기초로 조사표(안) 및 조사전반에 관한 세부내용검토 - 주거와 교통부문(1차) - 환경부문, 안전부문(2차)
사회분과위원회 심의	2001.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사회통계조사 실시계획 및 조사표(안) 최종심의
조사표 확정	2001. 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확정(6월) · 조사지침서 작성(7월~8월)
CAPI 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조사	2001. 6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프로그램 개발(6월~8월) · 본조사전 CAPI 프로그램 현장 적용을 위한 시험조사 실시(8월) · 에러체크 프로그램 개발(8월)

조사표류 유인 및 배부	2001.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침서 · 조사표 · 조사표 표지 등
--------------	----------	--

조사담당자 교육	2001.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무(출장)소별 교육
----------	----------	---

(2) 실 사

본조사 및 실사	2001.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 실시(2001. 9. 16~9. 25까지 10일간, 30,000표본가구 대상) · 본부 및 사무(출장)소에서 실사지도
----------	----------	--

(3) 조사표 입력, 내용검토 및 입력화일 전송

조사표 입력	2001.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된 조사표(자계식 기입 조사표)를 지방사무소 조사직원이 입력
--------	-------------	---

입력내용검토	2001.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출장)소별로 자체 입력내용 검토(누락, 연관관계 등 에러 체크 프로그램 수정 보완) · 입력내용 검토시 문의사항 지도(본부직원)
--------	-----------	---

입력화일 수신	2001.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출장)소별로 입력화일 전송
---------	-----------	---

(4) 자료처리 및 결과공표

자료처리요구서 작성	2001. 8~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내검 및 자료처리요령서 작성 · 결과표(안) 작성
------------	------------	--

자료처리프로그램개발	2001. 9~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디팅 및 결과표 프로그램개발 및 수정보완 (전산개발과)
입력내용심사 및 질의조회	2001.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력내용검토(심사) • 착오내용 확인 및 질의조회 (지방사무소)
자료처리 및 결과표 작성	2001. 12~2002.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표 제표
조사결과분석	2002.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관 체크 및 결과 분석
결과보고 및 공표	2002.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 및 공표
보고서 발간 및 배부	2002.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발간 및 배부

4. 생활시간조사

가. 생활시간조사의 개발배경 및 특징

산업 및 고용구조가 다양화되고 가계부문생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유형과 노동시간, 그리고 무보수 가사노동량의 파악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97년부터 “생활시간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의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s)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시간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유급 또는 무급노동에 분배되고 있는 시간 측정, 개인복지 및 경제적 복지를 위한 노동과 여가의 균형, 무급의 가사노동에 대한 화폐적 가치측정을 통하여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되며, 각종 문화, 교통·관광, 노동 등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 영국, 미국, 유럽등 20여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어 관련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나. 생활시간조사의 유용성

생활시간조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파악에 활용

생활시간조사는 무보수가계노동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계정을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국민계정은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그 한계를 지적 받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 개념으로는 아이돌보기나 가사노동과 같은 무보수가계노동까지 포함하는

총생산활동의 규모와 구조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받는다 (Goldschmidt-Clermont, 1987; Juster & Stafford, 1991). 지난 1995년 베이징 여성국제회의에서는 비 시장생산을 파악 가능하게 하는 시간활용조사를 실시할 것을 모든 나라에 적극 권장한 바 있다.

(2) 노동력 분석 (Labor Force Analysis)에 활용

현재의 노동력 통계는 종사상 지위가 상이한 집단간 실제노동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기에 미흡하고, 고용된 노동에 한정하여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시간활용조사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실제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Niemi, 1990),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시간활용형태를 보여줌을 통해 국가의 노동력 활용 실태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3) 사회변화(Social Change)의 파악 및 대처

생활시간조사는 근무시간대 및 근무형태, 쇼핑시간대, 전화 및 통신 이용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직업, 나이, 성별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통신 이용시간대 및 흡연 시간대의 다양성도 파악될 수 있는데, 이런 행동과 관련된 시간활용자료는 행동패턴과 변화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삶의 질 파악에 유용 (Quality of life)

생활시간조사는 교육, 보건, 가족 생활, 사회적 교제 생활, 여가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수 있어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경제지표 지향성에서 벗어나서 일과 가정생활, 여가의 균형 정도나 교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편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어 복지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여성 삶 파악에 유용 (Women's Concerns)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는 특히 여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비 시장 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INSTRAW, 1995). 가

사노동, 아이돌보기, 성별 분업, 쇼핑하기, 무급가족종사일등에 할당되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무보수로 행해지는 여성노동의 경제적 기여도와 사회적 지위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 생활시간조사에 관한 연구 동향

시간활용연구에 관한 논문은 1913년 미국에서 출판된 “일하는 남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Bevans, 1913)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이후 정부 또는 연구소 차원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미국(1920, by Univ. of Cornell), 러시아(1924), 영국(1938, by BBC)등이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1969년부터는 NHK에 의해, 1976년부터는 통계국에 의해 대규모 조사가 정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는 1986년 전국규모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998년까지 3차례 실시하였고, 네덜란드는 1975년 이후 1998년까지 5차례, 노르웨이는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3차례 실시하는 등 현재 30여개국 이상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국가간 시간활용형태 비교를 위한 조사가 1960년 중반에 시도되었는데, 13개국에서 “다국가간 생활시간조사 (Multinational Time Use Study)”가 동시에 실시된 바 있다. 이런 시도는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나는데,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가 EUROSTAT에 의해 주도되어 유럽 18개국에서 1997년에 시험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곧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통합된 행동분류체계와 조사표를 개발중에 있다.

통계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방법의 많은 부분을 HETUS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라.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개요

(1) 조사목적

국민들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생활방식 및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관련정책의 수립이나 학문적 연구활동에 기초 자료를 제공

(2) 조사일정 및 조사규모

- 조사시기: 1999년 9월 (5년주기)
- 조사규모: 약 17,000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3) 조사방법

- 가구관련사항, 개인관련사항: 면접조사
- 일일시간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10분 간격의 일일시간조사표(time-diary)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쓰듯이 응답자가 이틀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 (after-coded diary)

5. 사회통계의 활용

이상에서 우리는 사회통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사회통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과 재미있게 읽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우리는 인간의 생활시간 구조를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잠자고 식사하고 신변잡일을 하는 등의 '생리적인 필수 시간', 둘째 일과 관련된 '노동시간', 셋째 앞의 둘을 제외한 여가 시간이 있다.

다른 여타의 정보를 활용할 때도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통계를 이용한 정보활용에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상식에 바탕을 둔 해석과 숫자의 나열에서 오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즉, 되새김질을 통한 소화력이라고 본다. 그리고, 숫자를 더 이상 기호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경제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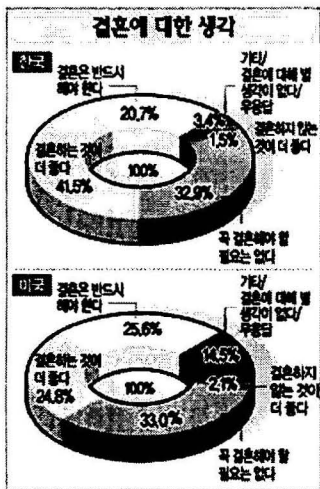
고 합리적인 새로운 형태의 언어로 친근하게 이해하는 ‘통계친화적’인 접근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를 정책입안자, 연구원, 교수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사회간접자본 확충(도로, 항만 등), 소득분배정책 등 국가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할때나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는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기를 들이마시듯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통계 중에서도 특히 사회통계는 우리들의 생활에 깊숙히 침투되어 있음을 자주 보게 된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 언론기사내용을 일부 복사하여 온 것이다.

▼결혼-이혼...韓 63% 美 51% "결혼할 필요 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20, 30대 한국인과 미국인의 생각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결혼생활에서 비중을 두는 부분도 약간 달랐다.



20, 30대 한국인은 63%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21%)거나 ‘하는 것이 더 좋다’ (42%)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1%(반드시 해야 한다 26%, 하는 것이 더 좋다 25%)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의 경우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33%)거나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2%)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 꼴이었다.

충분한 이혼 사유로 한국인은 성격 차이(65%), 폭력(65%), 외도(60%), 애정이 없어졌을 때(37%), 상습적인 음주(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미국인은 폭력(84%), 외도(74%), 애정이 없어졌을 때(51%), 상습적인 음주(47%), 성격 차이(31%) 등의 순으로 꼽았다.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배우자의 폭력, 외도, 음주, 애정 부족 등을 더 중요한 이혼 사유로 생각하고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성격 차이를 더 중요한 사유로 여기는 셈이다. 성적 불만족을 이혼 사유로 꼽은 비율은 한국인 12%, 미국인 14%였다. 기혼자가 애인을 갖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한국인이 15%인데 비해서 미국인의 경우 절반에 못미치는 6%였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47%, 한국인의 23%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인 구 통 계

목 차

1. 인구통계의 성격	101
가. 개요	101
나. 인구통계자료	101
2. 인구주택총조사	103
가. 개요	103
나.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성(조사원칙)	103
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	104
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105
3. 인구동태 통계(Vital Statistics)	107
가. 개요	107
나. 작성대상 및 방법	107
다. 신고항목	108
라. 출생력 (Nativity) 지표	108
마. 사망력(Mortality) 지표	111
바. 혼인력(Nuptiality) 지표	113
4. 인구이동통계	114
가. 의의	114
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114
다. 인구이동추이	116
5. 추계인구	117
가. 개요	117
나. 추계방법	117
다. 인구구조 및 관련지표	118
라. 인구 추이	121
마.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123
바. 세계 인구 동향	124
6. 생명표	126
가. 의의 및 연혁	126
나. 사망원인 생명표	126
다. 기초자료	127
라. 지표	127

1. 인구통계의 성격

가. 개요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하며,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세(勢)를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는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실로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 중의 하나다.

나. 인구통계자료

인구는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출생·사망 및 이동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부단히 그 양(규모)이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질적 내용(구조 또는 속성)도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를 어떤 일정시점이라는 정지상태에서 관찰할 때 이것을 인구정태통계라고 한다. 반면 인구동태통계는 인구의 정태상태 즉 인구의 크기나 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통계가 된다.

인구통계란 이러한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시점에서 파악된 인구규모와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직업·산업별, 출생지별 인구구조등은 인구정태통계의 종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태개념을 인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가구와 주택까지 확장하여 보면, 일정시점에서 파악된 가구 수 및 가구의 특성(가족구조 등)과 주택 수 및 주택이 갖고 있는 특성이 모두 정태통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인구정태 통계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출처로는 인구주택총조사(Census)를 들 수 있다.

반면 총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 인구동태통계의 기본적 종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태통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신고제도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자료출처는 호적신고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통계 작성 현황

	인구주택 총조사	추 계 인 구	주 민 등 록 인 구
1.작성기관	통 계 청	통 계 청	16개 시도
2.작성주기	5년	5년	매년
3. 기준일	11.1(총조사 실시년)	7. 1	12. 31(92년이후공표)
4.작성방법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5. 특 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특성인 혼인 상태,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 가구 및 주택의 종류 및 특성파악 · 사회경제적 인구특성 까지 파악 가능(혼인 상태, 직업등) · 인구 연관자료 분석 가능(가구, 주택 등) · 소지역 인구 파악 (전수) · 다른통계의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총조사와 출생, 사망, 이동의 인구통 태 자료를 기초로 남녀별, 연령별로 장 래 인구파악 · 우리나라 인구의 대표자료로 사용 · 비예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파악 · 전산출력으로 인한 신속한 자료 생산 · 소지역인구 파악 가능 · 대민 행정목적상 유용
6.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오차 (비표본 오차)의 문제 · 조사환경의 악화 · 과도한 예산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 파악 곤란 · 장래예측 통계로서 실제와의 괴리문제 → 현재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인구 특성 파악 곤란 · 실제와의 괴리문제 (실제거주, 연령등) ※ 해외거주 (취업, 유학등) 인구포함

2. 인구주택총조사

가. 개 요

우선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란 특정시점에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전체수효를 뜻하는 것으로 국민이나 인종, 민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둘째, 주택이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영구성이 있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을 가지며 독립된 출입구를 갖고,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총조사는 표본조사와 달리 조사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란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지역 내에 常住하거나 常住예정인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거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통계 뿐 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총조사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이동, 가구, 가족 및 주택 등 제반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과중한 총조사 예산 부담과 조사환경의 악화로 총조사 주기 변경이나 인구동태 통계등 기존 통계의 활용을 보다 극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총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구주택 총조사의 특성(조사원칙)

(1) 완전성(Universality)

표본조사와는 달리 조사기준 시점 현재 조사지역내의 조사대상을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부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이다. 감옥, 선박, 호텔 등을 제외한다거나 여행자, 병자 등을 제외하는 것은 바로 조사의 보편성을 어기는 것이다. 여행자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조사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常住(de jure)와 現住(de facto) 개념의 채택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개인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常住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2) 동시성(Simultaneity)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기준시점(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을 정하여 일정한 조사기간 내 (1주일 또는 9일 등)에 조사하되 응답은 조사기준시점을 중심으로 한다.

(3) 개인성(Individual enumeration)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가구, 주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개별)조사 단위별로 조사하고,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함한다. 외국 외교관, 수행원, 공무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 주둔 외국 군인 및 그 가족은 제외한다.

(4) 주기성(Periodicity)

인구주택총조사는 한 번만 하고 그만 두는 단절적인 조사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조사이어야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센서스 조사간격은 기획, 자료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5년 내지 10년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

(1) 조사구(조사 구역) 설정

조사구란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을 일정 가구수(60가구 등)가 포함되도록 구분한 구역으로 인구, 주택을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나누며, 특별조사구란 조사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제외주재공관, 경찰서, 전투(의무)경찰대, 교도소, 소년원, 군부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한 조사구이다.

(2) 조사방법

(가) 조사원 면접방식 : 조사원이 담당 조사구(평균 60가구) 내의 모든 가구를 방문 면접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

(나) 응답자 기입방식 :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2000년 도입)

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1) 전수조사 항목 : 20개

- (가) 인구(8개) : 성명, 본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혼인상태
- (나) 가구·주택(12개) :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 형태,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종류, 주인·대표가구 여부,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년도, 편의시설수

(2) 표본조사 항목 : 30개

- (가) 인구(21개) : 전공분야, 아동 보육상태, 1년전거주지, 5년전거주지,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활용상태, 개인휴대용 통신기기,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 근무년수, 총 출생아수,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정도
- (나) 가구·주택(9개) : 거주기간, 취사연료, 난방시설,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상수도시설, 식수사용 형태, 임차료

실시 년도별 인구주택총조사

회수	조사기준	명 칭	특 징
1	1925. 10. 1	간이국세조사	최초의 인구총조사
2	1930. 10. 1	조선국세조사	최초로 직업등 경제활동사항 포함
3	1935. 10. 1	조선국세조사	
4	1940. 10. 1	국 세 조 사	
5	1944. 5. 1	간이국세조사	
6	1949. 5. 1	총 인구 조사	최초로 인구이동 사항 포함
7	1955. 9. 1	간이총인구조사	전동천공기 도입
8	1960. 12. 1	인구주택국세조사	① 최초로 주택에 관한 조사 실시 ② 노동력 개념 설정 ③ 경제활동 및 출산력 사항의 20% 표본집계
9	1966. 10. 1	인 구 센 서 스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및 출산력)
10	1970. 10. 1	총인구및 주택조사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11	1975. 10.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5%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인구이동 및 일부 주택에 관한 사항)
12	1980.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및 인구 이동)
13	1985.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① 전항목 전수조사 ② 성씨, 본관 및 종교에 관한 조사실시
14	1990. 11. 1	인구주택총조사	①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출산력 및 인구이동) ② 교통관련 항목 추가 ③ 자료처리 광학판독(OMR)방식 도입
15	1995. 11. 1	인구주택총조사	①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인구이동 및 임차료 등) ② 최초로 빈집에 관한 조사실시 ③ 자료처리 광학판독(OMR)방식 활용 ④ 조사구 설정용 기본도 전산화
16	2000. 11. 1	인구주택총조사	① 10% 표본조사 병행(경제활동, 인구이동 및 임차료 등) ② 지식기반, 정보화, 복지관련 항목 조사 ③ 수치지도(Digital Map)을 이용한 조사구 설정 및 유도작성 ④ 현지분산형 PC입력방식 도입

3. 인구동태통계 (Vital Statistics)

가. 개요

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인구의 변동 요인 중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동태사상(人口動態事象)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다. 이러한 인구동태사상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빈도가 희소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특히 사망의 경우 출생과는 다르게 조사 대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대상자가 기억하기 싫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포착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고 있다.

나. 작성 대상 및 방법

인구동태통계는 인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사건 등과 같은 인구변동 요인에 관한 통계로서, 국가의 인구정책을 비롯한 경제, 사회, 교육, 보건 등 각종 국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호적법에 의거 출생·사망·혼인·이혼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는 출생, 사망은 사건발생 1개월 이내에, 혼인, 이혼은 성립 즉시 신고서 2부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주소지 혹은 본적지의 구(동), 시(동), 읍, 면장(재외국민은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한다.
- (2) 신고서 2부중 1부는 법원에 보내어 호적을 정리하고, 1부는 일선 기관에서 신고서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시도를 경유, 통계청에 송부하면,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를 주소지별로 집계하여 인구동태통계 및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한다.

다. 신고항목

- (1) 출생(18개) : 신고연월, 출생자 주소, 성별, 혼인중(외)의 자, 출생일시, 출생장소, 부모의 생년월일, 부모의 직업, 부모의 최종졸업학교, 부모의 실제 결혼연월일, 임신주수, 다태아 여부(태아수), 다태아중 출생순위, 신생아 체중, 모의 출산아수 (총출산아수, 생존아수)
- (2) 사망(14개) : 신고연월, 사망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발병(사고발생)당시 직업, 사망원인 진단자, 혼인상태, 최종졸업학교, 사망종류, 사고 발생장소, 사고내용, 사망원인, 발병에서 사망까지 기간
- (3) 혼인(16개) : 신고연월, 혼인당사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 결혼연월일, 직업, 최종졸업학교, 혼인종류, 혼인해소일자
- (4) 이혼(16개) : 신고연월, 이혼당사자의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 결혼연월일, 실제 이혼연월일, 20세미만 자녀수, 이혼의 종류, 이혼사유, 최종졸업학교, 직업

라. 출생력 (Natality) 지표

(1)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 CBR)

- 조출생률은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다.

$$\text{○ 조출생률}(\%) = \frac{\text{특정1년간의 총출생아수}}{\text{당해연도의 연앙(7.1.)인구}} \times 1,000$$

(2)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

- 특정연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추계 작성에 이용된다.

$$\text{○ 연령별출산율}(\%) = \frac{\text{모의 연령별로 발생한 출생아수}}{\text{당해 연령별 연앙여자인구}} \times 1,000$$

(3)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

-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 곧 합계출산율이 된다. 즉, 어떤 특정연도에 있어서 15세된 여자가 그 연도에 나타난 전 연령층의 출산율을 가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똑같이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말하는 가상의 미래 개념이다.

○ 합계출산율(TFR) = $\sum_{i=15}^{49} (ASFR)_i$

(4) 출생성비 (Sex Ratio at Birth)

- 출생성비는 여아100명당 남아 출생아수를 말한다
 - * 자연출생성비 : 103~107 (서구 105, 아프리카 103, 우리나라 109내외)
- 출생성비 = (남아출생아수/여아출생아수)×100

연도별 인구동태

(단위 : 천명, 천건, 인구천명당)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출생아수	718.3	739.3	723.9	728.5	721.1	695.8	678.4	643.0	616.3	636.8
조출생률	16.6	16.9	16.4	16.3	16.0	15.3	14.8	13.8	13.2	13.4
사망자수	249.6	243.1	240.5	248.4	248.1	245.6	247.9	248.4	246.5	247.3
조사망률	5.8	5.6	5.4	5.5	5.4	5.3	5.3	5.3	5.2	5.2
혼인건수	416.9	419.8	402.6	393.1	398.5	434.9	388.6	375.6	362.7	334.0
조혼인율	9.6	9.6	9.0	8.7	8.7	9.4	8.4	8.0	7.7	7.0
이혼건수	49.2	53.5	59.3	65.0	68.3	79.9	91.2	116.7	118.0	120.0
조이혼율	1.1	1.2	1.3	1.4	1.5	1.7	2.0	2.5	2.5	2.5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1

모의 연령별 출산율(ASFR)

(단위 : 해당 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15~19	4.3	4.7	4.4	4.0	3.6	3.3	3.1	2.9	2.6	2.5
20~24	84.8	82.8	72.7	66.0	62.9	58.8	54.5	48.0	43.5	39.0
25~29	186.2	188.9	178.8	179.6	177.1	167.6	161.5	153.4	148.1	150.6
30~34	58.8	65.1	64.2	68.0	69.6	71.1	73.2	73.2	72.9	84.2
35~39	10.8	12.6	13.8	14.7	15.2	15.5	16.0	15.8	15.4	17.4
40~44	1.5	1.8	2.0	2.2	2.3	2.4	2.5	2.5	2.4	2.6
45~49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1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출생성비	112.4	113.6	115.3	115.2	113.2	111.6	108.2	110.1	109.6	110.2
첫째아	105.7	106.2	106.4	106.0	105.8	105.3	105.1	105.9	105.6	106.2
둘째아	112.4	112.4	114.7	114.1	111.7	109.8	106.3	108.0	107.6	107.4
셋째아+	182.1	194.5	206.6	205.1	180.2	166.2	135.5	145.6	143.1	143.9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1

마. 사망력 (Mortality) 지표

(1) 조사사망률 (Crude Death Rate : CDR)

$$\bigcirc \text{ 조사사망률}(\%) = \frac{\text{특정1년간의 총사망자수}}{\text{당해년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2) 연령별 사망률 (Age-Specific Death Rate : ASDR)

$$\bigcirc \text{ 연령별사망률}(\%) = \frac{\text{특정연령층의 연간사망자수}}{\text{당해연령층의 연앙인구}} \times 1,000$$

(3)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 IMR)

$$\bigcirc \text{ 영아사망률}(\%) = \frac{\text{특정년도의 1세미만의 사망아수}}{\text{당해년도의 연간 총출생아수}} \times 1,000$$

(4) 사인별 사망률 (Cause-Specific Death Rate)

$$\bigcirc \text{ 사인별 사망률} = \frac{\text{특정사인에 의한 사망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00$$

(5) 모성사망비 (Maternal Mortality Ratio)

○ 출산이 여성의 보건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지표로서 한 국가의 보건수준을 가늠하는 주요지표이다. 어느 특정년도의 총출생아수에 대한 임신·출산·산욕으로 발생한 여성사망자수를 의미한다.

$$\bigcirc \text{ 모성사망비} = \frac{\text{임신·출산·산욕으로 발생한 여성사망자수}}{\text{총출생아수}} \times 100,000$$

(6) 사망률성비 (Sex Ratio of Mortality Rate)

$$\bigcirc \text{ 사망률성비} = (\text{남자사망률}/\text{여자사망률}) \times 100$$

2000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

(단위:인구십만명당, 명)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총계	악성신생물 122.1 (58042)		뇌혈관 질환 73.2 (34817)		심장질환 38.5 (18300)		운수사고 25.4 (12073)		간질환 22.9 (10874)	
0세	주산기질환 217.5 (1301)		선천성 기형 113.0 (676)		영아급사증후군 17.2 (103)		심장질환 11.8 (71)		악성신생물 4.2 (25)	
1~9	운수사고 9.4 (585)		악성신생물 3.6 (225)		익수사고 3.4 (214)		추락사고 2.0 (124)		선천성 기형 1.8 (111)	
10~19	운수사고 11.4 (798)		악성신생물 4.0 (281)		자살 3.8 (264)		익수사고 3.3 (233)		추락사고 1.0 (71)	
20~29	운수사고 20.9 (1758)		자살 11.1 (934)		악성신생물 7.5 (635)		심장질환 3.1 (259)		익수사고 3.0 (256)	
30~39	악성신생물 24.5 (2181)		운수사고 20.7 (1844)		자살 15.1 (1341)		간질환 9.4 (838)		심장질환 7.1 (633)	
40~49	악성신생물 78.0 (5435)		간질환 38.7 (2692)		운수사고 27.8 (1936)		뇌혈관 질환 23.0 (1600)		심장질환 21.1 (1470)	
50~59	악성신생물 237.9 (10486)		뇌혈관 질환 76.1 (3355)		간질환 67.6 (2979)		심장질환 50.0 (2205)		운수사고 39.9 (1758)	
60~69	악성신생물 547.0 (16943)		뇌혈관 질환 253.4 (7851)		심장질환 119.7 (3706)		당뇨병 98.2 (3042)		간질환 77.0 (2385)	
70+	악성신생물 1109.8 (21829)		뇌혈관 질환 1080.4 (21251)		심장질환 499.8 (9829)		만성하기도질환 308.2 (6062)		당뇨병 279.3 (5494)	

자료: 통계청 『2000사망원인통계연보』, 2001

바. 혼인력 (Nuptiality) 지표

(1)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CMR)

○ 조혼인율은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다.

$$\text{○ 조혼인율}(\%) = \frac{\text{특정1년간의 혼인건수}}{\text{당해연도의 연앙(7.1.)인구}} \times 1,000$$

(2) 연령별 혼인율(Age-Specific Marriage Rate : ASMR)

○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발생한 남녀별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혼인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령별 혼인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 기준으로 계산

$$\text{○ 연령별혼인율}(\%) = \frac{\text{연령별로 발생한 혼인건수}}{\text{해당연령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 \times 1,000$$

(3)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 CDR)

○ 조이혼율은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다.

$$\text{○ 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이혼건수}}{\text{당해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4) 연령별 이혼율 (Age-Specific Divorce Rate : ASDR)

$$\text{○ 연령별이혼율}(\%) = \frac{\text{연령별로 발생한 이혼수}}{\text{해당연령층의 연앙인구}} \times 1,000$$

(5) 유배우 이혼율 (Divorce Rate for Married Persons)

$$\text{○ 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이혼수}}{\text{당해연도의 유배우 인구}} \times 1,000$$

평균 초혼 연령 및 이혼 연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초혼연령	남	28.0	28.1	28.1	28.3	28.4	28.4	28.6	28.9	29.1	29.3
	여	24.9	25.0	25.1	25.2	25.4	25.5	25.7	26.1	26.3	26.5
이혼연령	남	37.2	37.4	37.9	38.1	38.4	38.6	39.1	39.8	40.0	40.1
	여	33.1	33.4	33.9	34.2	34.6	34.8	35.3	36.1	36.4	36.6

자료: 통계청 『200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2001

4. 인구이동통계

가. 의의

한 지역에 있어서 인구의 전입·전출현상을 의미하는 인구이동은 개인의 이동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인구분포 및 심각한 도시·농촌 문제 등을 초래한다. 인구이동통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지역과 시간 개념이다.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는 주민등록신고제도에 의한 전입신고, 인구주택총조사의 1년전, 5년전 거주지 및 출생지 항목, 특별 표본조사 등이 있다. 특별조사는 여러가지 미시적인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얻고자 할 때 실시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과 1997년에 인구이동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1) 작성현황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에서 매일매일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월말에 전산 처리하여 중앙주민전산망센터로 전송하고, 센터에서는 전송된 읍·면·동 자료를 전국자료로 취합 한 후 통계청으로 전송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는데, 1994년 까지는 시·도간의 이동만 작성하던 것을 1995년부터는 시·군·구간의 이동 및 연령별 이동 등 다양한 인

구이동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작성주기는 1971년부터 매년 작성·공표하던 것을 1999년 부터는 분기별, 2000년부터는 월별까지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2) 용어정의

(가) 이동현상

○ 전입(In-migration)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임

○ 전출(Out-migration)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임

○ 순이동(Net-migration)

특정한 지역내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를 말하며,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를 전입초과,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는 전출초과라고 함

(나) 이동경계기준

○ 시·도내 이동(Intra-province)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같으나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 여기서 시란 특별시, 광역시를 말함

○ 시·도간 이동(Inter-province)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로 여기서 시란 특별시, 광역시를 말함

○ 시·군·구내 이동(Intra-Shis, Guns, Gus)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군·구는 같으나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 여기서 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

○ 시·군·구간 이동(Inter-Shis, Guns, Gus)

이동전 거주지와 현거주지의 시·군·구가 다른 경우로 여기서 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

(다) 이동률(Migration rate)

○ 특정기간내의 이동자에 대한 해당지역의 총인구와의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함

$$m = \frac{M}{P} \times 100$$

$m(\%)$: 특정기간의 이동률
 $M(\text{명})$: 특정기간내의 이동자수
 $P(\text{명})$: (기간초 관련지역인구 + 기간말 관련 지역인구) ÷ 2

(3) 신고 항목(8개)

- 전입일자, 전입구분(구성, 편입, 합가), 전입지 주소(행정 읍면동), 전출구분(전부, 일부), 전출지 주소(행정 읍면동), 전입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자 주민등록번호(7자리), 전입사유

다. 인구이동추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 추이

(단위 : 명, %)

	총 이 동						시도간 이동					
	이동자	이동률	성비	전년동기대비		이동자	이동률	성비	전년동기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1980	8 258 573	21.9	107.3	934 193	12.8	2 605 637	6.9	117.4	256 088	10.9		
1981	8 194 516	21.4	106.3	-64 057	-0.8	2 793 449	7.3	115.5	187 812	7.2		
1982	8 616 474	22.1	106.6	421 958	5.1	2 810 221	7.2	116.6	16 772	0.6		
1983	9 795 811	24.7	103.5	1 179 337	13.7	3 211 038	8.1	110.0	400 817	14.3		
1984	9 043 238	22.4	105.1	-752 573	-7.7	3 009 404	7.4	113.5	-201 634	-6.3		
1985	8 679 097	21.4	104.7	-364 141	-4.0	2 925 297	7.2	112.9	-84 107	-2.8		
1986	8 660 428	21.3	104.7	-18 669	-0.2	3 021 289	7.4	112.6	95 992	3.3		
1987	9 308 750	22.6	103.4	648 322	7.5	3 243 365	7.9	108.9	222 076	7.4		
1988	9 969 020	23.9	103.1	660 270	7.1	3 352 490	8.0	108.9	109 125	3.4		
1989	9 316 219	22.0	102.7	-652 801	-6.5	3 189 606	7.5	106.9	-162 884	-4.9		
1990	9 459 209	22.0	103.3	142 990	1.5	3 231 128	7.5	107.8	41 522	1.3		
1991	8 980 841	20.6	102.3	-478 368	-5.1	2 957 842	6.8	105.7	-273 286	-8.5		
1992	9 031 576	20.5	101.2	50 735	0.6	2 859 760	6.5	103.8	-98 082	-3.3		
1993	8 807 058	19.8	101.2	-224 518	-2.5	2 863 667	6.4	104.1	3 907	0.1		
1994	8 791 714	19.5	100.5	-15 344	-0.2	2 739 689	6.1	102.2	-123 978	-4.3		
1995	9 073 069	19.9	100.1	281 355	3.2	2 864 939	6.3	100.8	125 250	4.6		
1996	8 854 973	19.2	100.1	-218 096	-2.4	2 836 089	6.2	101.0	-28 850	-1.0		
1997	8 819 909	19.0	100.0	-35 064	-0.4	2 838 442	6.1	100.7	2 353	0.1		
1998	8 156 318	17.4	98.8	-663 591	-7.5	2 678 629	5.7	100.1	-159 813	-5.6		
1999	9 435 347	20.0	96.8	1 279 029	15.7	3 024 784	6.4	96.5	346 155	12.9		
2000	9 009 441	19.0	98.7	-425 906	-4.5	2 845 831	6.0	100.7	-178 953	-5.9		

주) 이동자 : 읍·면·동 행정구역을 벗어난 사람

자 료 : 통계청 「2000년 인구이동통계연보」, 2001

5. 추계 인구

가. 개요

“추계인구”는 대표적인 인구통계중 하나로서 성별·연령별인구, 인구동태통계(출생, 사망, 이동)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한 가공통계이다.

1964년에 196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까지의 장래인구를 추계 공표한 바 있으며, 그 후 매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후 결과가 집계되면 이를 토대로 인구추계를 새로이 작성함과 동시에 과거계열을 보정하여 왔다. 통계청에서는 '9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의 인구변동요인(출산력 및 사망력 등)을 감안한 『장래인구추계(96. 12)』와 『1970~2020 시도별 추계인구(98. 9.)』를 발간하였다.

나. 추계방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구추계방법은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이다. 수학적 방법은 총인구를 추계하는데 이용되지만 장래 예상되는 변화 즉 연령별 인구구조 등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 사망, 이동인구를 감안하여 추계하는 조성법이 국가단위의 장래인구 추계에 주로 이용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수학적 방법(Mathematical Method)

- 선형방정식에 의한 계산 : $P_t = P_0(1 + rt)$
- 지수곡선방식에 의한 계산 : $P_t = P_0(1 + r)^t = P_0e^{rt}$
- 로지스터 곡선방식에 의한 계산 : $P_t = \frac{1/a}{1 + e^{(a+bt)}}$

여기서 P_0 : 기준년도 인구

P_t : 추정하고자 하는 t년 후 연도의 인구

r : 연평균 인구증가율

(2) 조성법(Component Method)

$$P_t = P_0 + (B - D) + (I - E)$$

여기서 B=출생아수, D=사망자수, I=전입인구, E=전출인구

다. 인구구조 및 관련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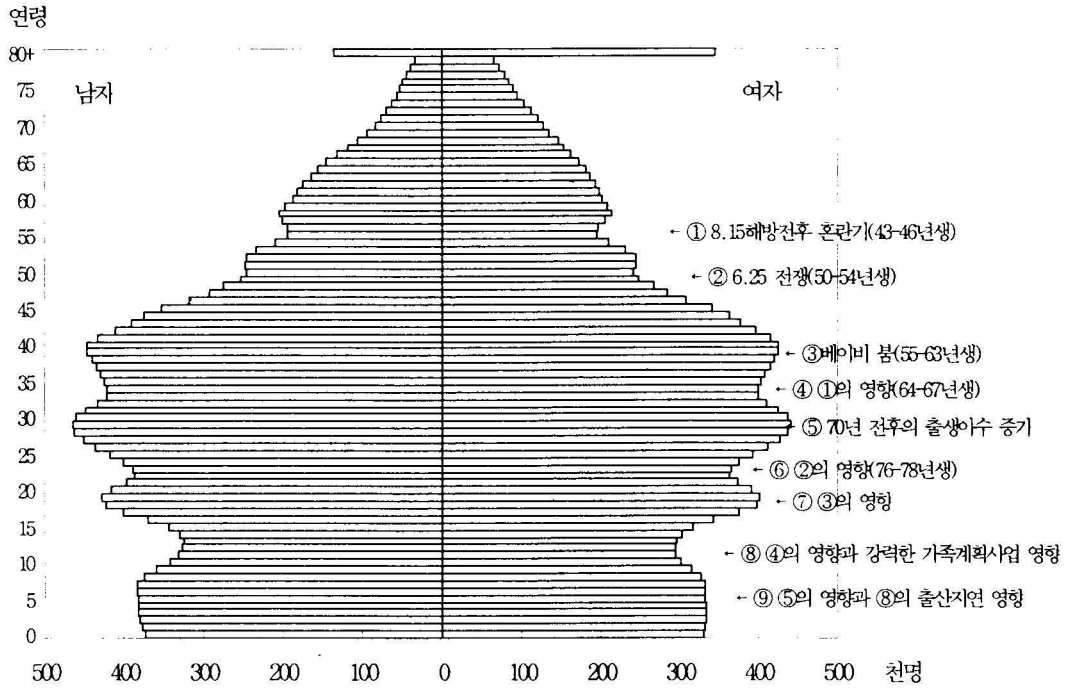
- (1) 자연증가율 = $((\text{출생}-\text{사망})/\text{총인구}) \times 100$
- (2) 인구성장률 = $((\text{출생}-\text{사망}+\text{인구이동})/\text{총인구}) \times 100$
- (3) 부양비 = 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 유년부양비 = $(0-14\text{세 인구}/15-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부양비 = $(65\text{세 이상 인구}/15-64\text{세 인구}) \times 100$
- (4) 노령화지수 = $(65\text{세이상 인구}/0-14\text{세 인구}) \times 100$

인구구조 및 관련지표

	단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인구구성비							
0-14	%	42.3	42.5	34.0	25.6	23.4	21.7
15-64	%	54.8	54.4	62.2	69.3	70.7	71.2
65+	%	2.9	3.1	3.8	5.1	5.9	7.1
부양비	%	82.6	83.9	60.7	44.3	41.3	40.4
유년부양비	%	77.3	78.2	54.6	36.9	33.0	30.4
노년부양비	%	5.3	5.7	6.1	7.4	8.3	10.0
노령화지수	%	6.9	7.2	11.2	20.0	25.2	32.9
평균연령	세	23.1	23.6	26.0	29.5	31.2	32.9
인구성장률 ¹⁾	%	2.79	1.82	1.37	1.02	0.95	0.77

1)은 5년간격별 연평균 인구성장률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인구피라미트(2000. 7.1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000년 추계인구 현황

인구규모	총인구		47 274 543명
	남자		23 831 316명
	여자		23 443 227명
	성비		101.7
인구구조	0-14		10 232 813(21.7%)
	15-64		33 671 162(71.2%)
	65+		3 370 568 (7.1%)
	부양비		40.4%
	유년부양비		30.4%
	노년부양비		10.0%
인구동태	출생(률)		701 512(14.8‰)
	사망(률)		269 180 (5.7‰)
	증가	자연증가(율)	432 332(0.91%)
		인구성장(율)	401 690(0.89%)
매월			33 474명 증가
			58 459명 출생
			22 432명 사망
1일			1 098명 증가
			1 917명 출생
			735명 사망
사건당소요시간			78.7초당 1명 증가
			45.1초당 1명 출생
			117.6초당 1명 사망
평균연령	32.9세 남자 31.7세 여자 34.1세 남녀차이 2.3세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라. 인구 추이

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계한 우리나라 2000년(7월1일) 인구는 47,275천명으로 95년 45,093천명보다 2,182천명 늘어나 연평균 0.95% 증가하고 같은 기간 65세이상 인구증가율은 4.9%수준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나타내는 성비를 65세이상에서 보면, 95년 59.1에서 2000년 62.5로 노령인구¹⁾ 남자의 기대여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2000년 인구를 95년과 비교하면, 유년(0~14세)인구는 304천명 감소한 반면 15~64세와 65세이상 인구는 각각 1,771천명, 714천명 증가한다.

총 인구 현황

(단위 : 천명)

	계	0-14세	15-64세	65세이상
2000①	47,275 (100.0)	10,233 (21.7)	33,671 (71.2)	3,371 (7.1)
성 비	101.6	112.9	103.3	62.5
1995②	45,093 (100.0)	10,537 (23.4)	31,900 (70.7)	2,657 (5.9)
성 비	101.4	110.7	103.0	59.1
차 이 ①-②	2,182	-304 (-1.7)	1,771 (0.5)	714 (1.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한편 북한인구는²⁾ 2000년 22,175천명, 2023년에 2,500만명을 넘어선 25,101천명, 2030년 25,834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2000년 이후 30년간 3,659천명(16.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남한은 같은 기간중 5,469천명(11.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남·북한 통합인구는 69,450천명으로 인구규모면에서 세계 16위 수준(남한만은 26위 수준)이다.

1) 연령 0~14세는 유년인구, 15~64세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은 노령인구임

2) 통계청 보도자료, 북한인구 추계결과(99. 8)

남·북한 인구

(천명, %)

	1970	1990	1999	2000	2010	2020	2030
북한(A)	14,905	20,221	22,082	22,175	23,455	24,744	25,834
남한(B)	32,241	42,869	46,858	47,275	50,618	52,358	52,744
남북한(A+B)	47,146	63,090	68,940	69,450	74,073	77,102	78,578
인구비(A/B)	0.46	0.47	0.47	0.47	0.46	0.47	0.49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0년대초까지 40% 이상 수준에서 80년대는 30%~40%수준, 90년 25%수준에서 계속 낮아져 2000년 21.7% 2010년에는 20%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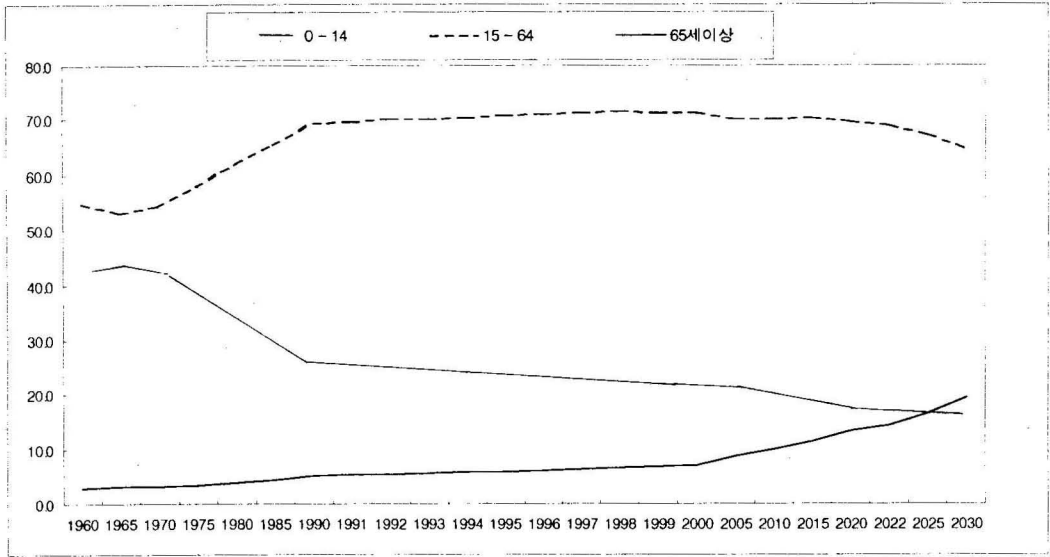
15-64세인구 비중은 60~70년 55%이내, 70년대 후반에서 90년도까지는 60%대를 유지하다가 91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노동력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70%이상 수준이나 그 이후 고령 사회로 인하여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65세이상 인구는 60~80년대 3~4%수준에서 90년 이후 5%를 상회하다가 95년 6%, 2000년에는 7.1%인 고령화사회³⁾로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3%인 고령 사회로 되어 인구 7명당 1명이 노인인 셈이다. 또한 65세이상 인구가 0~14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연도는 2026년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및 구성비 추이

연 도	인 구(천명)				구 성 비(%)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0-14세	15-64세	65세+
1960	25,012	10,588	13,698	726	42.3	54.8	2.9
1970	32,241	13,709	17,540	991	42.5	54.4	3.1
1980	38,124	12,951	23,717	1,456	34.0	62.2	3.8
1990	42,869	10,974	29,701	2,195	25.6	69.3	5.1
2000	47,275	10,233	33,671	3,371	21.6	71.2	7.1
2010	50,618	10,080	35,506	5,032	19.9	70.1	9.9
2020	52,358	9,013	36,446	6,899	17.2	69.6	13.2
2025	52,712	8,633	35,465	8,613	16.4	67.3	16.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3) 일반적으로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4%까지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부름



마.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세계에서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7%대로 가장 먼저 진입한 나라는 프랑스로 1865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14%가 되기까지는 114년이란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다음은 노르웨이로 87년, 스웨덴은 82년이 경과하였으며 가장 짧은 기간으로 추계된 국가는 한국, 일본순이다.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단위:%)

	1985	1995	2005	고령화율 2배年(7%→14%)
한국	4.3	5.9	8.7	22년(2000→2022)
일본	10.3	14.6	19.6	24년(1970→1994)
미국	11.8	12.6	12.4	69년(1945→2014)
프랑스	13.0	15.2	16.7	114년(1865→1979)
노르웨이	15.7	15.9	14.3	87년(1890→1977)
스웨덴	17.9	17.3	16.6	82년(1890→1972)
영국	15.1	15.8	15.9	46년(1930→1976)
독일	14.6	15.2	17.8	42년(1930→197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1996 Revision

厚生省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將來推計人口」(1997. 1月 推計)

바. 세계 인구 동향

(1) 세계의 인구 규모 및 증가

유엔 추계자료에 의하면 1987년 세계인구는 50억명을 돌파하고 1998년은 약 9억명이 더 늘어난 59억명, 2020년에는 75억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가 60억명이 되는 시점은 1999년 10월 12일이며 70억은 2013년, 80억은 2028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54년경에는 90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 계 인 구

(단위:억명)

연 도	1987	1998	2000	2010	2020	2050
인 구	50.2	59.0	60.6	67.9	75.0	89.1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998 Revision, forthcoming.

세 계 의 인 구 동 태 (2000)

	출 생	사 망	자 연증가
연간(천명)	131 468	54 147	77 321
월간(천명)	10 956	4 512	6 443
1일(천명)	360	148	212
1시간(천명)	15	6	9
1분(명)	250	103	147
1초(명)	4.2	1.7	2.5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International Data Base Notes on the estimates.

세 계 인 구 순 위(2000)

(단위 : 천명)

순 위	국 명	인구	순 위	국 명	인구
1	중 국	1 275 133	14	필리핀	75 653
2	인 도	1 008 937	15	이 란	70 330
3	미 국	283 230	16	이집트	67 884
4	인도네시아	212 092	17	터 키	66 668
5	브라질	170 406	18	에티오피아	62 908
6	러시아	145 491	19	타 이	62 806
7	파키스탄	141 256	20	영 국	59 415
8	방글라데시	137 439	21	프랑스	59 238
9	일 본	127 096	22	이탈리아	57 530
10	나이지리아	113 862	23	콩 고	50 948
11	멕시코	98 872	24	우크라이나	49 568
12	독 일	82 017	25	미얀마	47 749
13	베트남	78 137	26	한 국	47 275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2000년 남한+북한인구 : 69,450천명으로 16위, 북한인구 : 22,175천명

6. 생명표

가. 의의 및 연혁

생명표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정지인구논리에 따라 생존과 사망의 확률을 남녀별, 연령별로 산출한 통계표를 말한다. 생명표의 종류에는 통계집단의 종류, 구성, 관찰시기 등에 따라 일반생명표와 특수생명표로 분류된다. 일반생명표는 통계집단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며 연령그룹에 따라 각세로 작성되는 완전생명표와 5세그룹으로 작성되는 간이생명표가 있다. 특수생명표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부분집단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초의 생명표는 1978~79년에 실시한 인구동태표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1978~79 한국인의 생명표」가 있다. 그 이후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기초로 1983년도부터 2년 주기로 생명표를 작성하여 왔으나, 지연신고에 의한 자료의 불충분, 영아사망율의 저율적용등의 결함을 지녀오다 99년에 이르러 1970년도 이후 누적된 지연신고 자료를 추가하고 '93, '96 영아사망조사(복지부)결과를 기초로 영아사망확률을 재추정하여 반영한 「1971~97년 생명표」를 작성 정비하였다. 이를 계기로 생명표의 일관성과 시계열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1년 8월에는 「1999년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생명표는 연령별로 사망직전까지 얼마만큼 더 살 수 있나를 추정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인구추정은 물론 장래에 대한 학교 및 병원 수요 추정, 보험요율 및 인명보상비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사망력의 심층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나. 사망원인생명표

사망원인생명표는 특정사인을 제거했을 때의 생명표로, 주어진 특정 사인을 예방하거나 그 질병을 퇴치함으로써 완전히 그 사인이 제거되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사인에 의한 사망률 및 사망확률 등에 의하여 작성된 생명표를 의미한다. 여기서 특정사인을 제거한 경우의 생명표란 특정사인으로 사망할 사람이 죽음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인을 제거한 나머지 사인들에 의해 언젠가는 사망한다는 가정하에서 작성된 생명표이다. 1997년부터 1995년 사망원인생명표 작성을 시초로 2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다.

다. 기초자료

- (1) 사망자수 : 3년간 성·연령별 사망자수(인구동태자료)
- (2) 기준인구 : 당해년 성·연령별 주민등록인구(7.1일 기준)

라. 지표

- (1) 연령별 기대여명 : 특정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장차 더 살 수있는 연수
- (2) 연령별 생존비율 : 동시에 출생한 집단이 특정 연령까지 생존 할 수 있는 비율
- (3) 특정사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확률: 현재의 사인별 사망수준이 유지된다면 장차 특정 사인으로 사망하게 될 확률

1999년 생명표	남 자	여 자
출생시 향후 기대여명 (세)	71.71	79.22
65세때 향후 기대여명 (세)	14.06	17.96
출생시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 (%)	23.27	12.98
65세때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 (%)	21.33	10.62
암정복으로 출생시 증가되는 기대여명 (세)	4.72	2.46

국 민 계 정

목 차

1. 국민계정체계	131
가. 국민계정체계 개요	131
나. 5개 국민경제통계	134
2. 국민경제 측정의 예	137
3. 국민소득의 주요 개념	142
가.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142
나. 국내총생산과 국내순생산	143
다. 명목GDP와 실질GDP	144
라. 실질 국내총소득과 실질 국민총소득	146
마.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개인본원소득, 개인처분가능소득	147
4.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표	149
5. 국민소득 지표해설	159

1. 국민계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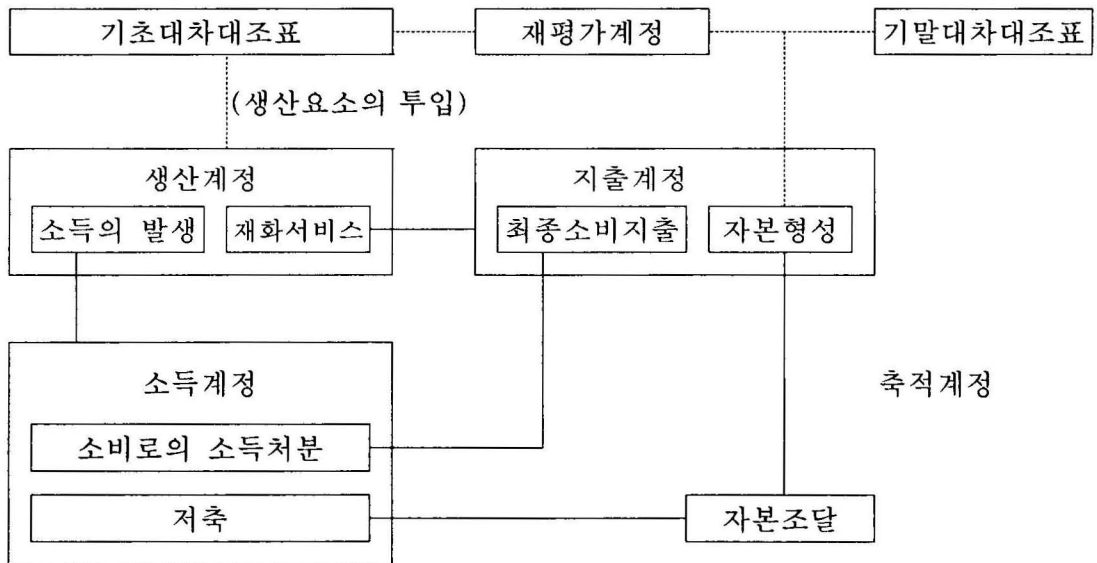
가. 국민계정체계 개요

(1) 국민계정 체계의 의의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회계체계로서 경제 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국민계정에서 거래형태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개념규정에 따라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몇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거래주체도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은 항상 플로우(flow)와 스톡(stock)의 변동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실물거래 및 금융거래 활동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국민경제의 플로우활동을 보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가 투입되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며 생산활동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한다. 이와같이 발생한 소득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거래주체에게 분배되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소비되거나 저축으로 처분된다. 또한 저축은 자본형성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림 1-1] 국민계정체계로 본 국민경제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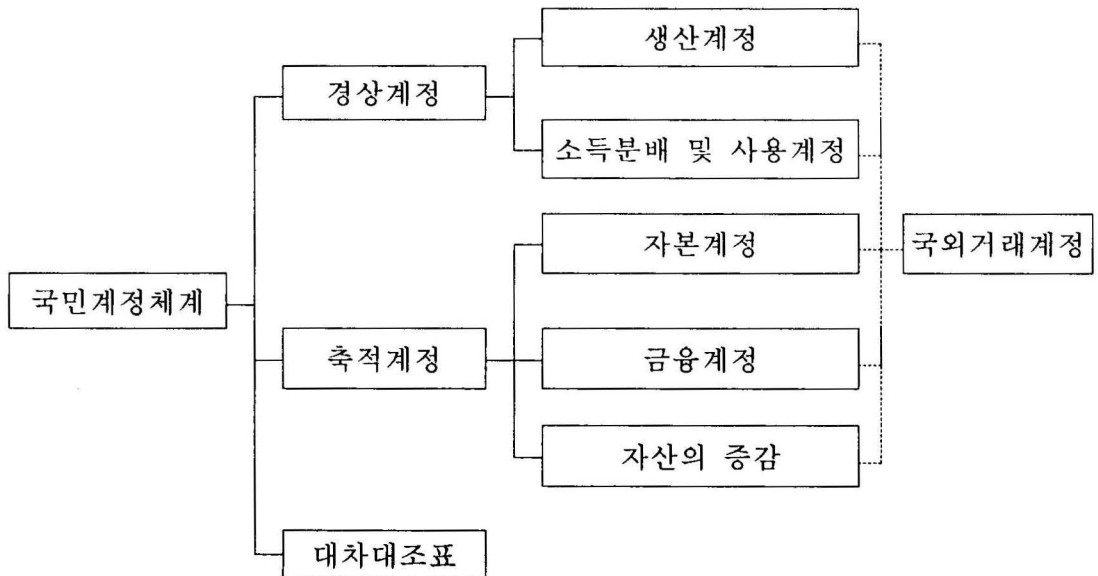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경제는 개방경제로서 국외부문과의 거래를 포함하는데 국외에서 수입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에 투입되거나 소비 또는 자본형성에 투입되며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중 일부는 국외로 수출되기도 한다. 한편 자본형성에 의해 축적된 자산의 증분은 기초스톡에 추가되는데 이때 기초스톡에 재평가에 의해 조정된 가격, 자산의 증분을 합하여 기말스톡이 된다. 이와같이 한 나라 국민경제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을 국민계정체계, 즉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라고 하며 1953년 UN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고 1968년에 개정, 1993년에 재개정 되었다. 각 국에서는 대부분 1968년 개정안에 의해 국민계정을 작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가 1993년 개정안인 93SNA로 이행중에 있다.

(2) 국민계정체계 작성기준
(가) 계정체계

93SNA에 의한 국민계정체계는 경상계정, 축적계정 및 대차대조표로 구성된다. 경상계정은 생산과 소득의 분배 및 사용을 기록하는데 대변에는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천이 기록되며, 차변에는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용이 기록

[그림 1-2] 국민계정체계의 구성



된다. 축적계정은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순자산의 증감을 기록하고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스톡을 나타낸다. 한편 국내거주자간에 의한 거래이외에 국외거주자와의 거래에 관한 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기록된다.

(나)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s)는 자신의 책임하에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주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적·사회적 실체인 법인·단체를 나타낸다. 제도단위별로 계정체계가 편제되므로 개인의 경우는 개인의 집단인 가계를 한 개의 제도단위로 본다. 제도단위는 그 주된 기능, 행위 및 목적에 따라 5개의 제도부문으로 분류하며 이외에 비거주자와의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국외부문이 있다.

1) 비금융 법인기업 : 주로 재화 및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하며 금액상 국내경제의 제일 큰 부분을 점하고 있다.

2) 금융 법인기업 : 주로 금융중개 및 보조적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정부 :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이들의 통제를 받는 사회보장기금을 말하며 주로 개별 또는 집합소비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또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득 및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s) : 주로 가계를 위한 비시장 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하며 그 주요 재원을 가계의 자발적 기여금에 의해 조달하는 법적 조직체를 말한다.

5) 가계 : 1인 또는 수인의 개인으로 구성되며, 노동의 공급, 최종소비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가계에는 비법인기업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화 또는 비금융서비스를 시장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편, 준법인기업(quasi-corporation)이란 비법인기업으로서 가계와 독립되어 완전한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마치 법인기업인 것처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단위를 말하며 가계 제도단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제도단위로 보며, 비금융 또는 금융법인기업부문으로 분류된다.

(다) 국민의 범위

SNA의 각 계정은 거주자 제도단위 또는 제도부문에 대해 작성되는데 이때 거주자의 범위는 각 제도단위 이익의 중심이 어느 나라 경제영역에 있는가를 기

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무기한 또는 장기간(1년이상) 동안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활동 또는 거래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 단위는 비거주자단위와도 거래를 하게되며 이러한 거래를 국외거래라 하며 국외거래 계정에 기록된다.

나. 5개 국민경제통계

기업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자금운용표, 대차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계정도 이에 해당되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개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민경제전체에 관한 재무제표를 국민계정이라 부른다.

<u>국민경제통계</u>	-----	<u>재무제표</u>
국민소득통계	-----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산업연관표	-----	제조원가 명세서
자금순환표	-----	자금운용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1) 국민소득통계

국민소득통계는 경제주체들이 1년동안에 생산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국민소득에 대하여 어떤 경제활동부문별로 얼마를 생산하여,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처분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재화는 쌀, 의복, 자동차, 건물처럼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을 말하며 서비스는 통상 용역이라고도 하는데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일정기간이란 통상 1년을 말하며 일정시점과는 다르다. 새로이 생산한 가치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의 판매수입과는 다르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기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는 이미 다른 데서 생산해 낸 것으로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가치는 아니므로 물건의 값에서 이 원재료 투입비를 뺀 나머지만이 이 공장에서 새로이 생산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물건의 판매수입을 산출액이라 하고 원재료비를 중간투입액, 새로이 생산한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한다. 국민소득에서의 생산액이란 이와 같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공제한 부가가치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서 1,0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드는 데 원재료비가 6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 공장의 대당 산출액은 1,000만원, 중간투입액은 60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는 산출액(1,000만원)에서 중간투입액(600만원)을 뺀 나머지 400만원이 된다.

(2)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또는 특정상품이 어떤 상품의 생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서 산업연관표에는 국민소득에서 나타나지 않는 중간투입의 내역이 상세히 나타난다. 이 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구입한 원재료, 노동, 자본의 투입을 나타내는 비용구성을, 가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중간재나 최종재로 판매된 내역을 나타내는 판로구성을 각각 의미하며 이 표를 통해 그물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든 산업부문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3) 자금순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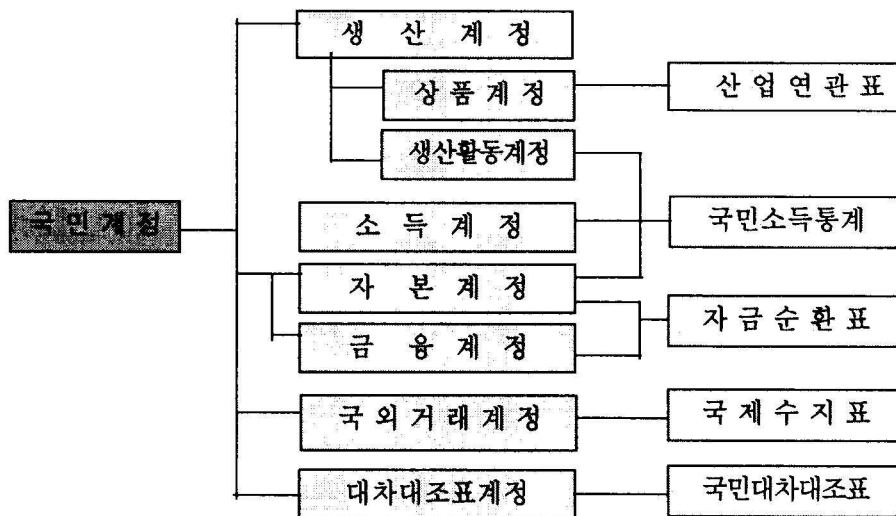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가 실물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라면 자금순환표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표이다. 자금의 흐름은 소득처분이나 자본축적과 같은 실물의 흐름에 수반되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물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부족자금의 조달이나 여유자금의 운용과 같은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자금순환표는 이같은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국민경제의 자금흐름표인 것이다. 또한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활동이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로서 자금순환표를 보면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와 저축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는 경제부문별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므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운용패턴 등 금융행태분석은 물론이고 한 나라의 금융구조분석에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4) 국제수지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국제수지표는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을 기록한 외화수지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수지표란 일정기간동안 자기나라와 다른나라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외국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경상거래와 외화를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국제수지표는 두 거래의 결과가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그림 1-3]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5) 국민대차대조표

위의 4개 국민경제통계는 모두 일정기간중에 일어난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일정기간의 흐름을 플로우(flow)라 하며 이를 기록한 계정을 플로우계정이라 한다. 그런데 일정시점에서의 국민경제의 재무상태를 스톡(stock)이라 하며 이를 기록한 계정을 스톡계정이라 한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스톡계정으로서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표로서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다.

2. 국민경제 측정의 예

국민계정체계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한 경제활동 모형을 예로 들어 경제순환과정에서의 소득의 발생과 그 처분과정을 살펴본다. 한 나라 안에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농가, 제분소, 제과점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세 주체의 경제활동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농가]

- 소맥 50원을 생산, 이것을 제분소에 매각하여 50원의 소득을 얻는다.
- 이 50원의 소득으로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여 소비한다.

[제분소]

- 농가로부터 소맥 50원을 구입하여 밀가루 110원을 생산한다.
- 이 밀가루를 제과점에 110원에 팔아서 소맥대금 50원을 농가에 지불한다.
- 나머지 소득으로 제과점에서 빵 60원을 구입하여 소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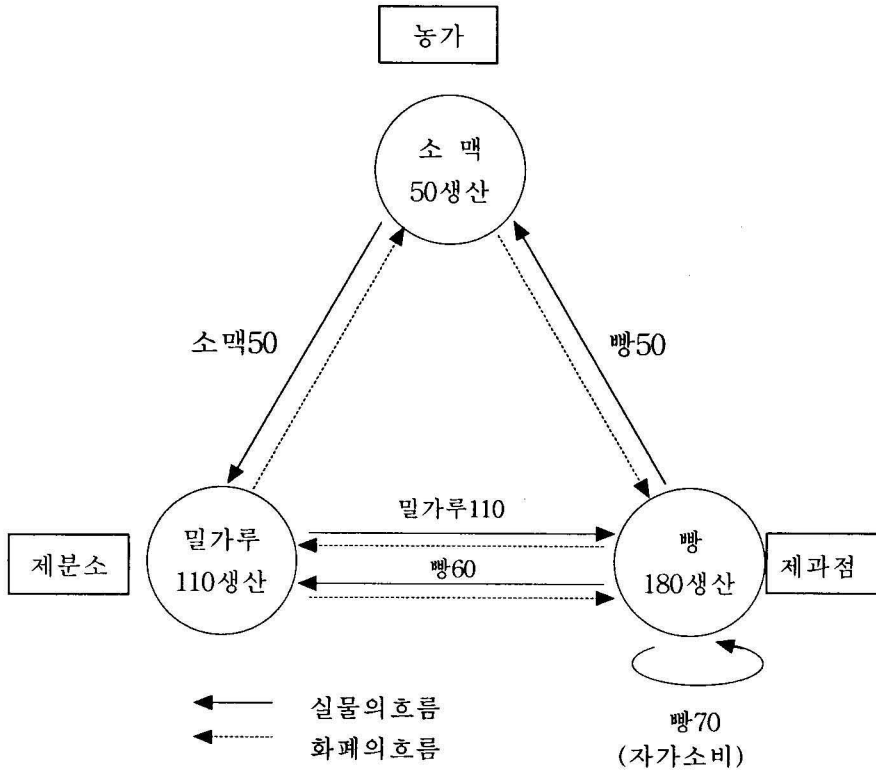
[제과점]

- 제분소에서 밀가루 110원을 구입하여 빵 180원을 생산한다.
- 농가 및 제분소에 빵 110원을 매각하고 제분소에 갚는다.
- 남은 빵 70원은 제과점 자체가 소비한다.

여기서 소맥, 밀가루와 같이 다음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재화를 '중간재'라고 하며 그 사용을 '중간소비' 또는 '중간투입액'이라고 한다. 한편 빵과 같이 그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재화를 '최종재'라고 하며, 그 사용을 '최종소비'라

고 한다. 국민소득계정은 위와 같은 경제활동의 순성과를 생산, 소득, 지출의 삼면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1] 국민경제의 순환거래 예(농가, 제분소, 제과점)



가. 생산

농가는 소맥 50원을 생산한다. 실제 소맥을 생산하는데는 종자비, 비료비 등 중간재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소맥이 자연적으로 결실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가가 생산한 순성과인 부가가치는 50원이 되며 산출액 역시 50원이 된다. 제분소는 110원의 밀가루를 생산하고 있는데 소맥 50원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총산출액 110원 중에서 중간재 50원을 제외하면 부가가치는 $110\text{원} - 50\text{원} = 60\text{원}$ 이다. 제과점의 부가가치는 앞의 제분소와 같은 측정방법에 의해 총산출액에서 중간재 비용을 공제한 $180\text{원} - 110\text{원} = 70\text{원}$ 이 된다.

즉, 국내총생산 = 총산출액 - 중간투입액이며

- 농가 : 생산 - 원재료 = 50 - 0 = 50원
- 제분소 : 생산 - 원재료 = 110 - 50 = 60원
- 제과점 : 생산 - 원재료 = 180 - 110 = 70원
- 경제 전체 : 생산 계 - 원재료 합계 = 340 - 160 = 180원

생산계정

중간투입 160	산 출 액 340
부가가치 180	
총 투 입 340	총 산 출 340

이와 같이 경제주체(농가, 제분소, 제과점)가 생산한 재화의 거래총액인 총산출액(340원)에서 그 생산과정에 투입된 중간재비용인 원재료비(160원)를 공제하여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총합(180원)이 국내총생산이다.

나. 소득

농가는 소맥의 매각에 의하여 50원의 소득을 얻고 제분소는 밀가루의 매각 110원에서 소맥의 구입대금 50원을 공제하여 60원의 소득을 얻은 것이 된다. 제과점은 빵 판매 180원에서 밀가루 구입 110원을 공제한 70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제과점의 빵 매각에서는 자기에게 매각한 70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경제주체가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는 180원이 된다. 즉 생산측면의 소득인 부가가치의 합계와 일치한다. 이 소득의 합계를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text{국내총생산(부가가치의 총합) 180원} = \text{국민소득 180원}$$

다. 지출

최종재에 대한 지출을 측정하는 것이다. 농가는 빵 50원을 구입하여 소비하고 제분소는 60원, 제과점은 70원을 소비하였다. 최종재에 대한 지출(최종수요)의

합계를 국내총지출이라고 하며 이것 또한 180원이 된다. 한편 총산출은 소맥 50원, 밀가루 110원, 빵 180원으로 형성되는데 이 중 소맥과 밀가루는 중간재로 사용되며 빵은 최종재로서 소비된다. 이와 같이 각 재화를 산출과 사용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xt{총산출액} = \text{중간재(중간소비)} + \text{최종재(최종수요)}$$

$$\text{총산출액} - \text{중간재(중간소비)} = \text{최종재(최종수요)}$$

즉, 총산출 계 - 중간재 계(중간소비 계) = 최종재 계(최종수요 계) = 국내총생산

이상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의 합계인 국내총생산과 최종재로의 지출(최종수요)의 합계인 국내총지출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은 발생한 생산의 순성과인 부가가치가 공헌도에 의하여 배분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의 합계와 동일하다. 그리하여 국민총생산 = 국민소득 = 국민총지출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을 국민소득의 삼면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형으로 설정한 경제순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text{국내총생산 180원} \rightarrow \text{국민총소득 180원} \rightarrow \text{국내총지출 180원}$$

이상의 관계를 계정형식에 의하여 표시하면 [표 2-1]과 같다. 국민소득계정은 생산과 지출의 관계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 소득의 분배와 처분을 취급하는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저축과 투자를 취급하는 ‘자본거래계정’, 외국과의 거래를 취급하는 ‘국외거래계정’의 4개 계정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저축과 투자, 외국무역은 이 경제순환모형에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0으로 처리한다. 국내총생산과 지출계정은 국내총생산으로 180원의 실물이 생산되어 그것이 전부 소비(180원)됨과 동시에 180원의 국민소득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은 소득 180원을 받은 자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는가를 표시하는 계정이며, 이 예에 있어서는 빵의 구입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계정이란 생산활동의 결과 발생한 부가가치와 그것이 소득으로서 배분 또는 처분되는 과정을 표시한 것이다.

[표 2-1]

국내총생산과 지출

총 생산 (부가가치)	180	소 비	180
국내총생산 (국민소득)	180	국내총지출	180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

소 비	180	국 민 소 득	180
지 급	180	수 취	180

라. 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중간재 또는 중간소비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 중간재까지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산업연관표이다. 위와 같은 예를 산업연관표로 작성하면 [표 2-2]와 같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표를 행으로 보면 각 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공급과 수요의 구조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농가의 생산물인 밀은 밀가루로, 제분소의 밀가루는 빵으로, 제과점이 생산한 빵은 최종재로 소비된다. 최종수요라는 용어는 최종재의 사용형태인 소비, 투자, 수출 등을 총칭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표를 열로 보면 각 생산물이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었는가 하는 투입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분소는 농가에서 구입한 밀과 제분소 노동의 성과인 부가가치의 합계로 밀가루가 생산된 것을 표시한다. 중간소비(또는 중간수요라고 한다)와 중간투입이라는 말은 어느 것이든 중간재의 사용을 나타내며, 중간소비라는 용어는 산업연관표를 행으로 보아 각 생산물이 어느 생산물의 원재료로 사용되었는가를 말할 때에 쓰이며, 중간투입이란 말은 열로 봐서 각 생산물이 어떠한 생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는가를 볼 경우에 쓰여진다. 따라서 중간소비의 총계와 중간투입의 총계는 동일하다. 위 표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의 합계는 국내총생산이며, 최종수요의 합계는 국내총지출이 된다.

· 산출 = 중간투입 + 부가가치

· 산출 = 중간소비 + 최종수요

따라서 나라 전체를 집계하면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지출의 등가(等價)가 확인된다.

[표 2-2] 산업연관표의 예

구 분		중 간 소 비				최종수요	총산출
		농 가 (밀)	제분소 (밀가루)	제과점 (빵)	중간소비 합 계	소 비	
중 간 투 입	농 가(밀)		50		50		50
	제분소(밀가루)			110	110		110
	제과점(빵)					180	180
	중간투입 합계		50	110	160	180	340
부 가 가 치		50	60	70	180		
총 투 입		50	110	180	340		

3. 국민소득통계의 주요 개념

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text{국민총소득(GNI)} = \text{국내총생산(GDP)} + \text{국외수취요소소득} - \text{국외지급요소소득}$$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말하며, 국민총소득(GNI)은 국내거주자가 생산자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분배받은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국내총생산중에는 외국의 생산요소(노동, 자본)에게 분배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내거주자가 외국의 생산자에게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수취한 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총소득을 구하려면 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의 생산요소가 가져간 소득을 제외하고 국내거주자가 외국의 생산자에게서 받아온 소득은 더해주어야 한다.

통계표[표3-1]을 보면 2000년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517조 970억원에 달하였으나, 이 중에는 외국의 생산요소로 만들어진 부가가치, 즉 국외지급요소소득 10조 2,16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국내거주자가 외국에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즉 국외수취요소소득 7조 7,550억원은 빠져 있다. 따라서 2000년중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다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마이너스 2조 4,612억원)을 더한 514조 6,350억원이 된다.

[표 3-1]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명목)

(단위:10억원)

	1997	1998	1999	2000p
국내총생산(GDP)	453,276	444,367	482,744	517,097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2,423	-7,725	-6,147	-2,461
국외수취요소소득	3,654	3,792	3,848	7,755
(-)국외지급요소소득	6,077	11,517	9,994	10,216
국민총소득(GNI)	450,853	436,642	476,598	514,635

나.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순생산(NDP)

$$\text{국내순생산(NDP)} = \text{국내총생산(GDP)} - \text{고정자본소모}$$

국내총생산(GDP)은 국내에서 생산된 총산출액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국내순생산(NDP)이란 국내총생산에서 생산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소모분을 뺀 것을 말한다.

자동차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기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비되지만 조립기계도 마모되어 점점 못쓰게 된다. 기업회계에서는 기계가 마모되어 나중에 못쓰게 될 경우 새 기계로 바꾸는데 필요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다.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기계 등 자본재의 마모 등을 고정자본소모라 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은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투입액을 차

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까지를 뺀 순부가가치를 말한다. 그런데 고정자본소모는 현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므로 이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 즉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탄공장에서 2000년초의 기계가치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말에는 기계가 마손되어 900만원으로 그 가치가 100만원이 떨어졌고 2000년중 생산해 낸 부가가치 총계는 300만원이었다 하자. 이 공장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총생산)가 2000년중에 300만원 만큼 늘어난 반면 기계의 가치는 고정자본소모인 100만원 만큼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계 가치를 본래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생산(300만원)중 고정자본소모(100만원)만큼을 기계에 투자해야 하므로 이 공장의 2000년중 순생산은 200만원이 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과 국내순생산을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국내총생산과 국내순생산(명목)

(단위:10억원)

	1997	1998	1999	2000p
국내총생산(GDP)	453,276	444,367	482,744	517,097
(-)고정자본소모	51,173	58,248	60,904	59,956
국내순생산(NDP)	402,103	386,119	421,840	457,141

[국내순생산보다 국내총생산 개념을 국민소득지표로 사용하는 이유]

이는 고정자본소모의 정확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안정적이어서 단기간의 시계열을 비교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등으로 생산구조가 변하여 고정자본소모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계열분석에는 순생산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다. 명목GDP와 실질GDP

$$\text{실질GDP} = \text{명목GDP} \div \text{GDP디플레이터}$$

명목GDP란 당해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말하며, 실질GDP란 가격변동요인을 제외하고 수량으로 계산한 GDP를 말한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종류(쌀, 자동차, 아파트 등)에 따라 거래단위(kg, 대, 채 등)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물을 한 가지 거래단위로 통일하여 수량으로 집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총생산은 각 생산물에 단위당 부가가치를 곱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다음 이들 화폐금액을 합계하여 추계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가격에 따라 명목GDP와 실질GDP로 분류된다. 명목GDP는 그 해의 생산물에 그 해의 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생산물 수량과 물가의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실질GDP는 생산수량으로 나타내어야 하나, 각 생산물마다 거래단위가 서로 달라 이를 합산하여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 해의 생산물에 특정기준시점(기준년)의 가격을 매년 똑같이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실질GDP는 물가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물 수량의 변동만을 나타내 준다. 결국 생산물의 수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명목GDP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커지나 실질GDP는 물가가 올라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명목GDP와 실질GDP는 [표 3-3]와 같다.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을 GDP 디플레이터라 하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표 3-3] 명목GDP와 실질GDP

(단위 : 10억원)

	1997	1998	1999	2000p
명목 GDP(A)	453,276	444,367	482,744	517,097
실질 GDP(B)	423,007	394,710	437,709	476,269
GDP 디플레이터 (A/B, 1995=100)	107.2	112.6	110.3	108.6

[명목과 실질으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이유]

GDP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규모, 산업구조를 보거나 국내총생산 구성요소의 변동 등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게 되나, 국민경제의 성장률, 경제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계열을 사용한다.

라. 실질 국내총소득(GDI)과 실질 국민총소득(GNI)

93SNA에서는 실질 총량지표를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 실질 국민총소득(GNI)으로 구분한다. 실질GDP는 생산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실질GDI 또는 실질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소득지표이다. 실질소득은 기준년의 변경 및 실질화방법등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 소득지표를 명시하지 않고 실질GNP로 대용하여 왔으나, 93SNA에서는 실질 소득지표로 실질GDI와 실질GNI를 편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생산지표인 실질GDP를 소득지표인 실질GDI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 즉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데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 손익』은 국민경제전체로 볼 때 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쇄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무역인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 손익』은 무역에서만 발생하므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한다. 한편 실질GNI는 실질GDI에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감안한 것이며 종전의 명목 GNP는 생산물량변화 이외에 임금, 기술수준, 기업채산성, 교역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명목소득지표이므로 명칭만 명목GNI로 변경되었다.

$\begin{aligned} \text{명목GDP} + \text{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text{명목 국민총소득(GNI=GNP)} \\ \text{실질GDP} + \text{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text{실질 국내총소득(GDI)} \\ \text{실질GDI} + \text{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text{실질 국민총소득(GNI≠GNP)} \end{aligned}$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수출입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교역조건(수출가격지수/수입가격지수)이 변화하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소득수준, 즉 후생수준의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기준년과 비교하여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면 일정량의 상품을 수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경제적 후생 즉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국가간의 거래에서 교역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유출 또는 국내유입을 의미하며, 지표경기(실질 GDP성장률)와 체감경기(실질 GNI성장률)간의 주된 괴리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실질GDP는 교역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로서 교역조건이 바뀌면 실질 무역이익(교역조건 개선) 및 무역손실(교역조건 악화)이 발생하여 실질GDP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교역조건을 반영한 총실질무역손익 $[(X-M)/P]$ 에서 일정시점(기준년) 기준으로부터 교역조건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실질 무역손익 $(x-m)$ 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된다.

$$T = \{(X - M) / P\} - (x - m)$$

T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X - M : 명목 무역수지 (당해년 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차)
 P : 환가지수(수출입 가격지수의 평균 = $(P_x - P_m) / 2$)
 x - m : 교역조건 실질 실질무역손익
 (기준년 가격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 차 = $X / P_x - M / P_m$)

예) 1995년(기준년)에는 자동차 10대(대당 1만 달러)를 수출한 대금 10만달러로 공작기계 1대(대당 10만달러)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00년(비교년)들어 자동차 수출가격 하락(대당 1만달러→5천달러)으로 20대를 수출하여 공작기계 1대를 수입할 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즉 교역조건지수는 50으로 기준년에 비해 50% 악화), 2000년 실질GDP는 20만달러(20대×1만달러)로 95년(10만달러)에 비해 100% 증가하지만 2000년의 자동차 20대의 구매력은 공작기계 1대로 95년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2000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10만달러)이 발생하여 실질GNI는 실질GDP(20만달러)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발생한 실질무역손익을 차감한 10만달러로서 95년과 동일하게 된다.

마.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개인본원소득, 개인처분가능소득

협의를 국민소득(NI) = 국민총소득(GNI) - 고정자본소모 - 순간접세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국민소득(NI) + 순간접세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고정자본소모
 개인본원소득(PPI) = 국민소득(NI) - (법인소득 + 일반정부 재산소득)
 개인처분가능소득(PDI) = 개인소득(PI) + 순이전소득

국민소득을 분배면에서 본 지표로는 협의의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 국민처분가능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 개인소득(Personal Primary Income : PPI), 개인처분가능소득(Personal Disposable Income : PDI)이 있다.

(1) 협의의 국민소득(NI)

분배측면에서 본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순생산을 말한다.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으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간접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알아보는데 사용된다.

(2)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당해년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생산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은 더하고 클레임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은 빼는 것이다. 또한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개념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이라고 하며, 저축률과 투자율을 작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3) 개인본원소득(PPI)

개인이 받는 순수한 소득을 말한다. 협의의 국민소득(NI)중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법인소득과 일반정부의 재산소득을 공제하여 산출되며 국민의 구매력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

개인처분가능소득(PDI)은 개인이 실제로 받고 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이 임의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소득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직접세(소득세 등)와 기타 경상이전지급(교포에 대한 송금 등)을 공제하고 정부로부터의 이전된 사회보상수혜금, 해외로부터의 송금 등 경상이전수취를 포함한다.

4.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표

가. 주요 항목의 개념

(1) 국내총생산

(가) 총산출 : 총산출(gross output)이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화폐평가액으로 산업의 총산출은 일정기간중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었는지 재고로 남아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산된 것은 모두 총산출로 계상한다. 그러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요금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한편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서비스가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생산에 투입된 중간소비와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생산자는 서비스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를 총산출로 본다.

(나) 중간소비 : 중간소비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니라 시험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또는 최종소비지출주체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또한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별은 생산자가 구입한 재화가 회계기간중 소진되는가 또는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다) 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를 뺀 것이다.

(2) 부가가치의 구성항목

기업이 생산활동에 의해 생산하는 생산물의 산출액은 다른 기업에서 구입한 원재료나 연료 등의 비용, 즉 중간소비와 노동 또는 기계설비와 같은 생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 바꾸어 말하면 요소비용과 시장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간접세의 합계와 같다. 이 중에 요소비용과 간접세의 부분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는 생

산활동의 결과로 새로이 생겨난 가치임을 나타낸다. 부가가치는 생산요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국민계정에서의 생산의 범위

國民所得은 국민경제가 일정기간중에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라 하였지만 이를 실제로 측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국민경제가 수많은 異質的 經濟主體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들 간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된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집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생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재화(goods)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두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생산자가 자신의 최종소비나 총자본형성을 위해 생산하는 재화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나 가계의 가사 및 개인서비스활동과 관련해서는 타인이 대신 수행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활동(식사, 음주, 수면, 운동 등)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생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타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활동(음식의 준비, 아이돌보기, 환자간호 등)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가계의 최종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서비스 활동은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밀수, 도박, 매춘 등과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축소 및 은폐하는 거래도 시장의 유효수요가 있고 생산과 지출의 종합적인 측정 등을 위해 생산활동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가) 피용자보수 : 노동을 제공한 데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 가계에 배분된다. 현금,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고용주의 피용자를 위한 사회보장부담금도 포함한다.

(나) 고정자본소모 : 건물이나 기계설비에 충당되는 비용이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나 기계설비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의 감가상각과 유사하다.

(다) 간접세 : 간접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생산물의 시장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생산코스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라) 보조금 : 그 금액만큼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負)의 간접세라고 보아 공제항목으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세와 보조금은 요소비용이 아니라 가격평가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것을 총생산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시장가격표시의 총생산', 총생산에서 제외시켰을 때는 '요소비용표시의 총생산'이라고 한다.

(마) 영업잉여 :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뺀 부분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몫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비용인 것이다. 이것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영업이익에 가까운 것이다.

(3) 지출측면에서의 국내총생산 구성 항목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생산계정을 집계하면 국내총생산을 얻을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와 수입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지출항목인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재화·서비스의 수출입으로 구성된다.

(가) 최종소비지출 : 최종소비지출은 재화와 서비스의 처분중 한 항목으로서 소비주체별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진다. 가계최종소비지출은 통상 가계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지출의 대상이 비상품이란 점에서 가계최종소비지출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즉 가계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만 생산주체를 겸하고 있는 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소비지출에 계상하지 않으며 정부서비스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정부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이들이 생산한 서비스의 자가소비를 의미한다.

(나) 총고정자본형성 : 기업은 기계의 구입이나 공장의 신축 등 당해연도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장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

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당해기간에 소진되지 않고 여러 회계년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을 총고정자본형성이라고 한다. 토지의 구입은 제외하며, 상품가격 이외로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시킨다.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하더라도 가계가 구입한 것은 가계최종소비지출에 계상된다.

(다) 재고증가 : 재고는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료, 재공품, 완제품 등으로 구성되며 재고증가는 이러한 재고의 회계기간중의 변동액을 의미한다.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가는 모두 장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총고정자본형성은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재고증가는 그 수익이 어느 한 시점에 실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라)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매매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내여행시 지출한 숙박료나 교통비는 수출에 포함시키며, 반대로 거주자가 해외여행시 구입한 기념품은 수입에 계상한다.

나. 국민계정 제표

우리나라에서 편제하여 발표하는 국민소득 통계표는 종합표, 제도부문별 계정, 부표로 구성된다.

(1) 종합표

종합표는 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거래, 금융거래, 국외거래 계정이 있다. 모든 계정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지는 복식부기의 형태를 취하는데 통계표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차변은 상단에 대변은 하단에 표시된다.

(가) 국내총생산과 지출 : 상단에는 국내경제활동의 결과 산출된 내역별 부가가치가 시장가격으로 기록된다. 이 중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간접세, 보조금(공제)은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계정의 하단(소득수취)에 계상되며, 고정자본소모는 자본거래계정의 하단(조달)에 계상된다. 하단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지출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이 기록된다. 이때 대차가 일치되어야 하나 개념상의 차이로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를 통계상불일치로 처리한다. 난외사항으로 국민총소득이 기록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가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표 4-1]

국내총생산과 지출(명목)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비용자보수	210,412	43.6	224,752	43.5	4.7	6.8
영업잉여	149,183	30.9	162,492	31.4	11.2	8.9
고정자본소모	60,904	12.3	59,956	11.6	4.6	-1.6
간접세	53,553	13.2	71,396	13.8	21.2	12.3
(공제)보조금	1,308	0.3	1,499	0.3	-8.8	14.6
국내총생산	482,744	100.0	517,097	100.0	8.6	7.1
민간최종소비지출	271,137	56.2	296,213	57.3	11.7	9.2
정부최종소비지출	50,089	10.4	52,816	10.2	2.7	5.4
총고정자본형성	134,152	27.8	148,449	28.7	1.4	10.7
재고증감	-5,381	-1.1	-246	0.0	-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204,378	42.3	232,591	45.0	-7.5	13.8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71,278	35.5	218,195	42.2	6.3	27.4
통계상불일치	-353	-0.1	5,469	1.1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482,744	100.0	517,097	100.0	8.6	7.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147	-1.3	-2,461	-0.5	-	-
국민총소득	476,598	98.7	514,635	99.5	9.2	8.0

(나)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사용과 원천이 기록된다. 하단에는 국내총생산에서 넘어온 소득의 원천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재산소득, 경상이전이 기록되며, 상단에는 소득의 처분내용으로 민간·정부최종소비지출이 기록되고 차액은 총저축이 되며 이는 자본거래계정의 하단(조달)에 계상된다. 난외사항으로 표시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자보수와 영업잉여에 국외 순수취 비용자보수와 국외순수취기업 및 재산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가산한 금액이다.

[표 4-2]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명목)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민간최종소비지출	271,137	64.9	296,213	65.1	11.7	9.2
정부최종소비지출	50,089	12.0	52,816	11.6	2.7	5.4
순저축	96,691	23.1	106,215	23.3	5.6	9.8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처분	417,917	100.0	455,244	100.0	9.1	8.9
피용자보수	210,412	50.3	224,752	49.4	4.7	6.8
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	565	0.1	588	0.1	-	-
영업잉여	149,183	35.7	162,492	35.6	11.2	8.9
국외순수취기업 및 재산소득	-6,712	-1.6	-3,050	-0.7	-	-
간접세	63,553	15.2	71,396	15.7	21.2	12.3
(공제)보조금	1,308	0.3	1,499	0.3	-8.8	14.6
국외순수취경상이전	2,224	0.5	564	0.1	-	-
국민처분가능소득	417,917	100.0	455,244	100.0	9.1	8.9
고정자본소모	60,904	14.6	59,956	13.2	4.6	-1.6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78,822	114.6	515,200	113.2	8.5	7.6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353,448	84.6	384,783	84.5	8.0	8.9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415,693	99.5	454,680	88.3	9.9	9.4

(다) 자본거래 : 자본의 조달과 축적이 기록된다. 하단에는 앞의 표에서 넘어온 총저축, 고정자본소모와 순자본이전이 기록되며, 상단에는 국내총생산지출의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통계상불일치가 기록되고 차액은 국외에 대한 순대출이 된다.

(라) 금융거래 :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이 기록된다. 하단에는 각 제도부문의 부채순증이 기록되고, 상단에는 자산순증이 기록된다. 차액은 자금과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금과부족과 자본거래의 순대출이 이론적으로 일치해야 하나 이용자료나 평가방법의 차이로 통계상불일치가 불가피하다.

[표 4-3]

자본거래(명목)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총고정자본형성	134,152	85.4	148,449	89.6	1.4	10.7
재고증감	-5,381	-3.4	-246	-0.1	-	-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18	0.0	21	0.0	-	16.5
순대출	28,714	18.3	11,892	7.2	-49.7	-58.6
통계상 불일치	-353	-0.2	5,469	3.3	-	-
총자본축적	157,150	100.0	165,584	100.0	5.2	5.4
순저축	96,691	61.5	106,215	64.1	5.6	9.8
고정자본소모	60,904	38.8	59,956	36.2	4.6	-1.6
순자본이전	-446	-0.3	-587	-0.4	-	-
총자본조달	157,150	100.0	165,584	100.0	5.2	5.4

(마) 국외거래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어지며 앞의 표에서 발생한 거래 중 국외와의 거래부분만 따로 정리한 것이다. 경상거래의 지급측에 균형항목으로 경상계정잉여가 발생하며 이는 자본거래(국외거래)의 수취측에 이기한다.

[표 4-4]

국외거래(경상거래)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204,378	94.7	232,591	93.9	-7.5	13.8
비용자 보수	615	0.3	639	0.3	-8.2	3.8
기업 및 재산소득	3,232	1.5	7,116	2.9	3.5	120.2
경상이전	7,636	3.5	7,245	2.9	-20.0	-5.1
수 취	215,861	100.0	247,590	100.0	-7.9	14.7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71,278	79.3	218,195	88.1	6.3	27.4
비용자 보수	50	0.0	50	0.0	-12.2	-0.2
기업 및 재산소득	9,944	4.6	10,166	4.1	-13.2	2.2
경상이전	5,412	2.5	6,680	2.7	13.9	23.4
경상계정잉여	29,177	13.5	12,499	5.0	-48.7	-
지 급	215,861	100.0	247,590	100.0	-7.9	14.7

[표 4-5]

국외거래(자본거래)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경상계정잉여	29,177	87.3	12,499	35.6	-48.7	-57.2
순자본이전	-446	-1.3	-587	-1.7	-	-
국외부채순증	8,909	26.7	21,590	61.4	-	142.3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18	0.1	21	0.1	-	16.5
오차 및 누락	-4,215	12.6	1,669	4.7	-	-
수 취	33,408	100.0	35,150	100.0	-23.8	5.2
국외자산순증	33,408	100.0	35,150	100.0	-23.8	5.2
지 급	33,408	100.0	35,150	100.0	-23.8	5.2

(2) 제도부문별 계정

소득, 자본, 금융계정을 제도부문별로 작성한 표이다.

(3) 부표

소득, 자본, 금융계정의 상세한 내용을 당해년가격 및 1995년(기준년) 가격으로 작성한 표이다.

(가)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 : 국내총생산을 경제활동별로 작성한 표로서 경제활동이란 크게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 나누어지며, 산업은 산업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별로 나누어 작성된다. 특히 수입세와 금융귀속서비스료는 경제활동별로 나누지 않고 독립항목으로 작성한다. 요소소득표는 총산출, 중간소비, 부가가치, 순간접세, 고정자본소모, 국내요소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를 각 경제활동별로 작성된다.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은 명목과 실질 모두 작성되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은 명목으로만 작성된다.

[표 4-6]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명목)

단위 : 10억원, %

	1999		2000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산업	437,227.4	90.6	465,791.9	90.1	8.7	6.5
농업 임업 및 어업	24,481.5	5.1	23,867.7	4.6	11.4	-2.5
광업	1,670.0	0.3	1,736.9	0.3	-0.3	4.0
제조업	148,402.9	30.7	162,706.4	31.5	8.2	9.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3,014.0	2.7	14,265.8	2.7	19.8	9.6
건설업	42,149.3	8.7	42,196.6	8.2	-6.3	0.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4,451.0	11.3	61,884.0	12.0	19.2	13.7
운수창고 및 통신업	32,976.3	6.8	33,419.1	6.5	5.3	1.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5,276.5	19.7	98,690.0	19.1	10.2	3.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4,806.0	5.1	27,025.3	5.2	12.0	8.9
정부서비스 생산자	36,961.5	7.7	38,868.0	7.5	3.2	5.2
공공 행정 및 국방	20,877.6	4.3	21,885.4	4.2	4.2	4.8
사회서비스	15,850.6	3.3	16,756.1	3.2	2.1	5.7
기타	233.4	0.0	226.5	0.0	-11.6	-2.9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자	11,470.6	2.4	12,568.1	2.4	5.3	9.6
수입세	15,606.0	3.2	19,159.1	3.7	20.4	22.8
(공제)금융취속서비스	18,521.4	3.8	19,290.5	3.7	5.3	4.2
국내총생산	482,744.2	100.0	517,096.6	100.0	8.6	7.1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	-	-	-	-
국내총소득	482,744.2	100.0	517,096.6	100.0	8.6	7.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146.6	-1.3	-2,461.2	-0.5	-	-
국민총소득	476,597.6	98.7	514,635.4	99.5	9.2	8.0

(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국내총생산을 최종처분형태별로 표시한 표로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구성된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도 명목과 실질 모두 작성된다.

[표 4-7]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명목)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최종소비지출	321,225.9	66.5	349,028.9	67.5	10.2	8.7
민간	271,136.5	56.2	296,212.7	57.3	11.7	9.2
가계	266,031.0	55.1	290,681.6	56.2	11.8	9.3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5,105.5	1.1	5,531.1	1.1	5.5	8.3
정부	50,089.4	10.4	52,816.2	10.2	2.7	5.4
총자본형성	128,771.2	26.7	148,202.5	28.7	36.9	15.1
총고정자본형성	134,151.8	27.8	148,448.8	28.7	1.4	10.7
건설투자	83,741.5	17.3	81,826.3	15.8	-9.7	-2.3
설비투자	50,410.3	10.4	66,622.5	12.9	27.3	32.2
재고증감	-5,380.6	-1.1	-246.3	0.0	-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204,377.6	42.3	232,591.1	45.0	-7.5	13.8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71,277.7	35.5	218,195.3	42.2	6.3	27.4
통계상불일치	-352.8	-0.1	5,469.4	1.1	-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482,744.2	100.0	517,096.6	100.0	8.6	7.1

(다) 총자본형성 : 자본형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총자본형성을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기타구축물, 운수장비, 기계류, 낙농축 등으로 나타내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과, 경제활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의 두 개의 표가 있다. 산업별 한계자본계수의 산출에 이용할 수 있다.

(라) 가계 최종소비지출 : 가계 최종소비지출을 목적별과 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목적별 분류는 가계소비지출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타자료와 합쳐서 국민복지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태별 분류는 소비재형태별 수요의 순환변동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마) 정부 최종소비지출 : 정부 최종소비지출을 목적별로 작성한다. 일반정부 활동의 성격과 특징을 알 수 있고 정부생산활동의 제목적에 따른 자원배분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서비스생산자의 활동을 의료, 보건 및 교육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한다.

(사) 총저축과 총투자 : 총저축과 총투자의 제도부문별 내역을 기록한 표로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최종소비지출을 공제하여 산출하며 총투자는 국내총자본형성과 국외투자로 구분한다.

[표 4-8]

총저축과 총투자(명목)

단위 : 10억원, %

	1999		2000 p		증가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9	2000p
총저축	157,595.6	32.9	166,170.9	32.3	32.9	32.3
민간	111,132.4	23.2	106,360.8	20.6	23.2	20.6
일반정부	46,463.2	9.7	59,810.1	11.6	9.7	11.6
총투자	157,948.4	33.0	160,701.5	31.2	33.0	31.2
국내총자본형성	128,771.2	26.9	148,202.5	28.8	26.9	28.8
민간	101,245.8	21.1	118,278.6	23.0	21.1	23.0
일반정부	27,525.3	5.7	29,923.9	5.8	5.7	5.8
국외투자	29,177.2	6.1	12,499.0	2.4	6.1	2.4
통계상불일치	-352.8	-0.1	5,469.4	1.1	-0.1	1.1
국민총처분가능소득	478,821.5	100.0	515,199.8	100.0	100.0	100.0

(아) 정부의 목적별 투입 및 산출 : 정부활동에 투입된 비용내역 및 생산된 처분내역을 목적별로 표시한 표로 행에는 13개 목적별 항목을, 종에는 부가가치 및 중간소비, 최종소비지출 항목 등을 표시한 표이다.

5. 국민소득 지표해설

가. 응용지표

(1) 경제규모

한 나라의 경제규모는 일반적으로 당해년가격으로 작성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표시한다.(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총소득(GNI)으로 표시하기도 함) 표시화폐단위는 당해국의 화폐단위로 표시하나 국가간의 비교를 위해서 달러로도 표시하며 이때 사용되는 환율은 년평균 대미달러 환율이다.

$$\text{경제규모(미달러기준)} = \text{명목GDP} \div \text{년평균 대미달러 환율}$$

(2) 경제수준 :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I이다. 1인당 GNI는 당해년가격으로 작성한 GNI를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미달러화로 표시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인구는 연앙추계인구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원, 달러) = \text{명목GNI} \div \text{연앙추계인구}$$

(3) 경제성장률, 성장기여율, 성장기여도

(가) 연간 경제성장률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을 이용한다.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날로 늘어나는 노동인구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게 되어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장은 개인과 국가의 복리와 안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경제성장률이라 하면 물가요인을 제거한 기준년가격에 의한 GDP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GDP} - \text{전년도 실질GDP})}{\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나) 연평균 경제성장률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복리 연율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한다. 연평균도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연평균 경제성장률(\%)} \\ &= \{(\text{마지막년도 실질GDP} \div \text{시작년도 실질GDP})^{1/n} - 1\} \times 100, n: \text{기간} \end{aligned}$$

(다) 경제활동별 성장률

각 경제활동별로 어느정도 성장하였는가를 나타내며 각 경제활동이 창출한 기준년 가격기준 부가가치의 전년비 증가율을 나타낸다. 수요패턴의 변화와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변동하는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산업은 성장산업으로 타 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text{제조업 성장률(\%)} = (\text{금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 \text{전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div \text{전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times 100$$

(라)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경제활동의 기여정도를 백분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준년 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 증가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증가액의 백분비로 계산한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을 합하면 100이 된다.

$$\text{제조업 성장기여율(\%)} = (\text{금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 \text{전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div (\text{금년도 실질GDP} - \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마)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성장기여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전년도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증가액의 백분비로 계산한다. 따라서 각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를 합하면 국내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과 일치한다.

$$\text{제조업 성장기여도(\%포인트)} = (\text{금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 \text{전년도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div \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4) 경제구조(생산구조, 산업구조)

국민소득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것인데 국민소득이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씩 생기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활동유형이 비슷한 것을 묶어 몇개의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한 나라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경제부문을 보통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정부서비스생산자,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 분류하는데 이용편의상 이들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서비스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5개 부문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결국 국내총생산은 이러한 각 경제부문이 생산활동을 한 결과로 생긴 부가가치를 집계한 것이며 전체 국내총생산중에서 각 경제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구성비를 경제구조라 한다. 따라서 경제구조는 국민소득이 어느 생산활동에서 얼마씩 생겨났는가를 보여 주며 공업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생산구조는 경제가 발전될수록 농림어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광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산구조는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기준년가격 또는 당해년가격을 이용한다. 즉, 장기간을 두고 경제활동별 성장률의 차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려면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을 이용하고, 단기간에 걸친 경제활동별 구성비율로서 생산구조를 파악하려면 당해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을 이용한다. 생산구조를 국가간에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당해년가격에 의한 경제활동별 구성비를 이용한다.

$$\text{제조업의 비중(\%)} = \text{제조업 명목부가가치} \div \text{명목GDP} \times 100$$

(5) 자본계수

(가) 한계자본계수

국내총생산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의 비율을 한계자본계수라 하며($\Delta K/\Delta Y$), 국민계정 통계표에서 투자를 나타내는 총자본형성을 국내총생산 증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술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을 이용한다.

$$\text{한계자본계수} = \text{금년도실질총자본형성} \div (\text{금년도 실질GDP} - \text{전년도 실질GDP})$$

(나) 평균자본계수

한계자본계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량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평균자본계수를 산출하려면 국부통계에 의한 자본스톡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다.

$$\text{평균자본계수} = \text{자본스톡} \div \text{국내총생산}$$

(다) 한계고정자본계수

국내총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고정투자의 비율을 한계고정자본계수라 한다. 국민계정 통계표에서 고정투자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을 국내총생산의 증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한계고정자본계수는 경제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고도화 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장 계획을 세우는데 주로 이용된다.

$$\text{한계고정자본계수} = \frac{\text{금년도 실질총고정자본형성} - \text{전년도 실질GDP}}{\text{금년도 실질GDP}}$$

(6) 지출구조

(가) 지출항목별 증가율

국내총생산은 최종소비지출(민간, 정부), 총자본형성(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입등 각 지출항목별로 지출된다. 각 지출항목의 증가율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출액을 전년과 비교하여 계산한다.

$$\text{민간소비지출 증가율(\%)} = \frac{\text{금년도 실질민간소비} - \text{전년도 실질민간소비}}{\text{전년도 실질민간소비}} \times 100$$

(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각 지출항목의 기여정도를 백분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국내총생산 증가에 대한 각 지출항목별 증가액의 백분비로 계산한다. 따라서 각 지출항목별 성장기여율을 합하면 100이 된다.

$$\text{내수 성장기여율(\%)} = \frac{\text{금년도 실질내수액} - \text{전년도 실질내수액}}{\text{금년도 실질GDP} - \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 내수액 = 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다)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성장기여율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지출항목별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전년도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지출항목별 증가액의 백분비로 계산한다. 따라서 각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합하면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일치한다.

$$\text{내수 성장기여도(\%포인트)} = (\text{금년도 실질내수액} - \text{전년도 실질내수액}) \div \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 내수액 = 최종소비지출 + 총고정자본형성

(라) 지출구조(지출항목의 비중)

국내총생산의 지출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 수출입등 지출항목별로 나타난다. 지출구조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지출항목의 비중을 나타내며, 당해년가격에 의해 계산한다. 국민경제의 최종수요 및 변동추세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text{민간소비의 비중(\%)} = \text{명목민간소비} \div \text{명목국내총생산} \times 100$$

(7) 노동소득분배율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그간 임금상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다른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농업이나 영세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데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이 영업잉여로 계상되는데 반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영세도소매업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에서도 피용자보수로 계상되는 노동소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text{노동소득분배율(\%)} = (\text{피용자보수} + \text{국외 순수취 피용자보수}) \div \text{요소비용 국민소득} \times 100$$

(8) 소비율, 저축률, 투자율

(가) 소비율, 저축률

소비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최종소비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로서 국민의 소비수준을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저축률은 소득중 처분되지 아니하고 저축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100에서 소비율을 차감하여 구한다.

$$\begin{aligned} \text{소비율}(\%) &= \text{최종소비지출} \div \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 \text{저축률}(\%) &= 100 - \text{소비율} \end{aligned}$$

(나) 국내총투자율

국내총투자율은 국민경제가 구입한 재화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경제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여진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라 하고, 후자를 재고증가 또는 재고투자라고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총투자라고 한다.

$$\text{국내총투자율}(\%) = \text{총자본형성} \div \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다) 국외투자율

국외거래표의 수지차액인 경상계정잉여는 국외 투자액이며 이 국외투자액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총저축과 총투자는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되므로 국내총투자율과 국외투자율의 합계는 총저축률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통계상 불일치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text{국외투자율}(\%) = \text{국외투자(경상계정잉여)} \div \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라) 고정투자율

고정투자는 생산능력을 변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총소득의 규모와 증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처분가능소득에 대한 고정투자의 비율인 고정투자율은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변수로 이용되고 있다.

$$\text{고정투자율(\%)} = \text{총고정자본형성} \div \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9) 소비성향

(가) 평균소비성향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최종소비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를 백분비가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을 평균소비성향이라 한다. 평균저축성향은 저축률과 마찬가지로 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하여 구한다.

$$\begin{aligned} \text{평균소비성향} &= \text{최종소비지출} \div \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 \text{평균저축성향} &= 1 - \text{평균소비성향} \end{aligned}$$

(나) 한계소비성향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때는 높게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text{한계소비성향} = (\text{금년 최종소비지출} - \text{전년 최종소비지출}) \div (\text{금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text{전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10) 수출입의 대 GNI 비율

수출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 낸 생산물의 일부를 해외에 내다 파는 것을 말하며, 수입은 소비나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생산물을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출입(수출+수입)의 국민총소득에 대한 백분률을 수출입의 대GNI비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개 국내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만들어지므로 수출입의 대GNI비율이 낮다. 그러나 국토가 좁은 나라는 대개 국내에 자원이 빈약하므로 결국 외국에서 원재료를 사다가 이를 기초로 하여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다. 수출입의 대GNI비율은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을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GNI비율은 1970년에는 40.5%이던 것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2000년에는 91.1%로 높아졌다. 수출입의 대GNI비율이 이같이 높아지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상품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 점점 많이 팔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에 대하여 점차 개방되어 감을 보여 준다 하겠다.

수출입의 대GNI비율(%) = 총수출입 ÷ 명목GNI × 100
 * 총수출입 =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1)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총산출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율이라고도 하는데, 당해년가격 기준과 기준년가격 기준의 두가지로 작성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간투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부가가치율(%) = 제조업 산출액 ÷ 제조업 부가가치 × 100

(12) GDP 디플레이터

실질GDP를 구하려면 명목GDP에 물가지수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물가지수를 GDP 디플레이터라 한다. GDP추계시에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등 각종 가격지수가 종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DP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상승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구해지는데, 여타의 물가지수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 × 100

나. 국민소득의 새로운 개념

(1) 경제후생지표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크면 클수록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현재의 국민소득지표로는 국민의 생활 및 복지수준을 나타내는데 다소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 국민소득은 한 해에 만들어진 모든 생산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생산물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식사나 빨래 등의 가사는 그것이 생산적일지라도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똑같은 일이라도 음식점이나 세탁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민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노동시간을 늘리면 국민소득은 증가하나 그만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는데, 여가를 즐기는데 따른 효용가치는 국민소득에서는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어나기 쉬운 자연의 파괴현상이나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해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범죄의 증가 등 부의 영향도 국민소득에는 고려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지표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에 가사서비스나 여가 등의 효용가치를 더하고 공해 등 비후생적 요소들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공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수준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 MEW)의 개념을 만들어 냈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소위 Green GDP도 그 한 예라 하겠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직은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2) 잠재GDP(potential GDP)

잠재 GDP란 실제GDP(actual GD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최대GDP 또는 자연실업률 상태 하에서의 GDP, 즉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라고 정의된다.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GDP갭(gap)이 부(-)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GDP갭(gap)이 정(+)이면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잠재GDP는 단기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최적의 GDP라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GDP를 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GDP를 공식적으로 추계하지는 않고 있으나 연구목적으로 나온 잠재GDP가 있다.

(3) 환경계정(green GDP)

환경계정이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부속계정형태로 새로 도입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을 말한다. 환경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대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산림·지하자원과 같은 자연자산이나 물·공기와 같은 환경자산도 경제자산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되는 자산으로 취급, 동 자산의 기초·기말 스톡과 기간중 변동을 국민계정구조 형식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즉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depletion)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degradation)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최근에 언론이나 일부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green GDP"란 바로 이 EDP에 가까운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계정상의 공식개념이나 명확히 정의된 학술상의 개념은 아니다. 이와 같은 환경계정의 편제는 환경보존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 운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일부 자원의존형 개도국을 대상으로 EDP 시산작업을 시도한 바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최근 시범편제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4) 국민소득의 분배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생산되고 생산된 국민소득이 국민경제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분되는가를 살펴 보았는 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 못지 않게 개인간 분배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

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점차 늘어 가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는 생산물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기업들은 이 구매력에 따른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을 하게 된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 파악은 이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요 국민계정 지표 추이

	단위	1997	1998	1999	2000 ^P
1.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名目)					
국 내 총 생 산 (GDP)	億원	4,532,764	4,443,665	4,827,442	5,170,966
	億달러	4,766	3,177	4,058	4,574
국 민 총 소 득 (GNI)	億원	4,508,533	4,366,418	4,765,976	5,146,354
	億달러	4,740	3,121	4,007	4,552
요소비용 국민소득 (NI)	億원	3,415,131	3,273,973	3,534,481	3,847,829
국민 처분 가능 소득 (NDI)	"	4,004,985	3,831,794	4,179,173	4,552,443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4,516,712	4,414,273	4,788,215	5,151,998
1 인 당 G N I	萬원	980.3	940.4	1,017.1	1,088.6
	달러	10,307	6,723	8,551	9,628
2. 경제활동별 성장률 (實質)					
국 내 총 생 산 (GDP)	%	5.0	-6.7	10.9	8.8
국 민 총 소 득 (GNI)	"	2.1	-9.1	9.4	2.3
농 립 어 업	"	4.6	-6.6	5.4	0.1
광 공 업	"	6.5	-7.7	20.9	15.2
(제 조 업)	(")	(6.6)	(-7.4)	(21.0)	(15.4)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	11.5	0.6	10.4	12.6
건 설 업	"	1.4	-8.6	-9.1	-3.7
서 비 스 업 ¹⁾	"	5.4	-7.2	11.9	9.0
정 부 서 비 스 생 산 자 ²⁾	"	1.9	-0.6	1.2	0.9
정 보 통 신 산 업 ³⁾	"	30.5	20.7	36.0	36.5
비 정 보 통 신 산 업	"	3.3	-9.0	8.1	5.0

	단위	1997	1998	1999	2000 ^P
3. 지출항목별 증감률(實質)					
최종소비지출	%	3.2	-10.1	9.4	6.2
민간	"	3.5	-11.7	11.0	7.1
정부	"	1.5	-0.4	1.3	1.3
총고정자본형성	"	-2.2	-21.2	3.7	11.0
건설투자	"	2.3	-10.1	-10.3	-4.1
건물건설	"	-3.3	-14.0	-25.3	-1.8
기타건설	"	10.2	-5.3	6.5	-5.8
설비투자	"	-8.7	-38.8	36.3	34.3
기계류	"	-7.3	-35.5	29.8	37.1
운수장비	"	-13.6	-50.6	66.9	25.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	21.4	14.1	15.8	21.6
(재화) ⁴⁾	(")	(21.5)	(15.9)	(18.7)	(24.2)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	3.2	-22.1	28.8	20.0
(재화) ⁴⁾	(")	(3.1)	(-24.8)	(32.8)	(21.1)
4. 생산구조(名目)					
농림어업	%	5.4	4.9	5.1	4.6
광공업	"	29.3	31.2	31.1	31.8
(제조업)	(")	(28.9)	(30.9)	(30.7)	(31.5)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	2.1	2.4	2.7	2.8
건설업	"	11.6	10.1	8.7	8.2
서비스업 ¹⁾	"	41.6	40.7	42.4	42.7
정부서비스생산자 ²⁾	"	10.0	10.5	10.0	9.9
< 공업구조 >					
경공업	"	24.6	23.1	24.1	22.8
중화학공업	"	75.4	76.9	75.9	77.2

	단위	1997	1998	1999	2000 ^P
5. 지출구조 (名目)					
최종소비지출	%	66.3	65.6	66.5	67.5
민간	"	56.3	54.6	56.2	57.3
정부	"	10.1	11.0	10.4	10.2
총고정자본형성	"	35.1	29.8	27.8	28.7
재화와서비스의수출	"	34.7	49.7	42.3	45.0
(공제)재화와서비스의수입	"	35.7	36.3	35.5	42.2
6. 수출입의 對GNI비율(名目)	%	73.0	91.0	81.7	91.1
총수출 ⁵⁾	"	35.7	51.5	43.7	46.7
(재화) ⁴⁾	(")	(29.3)	(42.4)	(36.3)	(38.7)
총수입 ⁶⁾	"	37.3	39.5	38.0	44.4
(재화) ⁴⁾	(")	(29.8)	(29.1)	(29.2)	(35.0)
7. 분배구조 (名目)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피용자보수	%	47.5	45.7	44.1	43.7
기업및재산소득	"	28.1	28.5	29.8	31.0
고정자본소모	"	11.3	13.2	12.7	11.6
간접세(공제)보조금	"	12.9	11.6	13.0	13.6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0.2	1.1	0.5	0.1
노동소득분배율	"	62.8	61.6	59.7	58.6

	단위	1997	1998	1999	2000 ^P
8. 총저축과 총투자 (名目)					
총저축률 ⁷⁾	%	33.4	33.9	32.9	32.3
민간	"	22.8	24.4	23.2	20.6
정부	"	10.6	9.6	9.7	11.6
국내총투자율	"	34.4	21.3	26.9	28.8
(국내총고정투자율)	(")	(35.2)	(30.0)	(28.0)	(28.8)
투자재원자립도 ⁸⁾	"	97.3	159.3	122.4	112.1
9. GDP 디플레이터	1995=100	107.2	112.6	110.3	108.6
(상승률)	(%)	(3.2)	(5.0)	(-2.0)	(-1.5)
10. 한계자본계수 ⁹⁾	-	7.0	-3.1	2.6	3.2
(한계고정자본계수)	-	(7.2)	(-4.0)	(2.8)	(3.4)
고용계수 ¹⁰⁾	人/億원	2.2	2.2	2.0	1.9

-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고 금융귀속서비스는 차감
2)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생산자 및 가사서비스 포함
3)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반도체 및 통신기기)과 정보통신서비스(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관련서비스)포함
4)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5) 국외수취요소소득 포함
6) 국외지급요소소득 포함
7) (제도부문별 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x 100
8) (명목 총저축 / 명목 국내총자본형성) x 100
9) 실질 총자본형성 / 실질 GDP 전년대비 증감액
10) 취업자수 / 실질 총산출

국 제 수 지

목 차

1. 국제수지통계의 의의	177
2. 국제수지통계의 구조	178
가. 기본구조	178
나. 항목별 내용	179
3. 국제수지통계의 편제	184
가. 기초자료의 수집	184
나. 기초자료의 조정	184
4. 국제수지통계의 해석과 응용	185
가. 국제수지통계의 일반적 분석기준	185
나. 국제수지통계를 통한 외자의 조달 및 운용 분석	186
다.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한 경제분석	187

1. 국제수지통계의 의의

— 국제수지통계(Balance of Payments)란 일정한 기간동안 한 나라의 국민 경제와 그 밖의 여타 경제권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economic transactions), 즉 ① 재화, 서비스 및 소득거래 ② 금융상의 채권·채무관계 ③ 이전거래 및 이에 수반한 대응거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기술한 통계를 의미함

(1) 일정한 기간동안 : 어느 한 시점에서의 수지상황을 기록한 스톡(stock)통계가 아니라 일정기간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우(flow) 통계로 월, 분기, 년 등의 단위로 작성

(2) 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그 밖의 여타 경제권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라고도 하며 경제주체의 국적을 정치적 국경보다 경제적 국경으로 판단함에 따라 거주성의 판별은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있는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함

○ 통상 외국인일지라도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익의 중심은 국내에 있어 거주자로 분류하며, 기업은 영업이 어느 나라 영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거주성을 구분하므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포함

(예) : 현지법인, 주한미군, 유학생

(3) 대외거래 포괄범위 : 상품, 서비스 및 소득거래,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되는 이전거래, 다양한 경제적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외채권 채무의 소유권변동 등

(4) 기록 원칙 : 복식부기원리(double-entry system)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 기준, 즉 IMF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작성

○ 복식부기 : 모든 개별거래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기록하며, 이에 따라 대·차 양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

· 이론상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준비자산증감 = '0'

국제수지통계의 회계원리

차변(debit, '-')	대변(cred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수입 (실물자산 증가) · 서비스 수입 (제공받음) · 소득 및 이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수출 (실물자산 감소) · 서비스 수출 (제공해 줌) · 소득 및 이전 수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감소 · 부채 증가

- (5) 거래가격의 평가 : 시장가격(market price)에 의해 기록하며 여기서 시장 가격이란 경제원리에 의해 행동하는 독립적인 두 경제주체간에 형성된 실제거래가격을 의미함
- (6) 거래의 계상시점 : 국제수지통계에서 각종 거래의 계상시점은 소유권변동시점(time of change of ownership)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권변동시점이란 거래 당사자가 거래내용을 각각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는 시점

2. 국제수지통계의 구조

가. 기본구조

경 상 수 지	자 본 수 지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서비스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투자 · 증권투자 · 기타투자 - 기타자본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당국의 대외준비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상 불일치 조정항목

나. 항목별 내용

(1) 경상수지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다음의 항목으로 이루어짐

- ① 상품(goods) 수출입의 차액인 상품수지와
- ② 운임, 보험료, 여행경비, 특허권사용료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수지차인 서비스수지
- ③ 노동자가 수취하는 급여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부채와 관련된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수지차인 소득수지
- ④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송금, 정부의 무상원조 등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상이전수지

—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대외실물거래를 총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제수지를 논의할 때에는 경상수지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임

(가) 상품·서비스수지

— 상품수지에 포함되는 재화는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재화수리, 운수조달재화 및 비화폐용금을 포함

- ① 일반상품 : 국가간에 거래가 발생하는 재화(movable goods)
- ② 가공용재화 : 외국(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수출(수입)한 재화 및 가공후 재수입(재수출)된 재화

- ③ 재화수리 :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항공기 등의 수리행위에 대해 수취 또는 지급한 수리비
- ④ 운수조달재화 :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조달한 연료, 보급품 등
- ⑤ 비화폐용금 : 통화당국이 준비자산으로 보유한 금(화폐용금)이외의 모든 금수출입

— 서비스수지는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

- ① 운수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예인·도선 등 기타지원 및 보조서비스
- ② 여행 :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
- ③ 통신서비스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의 원격통신, 우편 및 배달서비스
- ④ 보험서비스 : 거주자 보험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또는 비거주자 보험회사가 거주자에게 제공한 각종 형태의 보험서비스
- ⑤ 특허권 등 사용료 : 특허권, 저작권, 판매권 등의 허가된 사용에 따른 대가 및 기술도입에 따른 대가
- ⑥ 사업서비스 : 상품중개 및 무역관련 서비스,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댐·교량 공사의 기획 및 감독

- ⑦ 정부서비스 :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 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 또는 여타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
- ⑧ 기타서비스 :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서비스, 건설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 등

(나) 소득수지

- 소득수지는 비거주자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 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을 계상

(다) 경상이전수지

- 경상이전수지는 수혜자의 소득 및 소비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개인송금, 구호를 위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을 계상

(2) 자본수지

- 자본수지(capital and financial account)는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

(가) 투자수지

- 투자수지(financial account)는 통화당국의 준비자산증감을 제외한 민간, 금융기관, 정부, 통화당국 등 모든 경제주체의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의 증감을 기록하며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로 구분

(나) 기타자본수지

- 기타자본수지(capital account)는 해외이주비, 채무면제,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현금이전을 계리하는 ‘자본이전’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매매를 기록하는 ‘특허권 등 기타자산’으로 구성

(3) 준비자산증감

- 통화당국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계상

(예) : IMF자금 차입, IMF차입금 상환, 국내 외환시장 개입

※ 준비자산증감과 외환보유액 증감

- 준비자산증감과 외환보유액은 모두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준비자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일정시점에서의 잔액을 나타내는 스톡(stock)통계인 반면 준비자산증감은 일정한 기간중의 증감을 나타내는 플로우(flow)통계임
- 또한 외환보유액의 월중 증감(금일말 현재 외환보유액 - 전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거래에 의한 증감(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통한 외화자산의 매매 등)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증감(보유중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표시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수지통계의 준비자산증감은 거래에 의한 증감만을 계상

(4) 오차 및 누락

-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증감의 합계가 영(0)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balancing item)

(가) 발생요인

- ① 기초통계간의 불일치 : 통관통계, 외환수급통계 등 각기 고유의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통계를 국제수지통계의 기초자료로 이용함에 따라 이들 기초통계의 작성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예) 환율적용기준의 차이

- 상품거래 : 지난주의 전신환매매율 평균
- 서비스 및 소득 거래 : 거래발생일 현재의 기준을
- 자본거래 : 거래발생일 현재의 기준을 및 월말 기준을

- ② 통계계상시점의 차이 : 수출입 거래와 대금결제간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에 기록되는 시점에 차이 발생

- ③ 통계작성시의 보고 오류 또는 누락

(나) 불가피성

- 수출입거래에서 통관과 결제간의 시차는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상품에 대한 시차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억달러, %)

	1996	1997	1998	1999	2000
오차 및 누락 (A)	10.7	-50.7	-61.9	-35.3	2.6
수출입 금액 (B)	2,749.0	2,804.2	2,226.2	2,619.6	3,350.2
오차 및 누락률(A/B,%)	0.4	-1.8	-2.8	-1.3	0.1

3. 국제수지통계의 편제

가. 기초자료의 수집

- 관세청 통관통계, 외환수급통계, 기타 직접조사자료

국제수지통계와 기초통계와의 차이

	국제수지통계	외환수급통계	통관통계
포괄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외환의 수입과 지급이 발생하는 거래	세관에서 수출 또는 수입통관되는 재화
계상시점	소유권 변동 시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의 수입과 지급이 발생한 시점 (수출: 수출환어음 매입시점, 수입: B/L 인도시점)	수출입신고 수리 시점
수출입 평가	수출 : FOB 수입 : FOB	실제 수출입 가격조건	수출: FOB 수입: CIF

나. 기초자료의 조정

(1) 통관통계

- 포괄범위 조정(재수출입, 밀수출입,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 계상시점 조정(선박수출, 비축용원유수입)
- 분류 조정(운임 및 보험료)

(2) 외환수급통계

- 계상기준 조정(여행, 통신서비스)
- 계상시점 및 분류 조정(외국인 국내주식투자)
- 분류 조정(개인송금 및 해외이주비)
- 평가변동 조정(외화B/S 항목)

4. 국제수지통계의 해석과 응용

가. 국제수지통계의 일반적 분석기준

— 국제수지의 균형여부 판단

- 국제수지는 사후적으로 보면 보정거래에 의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자율거래, 즉 사전적 거래로 균형여부를 판단함

— 자율적거래(autonomous transactions)와 보정적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s)

- 국제수지의 균형·불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 함
 - ┌ 자율적거래 : 선위 항목(above the line)
 - └ 보정적거래 : 선아래 항목(below the line)
- 자율거래의 순계가 적자(흑자) ⇒ 보정거래의 순계는 흑자 (적자)

— 선위 항목과 선아래 항목의 구분 형태

<u>선 위 항목</u>	<u>비 고</u>
○ 상품·서비스수지	상품수출입 및 서비스거래 만으로 국제수지 균형여부를 판단
○ 경상수지	경상수지로 국제수지 균형여부를 판단 (통상적인 방법)

나.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한 외자의 조달 및 운용 분석

— 국제수지표의 경상계정은 대외 실물거래의 총체적인 수급 현황을 보여 주는 한편 자본계정은 실물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 상황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외자의 조달과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외자의 조달 : 경상수지 흑자, 무역신용도입, 외국인직접투자 등
- 외자의 운용 : 경상수지 적자, 해외투자, 외환보유액 증가 등

2000년중 국제수지통계상 자금흐름 요약

(단위 : 억달러)

	조	달	운	용
경상 거래	○ 상품수지 흑자	168.7	○ 서비스수지 적자	37.3
	○ 경상이전수지 흑자	6.8	○ 소득수지 적자	24.2
	⇒ <u>경상수지 흑자</u>	<u>114.0</u>		
자본 거래	○ 직접투자수지 흑자	42.8	○ 기타투자수지 적자	35.6
	○ 증권투자수지 흑자	120.0	○ 기타자본수지 적자	6.2
	⇒ <u>자본수지 흑자</u>	<u>121.1</u>		
준비 자산 증감	○ 오차 및 누락	2.6	○ <u>준비자산 증가</u>	<u>237.7</u>

다.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한 경제분석

-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자본수지는 적자를 나타내며,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자본수지는 흑자를 나타냄
 -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 줌
 - 상품 및 서비스수지 흑자 →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우위
 - 상품 및 서비스수지 적자 →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열위
 - 자본수지 흑자는 대외자산(대외투자) 회수 또는 대외부채 증가(외채 도입)를 의미하며, 자본수지 적자는 대외자산(대외투자) 증가 또는 대외부채 감소(외채 상환)를 나타냄
 - 자본수지 흑자 또는 적자의 세부내용 파악 필요
-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를 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자본수지 흑자)을 통해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충당하게 되며(준비자산 감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대규모의 외화가 일시에 유입될 경우에는 통화당국은 환율의 안정을 위하여 외화를 사들이며 이 결과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게 됨(준비자산 증가)

외환위기 전후의 국제수지 동향

(억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상 수 지	-230.0	-81.7	403.6	244.8	114.0
자 본 수 지	233.3	13.1	-32.0	20.4	121.1
준비자산증(-)감	-13.9	119.2	-309.8	-229.8	-237.7

통화금융통계

목 차

1. 통화지표	191
가. 통화의 정의	191
나. 통화지표의 의미	191
다. 통화지표의 종류	192
라. 통화지표의 편제	194
2. 통화의 공급경로	198
가. 통화의 부문별 공급경로	199
나. 정부부문 통화와 재정수지	200
다. 해외부문통화와 국제수지	202
3. 통화정책의 운용	203
가. 통화정책의 목표	203
나. 통화공급 목표의 설정	204
다. 통화관리수단	205
라. 물가안정목표제	206
4.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서의 통화총량과 금리	208
가. 선정기준	208
나. 금리 및 통화총량의 일반적인 제약점	209
다. 중심통화지표의 선정요건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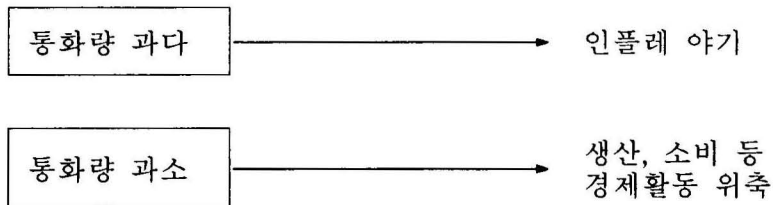
1. 통화지표

가. 통화의 정의

- 미시적 관점에서의 통화의 정의 : 통화의 기능면에서 접근
 -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 : 법화(현금통화), 예금통화(요구불예금)
 -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 : 준통화
- 거시적 관점에서 통화는 소득,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
 - 거시경제학에서의 통화에 대한 관심(통화수요함수, 중심지표의 선정 등)
· 은 주로 통화가 금리 등의 경로를 통해 소득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음
- > 거시경제학에서 통화에 대한 정의는 경험적인 문제이며 연구자의 거시경제적 입장이나 통계적 기법의 차이 등에 의해 통화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나. 통화지표의 의의

- 국민경제에서 통화의 역할은 인체에 있어서 혈액의 역할과 비슷함



- ==>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통화량의 적정공급이 중요하며 통화지표는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통화 신용정책 운용에 중요한 통계임

다. 통화지표의 종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중에서 어디까지를 통화(돈)로 보느냐에 따라 통화(M1), 총통화(M2), MCT, M3 등으로 통화지표를 구분하여 편제

(1) 통화(M1) :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

= (민간보유현금) + (당좌, 보통예금과 같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2) 총통화(M2) :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 포괄

= M1 + (정기예금 · 정기적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

(3) MCT = M2 + CD + 금전신탁

(4) M3 :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 M2* + (상호신용금고, 신탁 등 비통화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

*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과의 상호거래분은 제외

◆ 우리나라의 중심통화지표 변천추이 ◆

1957 - 1969년 상반기 : M1

1969년 하반기 : 본원통화(Reserve Money)

1970 - 1977년 : 국내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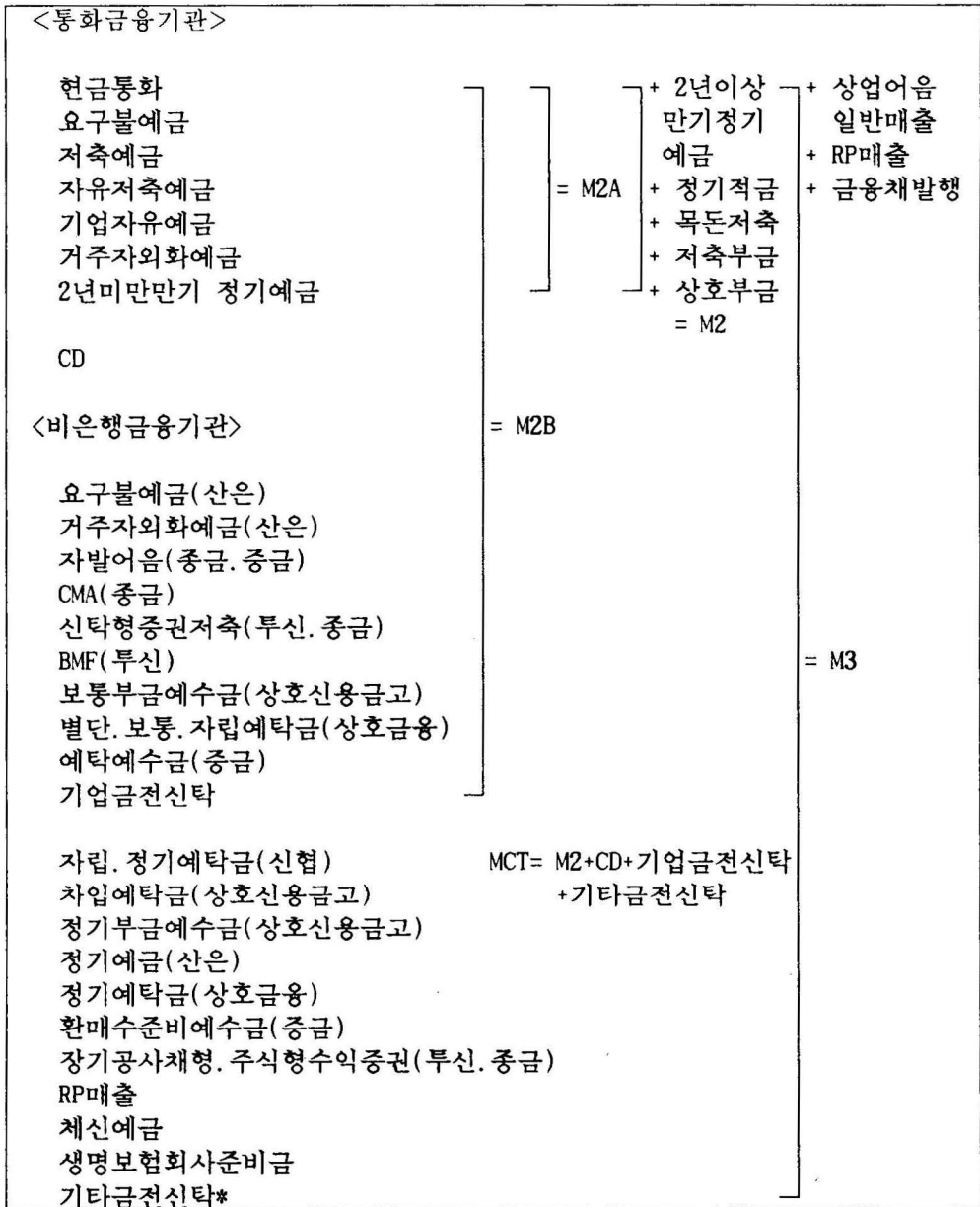
1978년 : M1

1979 - 1997년 : M2 (1997년, MCT와 함께 복수지표 사용)

1998년 이후 : 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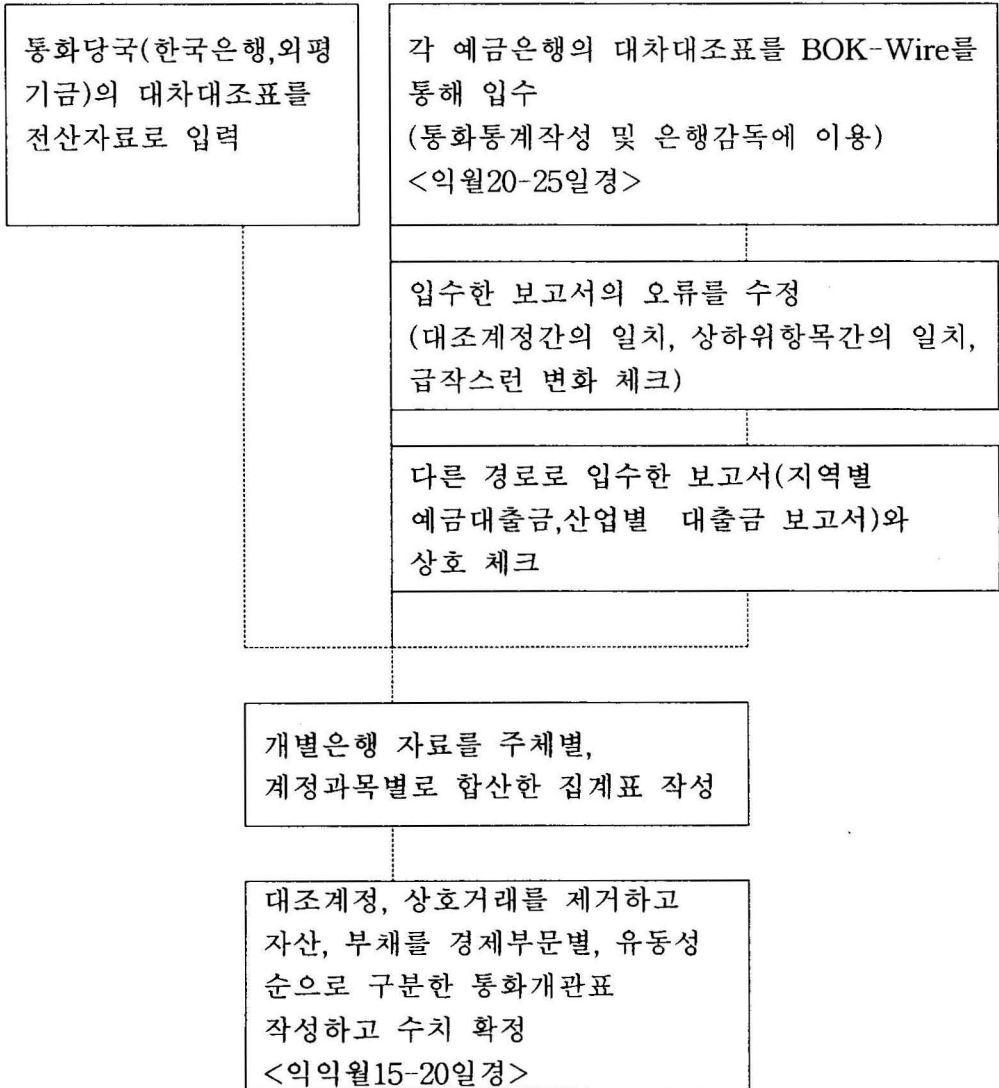
==> 한국은행에서는 총통화(M2)가 다른 통화지표보다 경제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1979년 -1997년까지 가장 오랜 기간동안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로 사용

主要 通貨指標의 包括範圍 比較



라. 통화지표의 편제

(1) 편제절차 개요



(2) 통화개관표와 M1, M2

- 통화개관표는 통화금융기관 대차대조표를 자산은 경제부문별로, 부채는 유동성별로 정리하여 국민경제의 금융부문과 여타부문간의 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표

--> 이 표를 통해 총통화의 부문별 공급경로 파악 가능

통 화 개 관 표		총통화의 부문별 공급경로	
국내신용	총 통 화	국내신용	총 통 화
정부신용		정부부문	
정부대행기관	통 화	정부대행기관	통 화
공적기관	현금통화	공적기관	현금통화
비통화금융기관	예금통화	비통화금융기관	예금통화
민간부문	준통화		준통화
	저축성예금	해외부문	저축성예금
해외자산	거주자외화예금	해외자산	거주자외화예금
		해외부채(-)	
해외기타자산	해외부채	기타부문	
	기타부채	기타자산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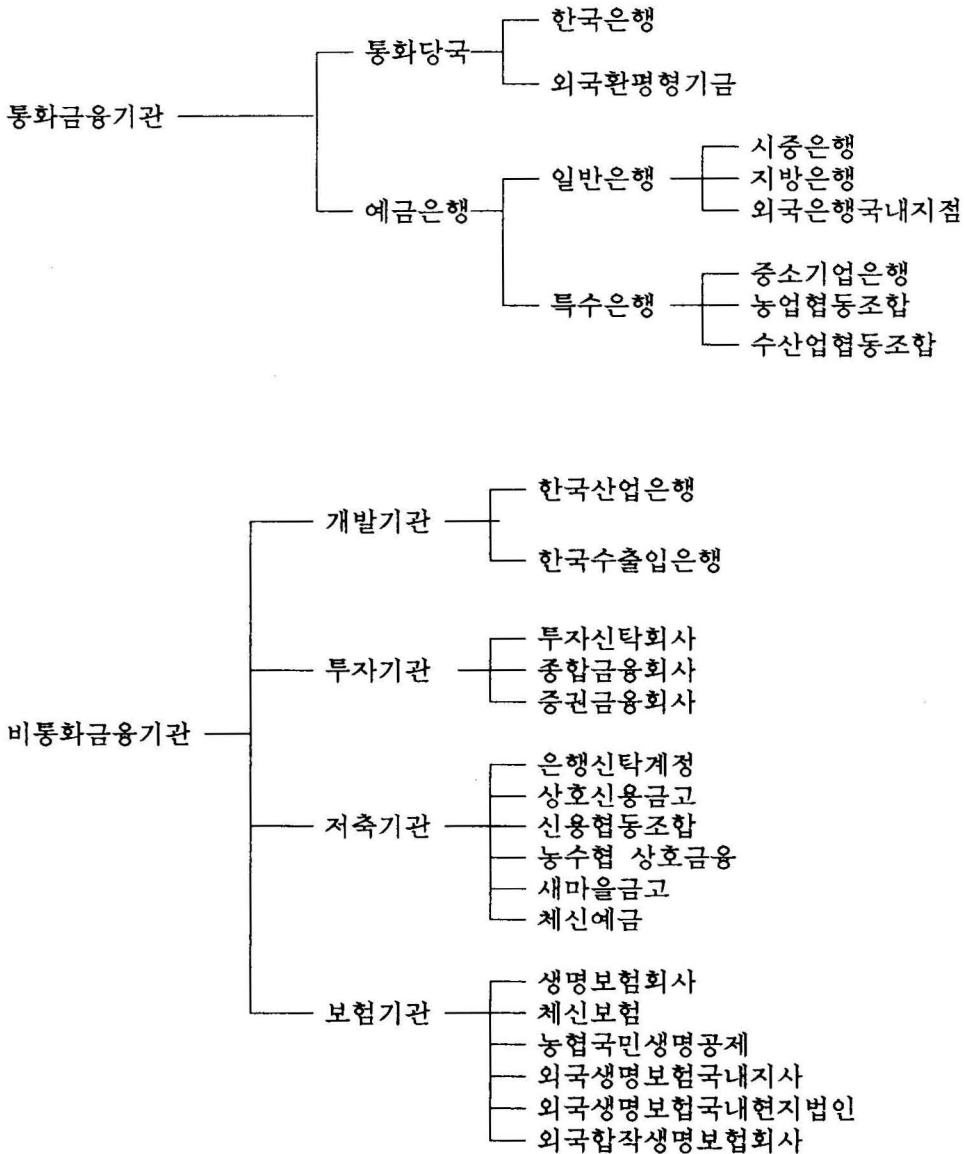
(3) 금융개관표와 M3

- 금융개관표는 통화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비통화금융기관까지를 포함한 전금융기관의 연결대차대조표를 작성, 전금융기관의 유동성부채 창출과정과 유동성의 부문별 공급경로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집약표임

금 융 개 관 표		M3의 부문별 공급경로	
국내신용	M3	국내신용	M3
정부신용	총 통 화	정부신용	총통화
정부대행기관	비통화금융기관	정부대행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공적기관신용	예수금	공적기관신용	예수금
민간신용	채권발행	민간신용	채권발행
해외자산	상업어음매출	해외부문	상업어음매출
기타자산	양도성예금증서	해외자산	양도성예금증서
	상호거래(-)	해외부채(-)	상호거래(-)
	해외부채	기타부문	
	기타부채	기타자산	
	자본계정	기타부채(-)	
		자본계정(-)	

< 참고 >

금융기관의 분류



2. 통화의 공급경로

- 통화는 한국은행(중앙은행)과 일반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들이는 은행(예금은행)이 공급

(1) 화폐발행권한을 가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외국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어 주거나 정부의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통화를 공급(한국은행의 이러한 통화공급을 本源通貨*의 공급이라 함)

*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민간보유현금+은행보유 시재금)+은행의 지급준비예치금

= 민간보유현금+은행의 지급준비금총액(지급준비예치금+시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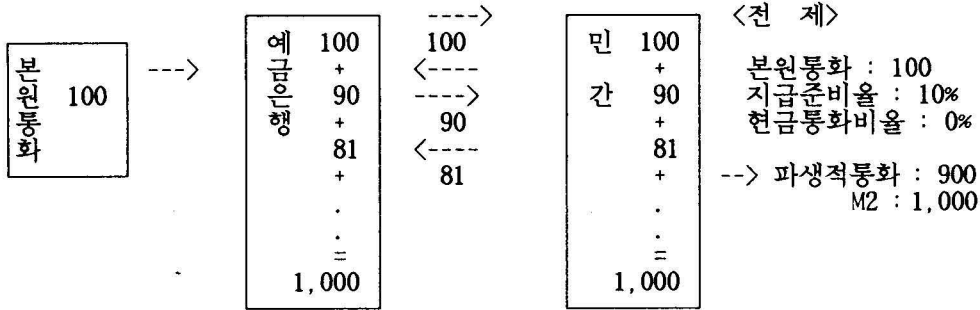
(2) 예금은행은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통화를 공급

(가) 본원통화중 일부는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 나머지는 예금은행에 예금

(나) 예금은행은 예금중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자기금고에 보관(시재금)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대출

(다) 민간에 대출된 자금은 일부가 은행에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고 이중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다시 민간에 대출

—▶ 이와 같은 과정이 되풀이됨으로써 은행은 본원통화의 몇갑절(通貨乘數)에 해당하는 통화를 공급 (은행의 이러한 통화공급을 派生的 通貨의 공급이라 함)



가. 통화의 부문별 공급경로

- 통화공급(또는 환수)은 실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로(정부, 민간, 국외 및 기타부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부문별 총통화 공급내역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를 적절히 변형하여 작성한 통화개관표를 통해 파악

- (1)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세출과 세입에 따라 발생
- (2)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은행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해 공급
- (3)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 따라 우리 돈과 외국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

○ 수출(수입)이 수입(수출)을 초과하여 국제수지가 흑자(적자)를 기록하면 통화도 그만큼 증가(감소)

(4) 기타부문

-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민간에 팔면 시중의 통화가 한국은행이나 은행으로 들어와 통화가 환수되고 이미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상환하면 통화가 증가

- 은행이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화가 환수
(은행이 증자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면 시중의 통화가 다시 증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2000. 10말 현재)

통화개관표

(2000. 10말 현재)

(단위: 억원)		(단위: 억원)	
대정부신용 229,522	현금통화 151,796	정부신용(순) -324,126	총통화(M2) 3,994,653
대 정부대행 및 공적 기관 631,995	요구불예금 278,196	민간부문 4,050,514	현금통화 151,796
대통화금융기관 258,402	저축성예금 3,441,541	국외부문 1,034,575	요구불예금 278,196
대민간부문 3,808,369	거주자의화예금 123,120	기타부문 -1,414,562	저축성예금 3,441,541
국외자산 1,591,795	대정부부채 553,648		거주자의화예금 123,120
기타자산 599,224	국외부채 557,220		
	기타부채 2,013,786		

나. 정부부문 통화와 재정수지

(1) 재정통계상 종합재정수지와 정부부문통화와의 관계

- 재정수지가 적자 또는 흑자시 변동하는 통화량은 통화개관표상 정부부문에 의해 파악 가능
- 그러나 정부가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남

(2) 재정적자 보전수단별 통화에 미치는 영향

(가) 정부예금

- 재정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정부예금의 감소를 통하여 통화량이 증가하고 흑자인 경우는 정부예금의 증가를 통하여 통화량이 감소함

(나) 국채발행

- 1) 한국은행에 의한 인수 : 인수단계에서는 국채보유와 동시에 정부예금이 늘어 통화량이 불변이지만 정부가 조달자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함
- 2) 예금은행에 의한 인수 : 인수단계에서는 국채보유와 동시에 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통화량이 불변이지만 정부가 조달자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함
- 3) 기타민간(비통화금융기관, 기업 등)에 의한 인수 : 인수단계에서는 인수액 만큼 현금 또는 예금이 감소함으로 통화량이 감소하나 정부가 재정지출시에는 정부예금이 감소하여 통화량은 증가하여 전체 통화량은 불변임

(다) 차입

- 1) 한국은행 차입 : 차입단계에서는 정부대출금과 정부예금이 동시에 늘어 통화량이 불변이지만 정부가 조달자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함
- 2) 예금은행 차입 : 차입단계에서는 정부기금에의 예치가 증가하는 동시에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여 통화량이 불변이지만 정부기금이 조달자금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함
- 3) 기타 차입 : 기타재원(공무원연금기금, 정부보유주식 매각, 전년도이월금 등)에서 조달·지출하는 경우 통화량은 불변임

(라) 해외차입

- 공공차관이나 공공전대차관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해외자산의 증가와 동시에 정부예금이 증가하여 통화량은 불변이나 정부가 동 재원을 가지고 지출하는 단계에서는 통화량은 증가함

다. 국외부문통화와 국제수지

- 국제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순대외자산(NFA)이 늘어나면서 이에 상응한 원화를 공급하게 되고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순대외자산(NFA)이 줄어 들면서 원화를 환수하게 됨

(예) 다음과 같은 대외거래를 가정하였을 때 국외부문통화공급액, NFA의 변화를 살펴보면

- ① 상품 A를 100달러에 수출
- ② 상품 B를 100달러에 수입
- ③ C 기업이 상업차관 20달러 상환
- ④ D 외국환은행이 은행 론으로 50달러 도입

외화 대차대조표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자산 (외화예치금)	80	부채 50 ==> 대내자산 (뱅크론) 1\$=800 현금 -24,000	
수출대전	100	① 수출대전 -80,000	
수입대전	-50	② 수입대전 40,000	
차관상환자금	-20	③ 상업차관상환자금 16,000	
뱅크론 자금	50	외화자산 외화예치금 64,000	외화부채 외화차입금 40,000
		① 수출대전환입 80,000	④ 뱅크론 40,000
		② 수입대전매각 -40,000	
		③ 상환차관자금매각 -16,000	
		④ 외화예치(뱅크론) 40,000	

통화개관표

==>	국외부문 자산 부채	24,000 64,000 40,000	현금통화	24,000
-----	------------------	----------------------------	------	--------

→ 이와 같이 국제수지가 30달러 흑자가 되면 동액만큼 금융기관의 NFA 증가로 반영되는 한편 이에 대한 대가지불과정에서 NFA증가액인 30달러에 상응한 원화가 공급되어 통화량이 늘어남

3. 통화정책의 운용

가. 통화정책의 목표

- 통화정책의 목표는 최종목표와 중간목표로 구분
 - 통화정책도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균형 등에 됨
 - 통화정책당국은 경제성장이나 물가 등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를 중간목표(통화량, 금리 또는 환율)로 설정한 다음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이 중간목표를 관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까지는 양적지표인 총통화(M2)와 MCT를, 1998년 이후에는 M3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채택하고 매년 목표증가율을 설정
- 통화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반월마다 통화목표에 상응하는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 총액을 조작목표로 설정하고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등을 사용하여 이를 관리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통화관리수단	중간목표	최종목표
공개시장조작	통화량	물가안정
재할인정책	금리	경제성장
지급준비율정책 등	환율	국제수지균형

나. 통화공급 목표의 설정

- 통화는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거 통화공급 목표를 설정

(1)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은 유럽공동체(EC)가 회원국에 권장한 이른바 EC방식으로서

-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불가피한 물가상승률을 더한 후
- 통화유통속도*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목표증가율을 결정

* 1년간 통화 한단위가 생산활동을 위해 평균 몇번이나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경상국민총생산(경상GNP)을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출

(2) 그밖에 거시계량모형* 등을 이용하여 통화증가율 전망치를 도출한 다음 이를 통화공급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있음

* 통화량은 물론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물가 등의 거시경제변수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입각하여 이들 변수를 동시에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연립방정식체계의 모형

- 우리나라에서는 통화공급 목표를 대체로 EC방식을 원용하여 설정

통화증가율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유통속도변동률 + 기타여건*

* 시중자금사정 또는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

다. 통화관리수단

-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에는 크게 직접규제수단과 간접규제수단이 있음

(1) 직접규제수단은 정책당국이 은행을 통하여 풀려 나가는 자금규모를 직접통제하여 시중 통화량을 조절

(2) 간접규제수단은 중앙은행을 통하여 풀려 나가는 통화(본원통화)를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

(가)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나 정부가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매(통화채 매매 및 중도환매조건부 채권매매 <RP>)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사면 통화가 증가하고 팔면 통화가 감소

(나) 재할인정책 : 예금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사들인 상업어음의 일정 비율(재할인비율)을 중앙은행이 다시 사들임으로써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재할인비율의 변경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

1) 재할인비율을 높이면(낮추면) 통화가 증가(감소)

2) 선진국에서는 재할인금리를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금융기관의 재할인규모를 조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할인금리는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총액대출한도의 설정을 통해 재할인규모 조절

(다)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제도는 본래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인데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가 증가하고 높이면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직접규제수단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들어 금융자유화의 진전 및 금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간접규제수단을 적극 활용

< 참고 >

총액한도대출

- 중앙은행 재할인정책의 유동성조절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94. 3 「정책금융 축소정비 방안」에 의해 도입
- 94.3 이전에 자동대출형식으로 운영되어온 한은재할인 대상자금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중앙은행 대출한도(총액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제도화
- 총액한도설정은 통화금융동향, 금융기관의 취급대상자금대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금통위가 3개월단위로 설정하고 한은총재가 분기별 한도범위내에서 매일 금융기관별로 배정
- 은행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지방중소기업자금 대출에 대하여 총액한도내에서 지원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취급실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98.1월부터 변경하여 운용

라. 물가안정목표제

-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달성 해야 할 물가목표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체제

○1990년대 들어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자유화 및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통화량과 최종목표간의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지면서 중간목표없이 바로 최종목표인 인플레이션을 직접관리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시행

- 1998. 4월 한은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됨과 아울러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체제인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 운용

(목표대상 물가지수)

- 물가안정목표제가 처음 실시된 1998년과 1999년에는 전체 소비자물가로 설정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근원인플레이션으로 변경하여 운용
 -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지수를 대상으로 운용

(물가목표의 설정)

-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물가목표를 설정
 - 2000년 물가안정목표(근원인플레이션 연평균상승률 기준)는 $2.5 \pm 1\%$,
 - 2001년의 경우 $3 \pm 1\%$ 로 목표를 상향조정
- 2000년부터는 당해연도를 대상으로한 1년 단위의 단기 물가목표와 함께 중기목표를 도입

4.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서의 통화총량과 금리

가. 선정기준

(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량(자금 availability) → 실물경제」 일 경우 : 통화량 중시

「통화량 → 시장금리 → 실물경제」 일 경우 : 금리 중시

(2)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성

「금융부문이 실물부문보다 안정적」 이면 : 통화량 중시

- 투자, 소비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통화총량목표가 경제성장 등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적

「실물부문이 금융부문보다 안정적」 이면 : 금리 중시

- 통화수요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금리목표가 더욱 효과적

(3)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고 불안정」 할 경우 : 통화총량 중시

- 물가가 불안정하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가 되는 실질금리를 의도하는 수준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움

(예) 실질금리를 내리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명목금리가 하락하겠지만(유동성 효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다시 상승하게 되면(피셔효과) 금리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명목금리를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추가확대할 경우 물가불안만 가중

나. 금리 및 통화총량의 일반적인 제약점

< 금리 >

- (1) 금리를 중간목표로 선택하는 경우 수시로 변동하는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번번히 조절하게 되면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음
 - (2) 정책변수인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을 사전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3) 저금리를 선호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적 압력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를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 : 물가안정기조의 미정착, 대표금리의 부재, 금리경로의 미확립 등

< 통화총량 >

- (1) 통화총량을 중간목표로 선택하는 경우 금리의 급변동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 (2) 내외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화될 경우 통화당국이 통화총량을 의도하는 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짐

다. 중심통화지표의 선정요건

- (1) 정책목표변수와의 안정적 관계 : 최종목표변수에 대해 외생성을 가짐으로써 동 변수의 미래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의 역할을 해야 함
- (2) 통제가능성 : 공개시장조작, 재할인, 지급준비율 등 정책수단의 운용에 따라 민감하게 그리고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여야 함
- (3) 속보성 : 통화공급을 적시에 조절하기 위하여 최단시간내에 통계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함

<참 고> 통화금융관련 주요지표 내용

1) 예금은행 예대율

- 예금은행이 예수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얼마만큼 대출로 운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text{예대율*} = \frac{\text{금융자금 대출금}}{\text{예금}} \quad \text{또는} \quad \frac{\text{총 대출금**}}{\text{총 예수금***}}$$

*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 금융자금 + 재정자금 + 국민투자기금대출금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CD + 금융채

(지표의 이용)

- 시중자금사정 판단을 위한 참고지표
 - 예대율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대출수요가 증가하거나 예수금인출이 늘어날 경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자금의 역외유출정도를 나타내주는 참고지표
 - 한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만큼 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2)요구불예금 회전을

- 요구불예금의 평잔에 대한 지급누계액의 비율로서 요구불예금이 일정기간 동안 몇 회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text{요구불예금 회전율} = \frac{\text{요구불 예금 월증지급액}}{\text{요구불 예금 월증평잔액}}$$

(지표의 이용)

- 기업의 자금사정판단을 위한 참고지표

- 기업의 자금사정이 양호할 때는 낮고 반대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3)어음부도율

— 교환어음중 부도어음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금액기준과 장수기준으로구분하여 편제

$$\text{어음부도율(금액기준)} = \text{부도어음금액} / \text{총교환어음금액}$$

$$\text{어음부도율(장수기준)} = \text{부도어음장수} / \text{총교환어음장수}$$

(지표의 이용)

- 시중자금사정판단을 위한 참고지표

- 시중자금사정이 양호하면 부도율이 낮아지고 반대의 경우 높아짐